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 2021. 11.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민정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2021. 11.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성 민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수 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주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수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성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요약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그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가 시행되어옴.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16조), 국가성평등지수(제19조) 등을 성 주류화 도구로 규정함

○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사업들이 성평등하게 개선되면 국가성평등지수를 통해 국가 성평등 수준이 제고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성평등지수가 취약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성인지적으로 재정사업을 편성·운용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 유기성이 기대됨

○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201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음. 국가성평등지수 또한 공표 및 관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와는 별개로 논의가 전개되어 통합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함

○ 그동안 하나의 체계로 기능하지 않았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선순환을 위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서 두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성 주류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연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국가성평등지수 취약 분야 예산 요구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국가성평등지수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평등 제고 효과 점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결산 현황
-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행정자료, 정책자료 등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 매뉴얼 등 행정자료, 「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정책자료 검토

○ DB 구축 및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보고서와 국가성평등지수 등 DB 구축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결과 및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Ⅱ.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 여성 대회에서 공동의제로 채택된 이후 급속히 확대·전파되면서 대다수 국가 정책의 중심 틀로 자리잡음

○ 기존 여성정책의 전략은 법률적 평등 조치(equality legisla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여성정책을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주된 시행 시점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 첫째, 법률적 평등 조치는 1960-7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근간으로 '여성과 남성은 같음(sameness)' 즉, 동일한 관점의 성평등 개념을 전제로 함. 둘째, 적극적 조치는 성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셋째, 성주류화는 '성차에 대한 역동적 접근(dynamic approach)'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수혜집단을 단순히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집단 내 다양성까지를 고려하여 성불평등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 성 주류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젠더 렌즈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개선하는 것임. 성 주류화는 공공부문 전반의 정책 및 제도를 범위로 하므로 성 주류화에 대한 책임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책 입안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함

○ 성 주류화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 의제설정 접근(agenda-setting approach)은 여성들이 주도하여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혁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둘째, 통합주의 접근(integration approach)은 기존의 정책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 이슈를 추가하는(add-on) 방식임. 성 주류화의 접근방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며, 의제설정 접근 및 통합주의 접근이 갖는 현실성과 강점을 이용한 협공전략(twin-track)이 선호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 제도는 여성정책의 도입(1998년~2000년대 초반), 성 주류화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2002~2003년), 도구 적용 인프라 형성기(2003~2010년대 초반), 도구 중심의 성 주류화 정착기(2010년대 중반~)의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름.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제도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으며, 성 주류화를 위한 기본시책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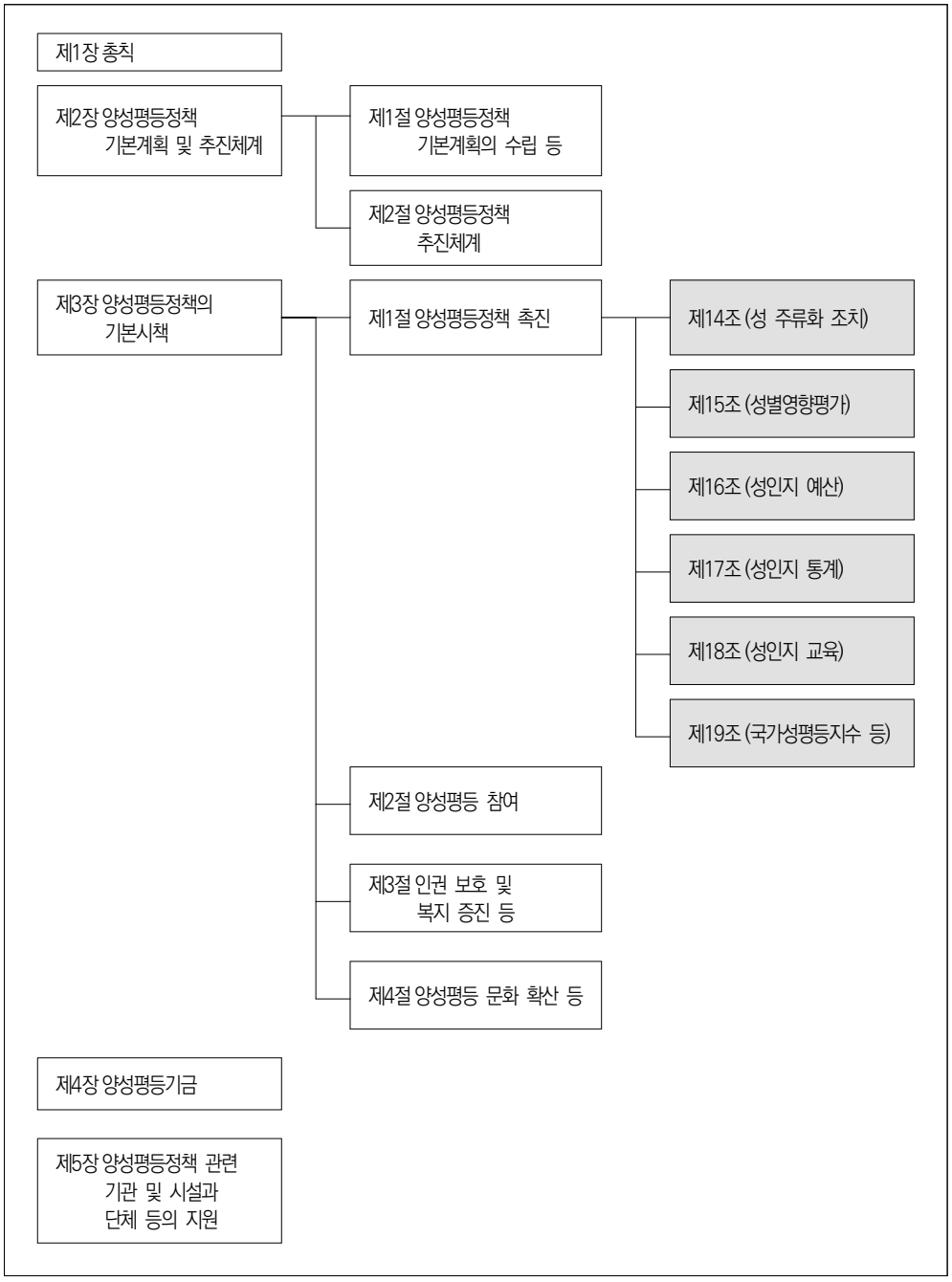

[그림 1]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주류화 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 (정의 및 법적 근거)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성주류화 제도이자 재정활동에 기능하는 재정제도로서 존재함.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시행근거 규정이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무 및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표 1〉「국가재정법」 제27조, 제68조의2 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제16조(성인지 예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추진체계) 성 주류화 제도이자 재정제도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왔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협력체계를 제시함

- 20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518호)을 제정하여 기존의 상설협의체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안건 사전검토 및 협의회 위임 사항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 하에 전문가 15인 이내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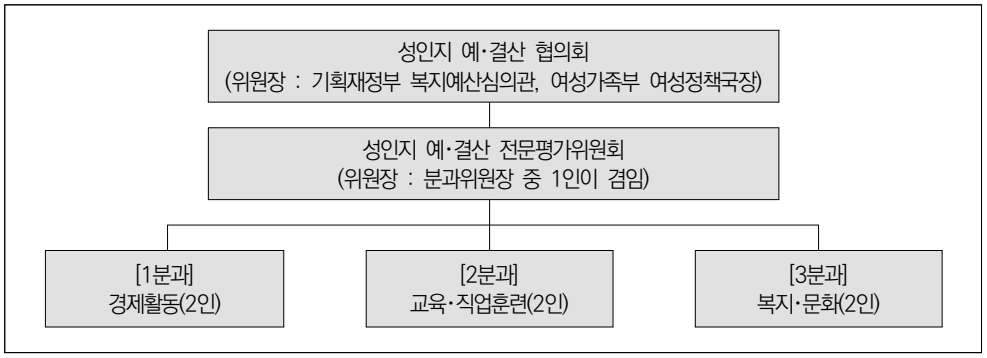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조

- 전문평가위원회는 4월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9월에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회를 거쳐 전문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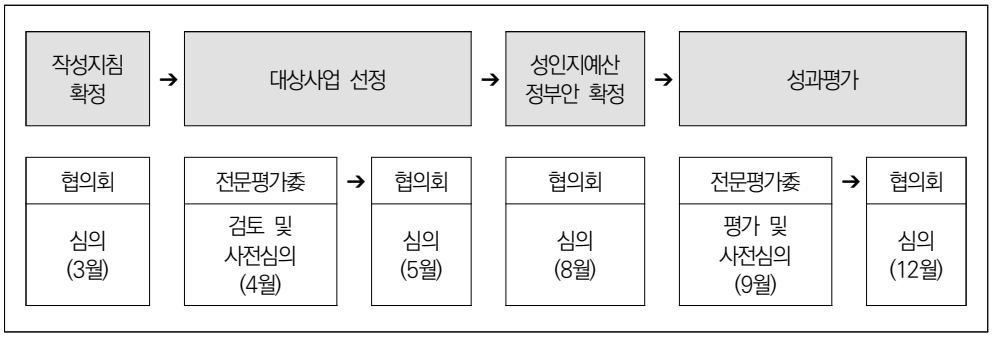

[그림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체계도

○ (현황) 성인지 예산서는 2009년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이래 13번의 성인지 예산서, 11번의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됨.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및 양식을 개선하면서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옴

〈표 2〉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2010년~2021년)

(단위: 개,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작성기관	29	34	34	34	42	42	43	42	41	33	35	38
대상사업	195	245	254	275	339	343	331	350	345	261	284	304
성인지예산	7.5	10.2	11.3	13.3	23.0	26.2	28.0	29.6	33.8	25.4	31.7	35.3

* 주: 국회확정안 기준

- 대상사업의 변화: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작성한 2010년도는 예산사업만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예산사업 중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토록 함. 이후 2011년도부터는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던 사업은 의무적으로 익년도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대상 사업 선정기준이 추가됨. 2017년부터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서도 기존의 여성정책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변경됨. 2019년도는 기존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 전년도 작성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의 두가지로 통폐합. 2020년에는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외에 성평등중점사업을 별도로 표기
- 작성항목의 변화: 2010년도 처음 작성양식의 초안이 적용된 이후 2011년도부터 수정되어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작성양식이 구축됨. 2011년도 사업별 설명자료부터 세부사업(혹은 내역사업)의 사업명과 예산내역을 기재하도록 추가됨. 2013년에는 현재의 양식과 같이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의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작성양식이 변경됨. 2015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결산서와의 정합성 및 환류를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산출근거에 성별영향평가결과 및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 반영을 기재하도록 함. 2019년에는 대상사업이 직접목적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변경되어 성인지 예산서에서도 사업유형의 표기항목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에는 성평등 중점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 작성항목이 다시 변경됨

□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 (정의 및 법적 근거)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정의됨.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1항에서는 국가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인권,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수준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됨.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됨.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됨

○ (지표 체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1항과 시행령 제15조를 바탕으로,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됨. 현재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4〉「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 국회의원 비율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관리자 비율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년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2 여성의 인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 비빈곤인구 비율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 장애인고용률
	보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3 성평등 의식·문화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 가사노동시간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 여가시간 • 여가 만족도 • 성별 정보화 격차

○ (현황)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9년 기준 73.6점이며, 최근 5년간의 국가성평등 지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국가성평등지수 현황(2015년~2019년)

(단위: 점)

영역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지수		70.5	71.4	72.2	73.1	73.6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1.3	72.3	73.2	74.7	75.7
	의사결정	27.7	30.4	33.5	36.2	38.1
	교육·직업훈련	93.4	93.6	93.1	94.1	93.9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73.7	73.7	75.4	76.3	75.2
	보건	97.1	97.3	96.8	96.1	95.7
	안전	64.9	67.0	65.5	64.9	66.7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56.8	57.5	59.4	61.2	62.8
	문화·정보	86.6	86.2	87.5	87.4	86.2

* 주: 국가성평등지수는 '0.0(불평등)'~'100.0(평등)'의 범주를 가짐

- 2019년 기준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보건 분야(95.7점), 교육·직업훈련 분야(93.9점), 문화·정보 분야(86.2점)순으로 나타나고, 의사결정 분야(38.1점)가 지수 값이 가장 낮은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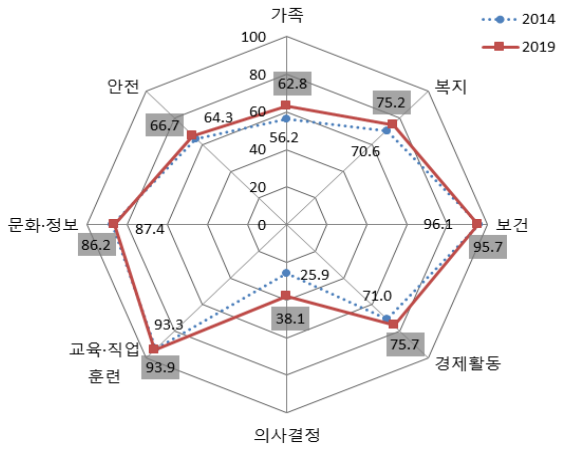

[그림 4]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점수 변화 추이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는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음.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성 주류화 전략, 차원, 조건, 방법과 도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성 주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몇 도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방법들의 활용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함

○ 현행 성 주류화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주축으로 매년 마련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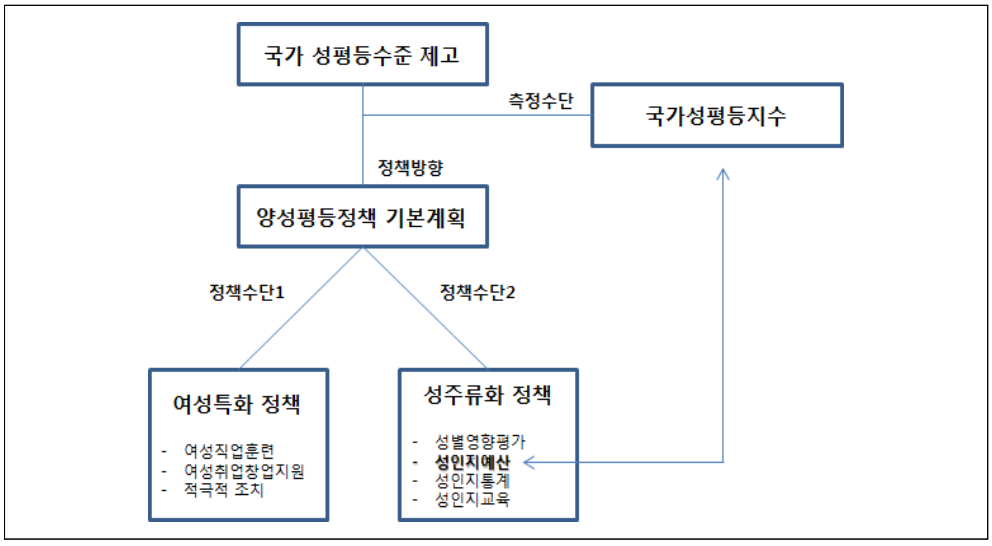

[그림 5]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관계

○ 국회 또한 2011회계연도부터 성 주류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인지예산서에 국가성평등지수에 기반한 주요 분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의 틀을 재구성하자는 의견, 국가성평등지수 낮은 분야에 대한 향후 관리 목표를 성인지 예산서에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후 국가성평등지수 낮은 분야의 대상사업 적극 발굴,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 및 대표지표와의 연계, 국가성평등지수 하락 분야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성인지예산서 양식상 사업유형의 연계이며,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제도 연계이며, 셋째,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상 연계임

- 성인지예산서 사업유형 연계: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부터 작성양식을 변경함으로써 대상사업별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도록 함. 단,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점수 및 취약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임
-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제도 연계: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2항에서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에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함
-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문화·정보)를 중심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함

○ 성인지예산서 양식상 사업유형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를 선택하도록 연계하였으나, 이는 대상사업 선정 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고려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함.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연계현황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설정하는 기준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동일한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
- 둘째, 하나의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함. 즉, 세부사업 내 국가성평등지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가 존재함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소관부처를 살펴보면 분야와 부처의 매칭되지 않음

○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가 성인지예산 관련 자문 및 교육훈련 등에서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한계가 있음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4월) 및 성인지예·결산 사업 성과평가(9월)가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음

Ⅲ.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결산 현황

○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현황

- (대상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현황) 2020년과 2021년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0년과 2021년 모두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액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이고, 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가 작은 분야는 '의사결정', '문화·정보' 분야임

〈표 6〉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2021년)

(단위: 개, 백만원)

성평등지수 분야	2020년		2021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가족	13	623,280	12	693,869
경제활동	108	16,702,026	103	18,570,482
교육·직업훈련	94	1,589,925	99	1,496,655
문화·정보	14	59,800	17	94,476
보건	12	157,582	17	348,001
복지	42	12,285,820	51	13,785,201
안전	29	283,413	34	290,598
의사결정	14	7,095	14	6,164
계	326	31,708,942	347	35,285,446

* 주: 202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상 '국가성평등지수' 항목 포함

- (기능별 성인지예산 현황) 2020년과 2021년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기능별로 분석함. 성평등지수 분야와 기능별 분류의 분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예를 들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실제로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함
- (부처별 성인지예산 현황) 2020년과 2021년 각 부처별 성인지예산 사업수와 예산액을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기능별 분류의 결과와 유사한 부처가 보이나 모두 일치하지는 않음

○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대상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71.8%)', '복지(71.4%)'의 순으로 높았음. 다만, 의사결정, 안전,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성과목표 달성률이 70%에 미치지 못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대상사업 유형이 특별하게 성과목표 달성률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임

〈표 7〉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2020회계연도)

(단위: 개, %)

국가성평등 지수분야	2018			2019			2020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가족	16	9	56.3	16	12	75.0	13	9	69.2
경제활동	96	69	71.9	101	69	68.3	122	84	68.9
교육·직업훈련	89	63	70.8	87	66	75.9	105	71	67.6
문화·정보	9	9	100.0	10	8	80.0	13	8	61.5
보건	8	8	100.0	8	7	87.5	12	8	66.7
복지	30	24	80.0	34	24	70.6	42	30	71.4
안전	26	21	80.8	27	23	85.2	39	28	71.8
의사결정	3	2	66.7	4	4	100.0	14	12	85.7
총합계	277	205	74.0	287	213	74.2	360	250	69.4

-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의 수가 많은 부처 중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눈에 띔. 이상의 세 부처는 대상사업의 수가 많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핵심적인 부처인데,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임
-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중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분야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에서 성평등지수 분야가 안전에 해당되는 경우임.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 중에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았음

□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 성인지예산과 성평등 수준

-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각 국가별로 도입유형이 다르고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임
- Chakraborty et al.(2019), Stotsky & Zaman(2016), 조선주 외(2015)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임

○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

- 성인지예산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움. 성평등지수는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데,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살펴봄. 첫째,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나, 이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시차를 적용하지 못함. 둘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모두 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도록 대상사업과 성평등지수 분야 간에 매칭작업이 필요하나, 2019년까지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기존 매칭이 없으므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1·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분야를 이용하여 성평등지수 분야와 매칭함
- 본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2018년부터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성평등지수 분야와의 매칭이 어렵고, 2019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유형이 크게 변경되면서 사업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과 같이 두 개의 분야가 결합된 분야는 각 분야 성평등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함. 사업 수보다 예산액이 해당 분야의 국가재정 배분을 더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성인지 예산은 사업 수가 아닌 예산액 규모를 활용함
-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 '보건 및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국가성평등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의사결정', '안전', '가족' 분야의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의 규모와 국가성평등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방향성도 확인하기 쉽지 않았음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 본 분석에서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성인지예산액과의 관계가 일부 분야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성인지예산 외의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활용에 주의를 요함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평등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시계열 자료의 시작시점과 마지막 시점에서 각각 2년 이상의 시차를 주려면 매우 긴 시계열 자료가 필요함
- 둘째,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되는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과 사업운영의 변화는 거시적 수준의 국가성평등지수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임. 최소한 중앙정부의 성과계획서와 같이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를 세우고 관리한다면 그 효과를 결과지표를 통해 확인하기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의 단위를 높일수록 사업책임의 문제와 작성자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여러 행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 보다 국가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경제성장 잠재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Ⅳ.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 성 주류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의 연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 성평등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단기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성평등지수의 목표 수준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성인지 통계 등 각 제도가 초점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되며, 각 제도의 시행 시점을 고려한 촘촘한 제도 셋팅이 필요함

○ 시계열 자료 구축 및 활용

- 국가성평등지수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공표 시점과 성인지예·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점 등을 고려한 시계열 자료 구축과 활용이 필요함
- 선후관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앞서고 국가성평등지수 점검이 뒤따르는 구조이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시차가 2년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시차를 주고, 국가성평등지수 생산주기를 고려하면 5년 이상의 시차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 강화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각 부처의 추진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2019년 신설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의 발굴·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부처 내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가지고 부처 내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처 내 성주류화를 강화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관련 체계 변경

- 직접목적 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6개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와 연계한 후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을 연계하도록 함
- 간접목적 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시 국가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국가성평등 지수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8〉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 변경(안)

2021년도		2022년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선정 기준	해당 여부
-	-	▸ 국가성평등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경제활동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 □ 가족 분야 □ 의사결정 분야 □ 보건 분야 □ 복지 분야 □ 문화·정보 분야 □ 안전 분야	
▸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별 성평등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사업의 수혜 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21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별 성평등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사업의 수혜 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21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에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활용하도록 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선정기준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을 정할 때,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정한 분야를 논의하되, 대표지표와 더불어 관리지표를 함께 논의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표 9〉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2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점 사업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참고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3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1안) *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에 관한 모든 사업 (2안) *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 중 '관리직 비율' 지표**에 관한 모든 사업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함께 관리 지표가 제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지표를 조정하도록 함

○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단위 조정

-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통한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사업단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서를 세부사업 수준으로 작성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또한 세부사업 수준에서의 관리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지표)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지표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 사업의 범위 조정

-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한다는 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임. 재정사업의 집행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사업(ODA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지수나 수준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 사업내용을 개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의 활용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및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시 국가성평등지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지점을 모색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전면적인 하향식 연계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현재 검토 체계 안에서 실무위원들의 국가성평등지수 관련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사업 분포를 검토할 수 있음
-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연계를 점검함. 실무위원과 평가위원의 평가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실무위원은 사업별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함
-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점검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이 낮은 분야 및 지표, 관련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하여 부처 협의를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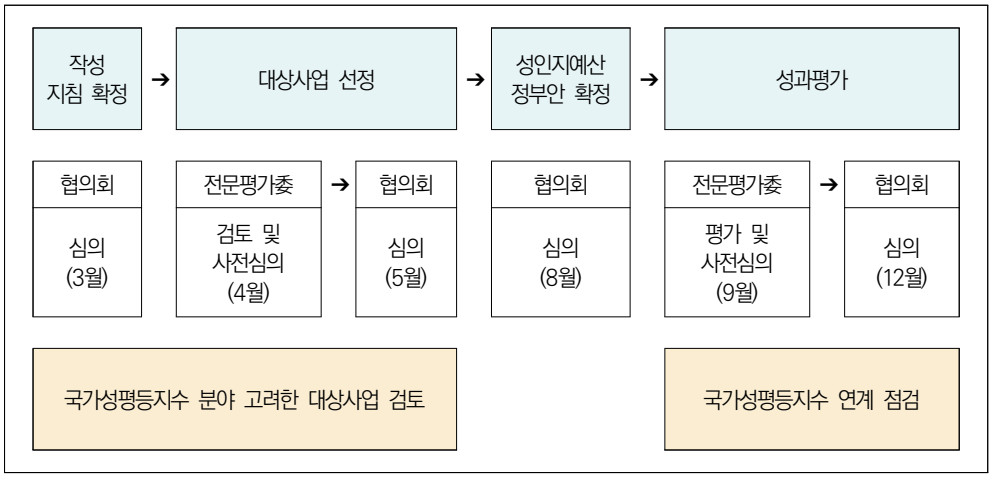

[그림 6]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를 통한 연계 지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Ⅱ.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 7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 9
가. 성 주류화의 개념 ····· 9
나. 우리나라 성 주류화 제도 현황 ····· 13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 17
가. 정의 및 법적 근거 ····· 17
나. 추진체계 ····· 19
다. 현황 ····· 22
3.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 31
가. 정의 및 법적 근거 ····· 31
나. 지표 체계 ····· 33
다. 현황 ····· 36
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 45
가. 연계 필요성 ····· 45
나. 연계 현황 ····· 49
다. 연계의 한계 ····· 53

Ⅲ.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 65
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결산 현황 ····· 67
가.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현황 ····· 67

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현황 ····· 84
2.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 98
가. 성인지예산과 성평등 수준 ····· 98
나.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 ····· 99
3.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 106

Ⅳ.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 109
1.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 111
가.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 111
나. 시계열 자료 구축 및 활용 ····· 120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 강화 ····· 130
2.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 134
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관련 체계 변경 ····· 136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 164
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단위 조정 ····· 175
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범위 조정 ····· 177
마.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의 활용 ····· 180

■ **참고문헌** ····· 187

■ **부　　록** ····· 193
〈부록 1〉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 195
〈부록 2〉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 207
〈부록 3〉 성평등지수 분야별-사업유형별 사업목록 ····· 213

표 목 차

〈표 Ⅱ-1〉 여성 정책의 세 가지 전략의 비교 ····· 10
〈표 Ⅱ-2〉 국제기구의 성 주류화 개념 정의 ····· 11
〈표 Ⅱ-3〉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 ····· 17
〈표 Ⅱ-4〉 「국가재정법」 제27조, 제68조의2 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 18
〈표 Ⅱ-5〉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2010년~2021년) ····· 22
〈표 Ⅱ-6〉 연도별 성인지예산 추진 경과(2010년~2020년) ····· 23
〈표 Ⅱ-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과 세부지침 ····· 26
〈표 Ⅱ-8〉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작성항목과 주요 내용 ····· 29
〈표 Ⅱ-9〉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32
〈표 Ⅱ-10〉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 35
〈표 Ⅱ-11〉 국가성평등지수 현황(2015년~2019년) ····· 37
〈표 Ⅱ-12〉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 40
〈표 Ⅱ-13〉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 42
〈표 Ⅱ-14〉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 44
〈표 Ⅱ-15〉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에 관한 국회 논의사항 ····· 48
〈표 Ⅱ-16〉 2020~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 50
〈표 Ⅱ-17〉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제16조2항 ····· 51
〈표 Ⅱ-18〉 2020년과 2021년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상이한 사업 목록 ····· 54
〈표 Ⅱ-19〉 세부사업 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른 내역사업의 목록 ····· 54
〈표 Ⅱ-20〉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작성 부처 및 사업 수 ····· 56
〈표 Ⅱ-2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표 및 지침: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 ····· 57
〈표 Ⅱ-2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의견" 양식: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위원용 ····· 59
〈표 Ⅱ-23〉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평가지표 ····· 60

〈표 Ⅱ-24〉 성인지예·결산 사업평가 지표체계(안) ····· 62
〈표 Ⅲ-1〉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2021년) ····· 68
〈표 Ⅲ-2〉 성평등지수 분야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2021년) ··· 69
〈표 Ⅲ-3〉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0년) ····· 71
〈표 Ⅲ-4〉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0년) ····· 72
〈표 Ⅲ-5〉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1년) ····· 73
〈표 Ⅲ-6〉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1년) ····· 74
〈표 Ⅲ-7〉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0년) ····· 76
〈표 Ⅲ-8〉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0년) ····· 78
〈표 Ⅲ-9〉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1년) ····· 80
〈표 Ⅲ-10〉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1년) ····· 82
〈표 Ⅲ-11〉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2020회계연도) ····· 84
〈표 Ⅲ-12〉 성평등지수 분야별-대상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2018~2020회계연도) ····· 85
〈표 Ⅲ-13〉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20회계연도) ····· 87
〈표 Ⅲ-14〉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20회계연도) ····· 95
〈표 Ⅲ-15〉 성평등지수-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여성정책기본계획의 매칭 ····· 101
〈표 Ⅳ-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체계 ····· 112
〈표 Ⅳ-2〉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성평등지수, 성인지예산서 시행
시기 ····· 116
〈표 Ⅳ-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연도 및 국가성평등지수 기준연도 ····· 120
〈표 Ⅳ-4〉 2018년, 2019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 121
〈표 Ⅳ-5〉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 122
〈표 Ⅳ-6〉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직무 범위 ····· 131
〈표 Ⅳ-7〉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업 연계표 ··· 138
〈표 Ⅳ-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42
〈표 Ⅳ-9〉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44
〈표 Ⅳ-1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46

〈표 Ⅳ-1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48
〈표 Ⅳ-1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51
〈표 Ⅳ-1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 156
〈표 Ⅳ-14〉 성인지예산서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연계 ····· 158
〈표 Ⅳ-15〉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 160
〈표 Ⅳ-16〉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 변경(안) ····· 161
〈표 Ⅳ-17〉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 163
〈표 Ⅳ-18〉 성과지표의 유형 ····· 165
〈표 Ⅳ-19〉 의사결정 분야 성인지예산 사업 목록(2021년, 상향식 연계) ····· 169
〈표 Ⅳ-20〉 의사결정 분야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173
〈표 Ⅳ-21〉 양평기본계획 대과제3과 의사결정 분야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연계(안) ····· 174
〈표 Ⅳ-22〉 성인지예산 사업 중 ODA 목록(2021년, 상향식 연계) ····· 178
〈표 Ⅳ-2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표 및 지침 변경(안):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 ····· 182
〈표 Ⅳ-24〉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평가지표 변경(안) ····· 18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성 주류화의 접근 방식 ····· 12
[그림 Ⅱ-2]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주류화 제도 ····· 16
[그림 Ⅱ-3] 2022년 성인지예산 업무 추진체계 ····· 20
[그림 Ⅱ-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조 ····· 21
[그림 Ⅱ-5]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체계도 ····· 22
[그림 Ⅱ-6]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 36
[그림 Ⅱ-7]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 37
[그림 Ⅱ-8]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38
[그림 Ⅱ-9]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39
[그림 Ⅱ-10]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41
[그림 Ⅱ-11]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 43
[그림 Ⅱ-12]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점수 변화 추이 ····· 45
[그림 Ⅱ-13]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 ····· 46
[그림 Ⅱ-1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관계 ····· 47
[그림 Ⅱ-15]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반영 내용 ····· 50
[그림 Ⅱ-1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조 ····· 52
[그림 Ⅱ-17]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 53
[그림 Ⅲ-1]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3
[그림 Ⅲ-2]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3
[그림 Ⅲ-3] ‘복지 및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4
[그림 Ⅲ-4]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4
[그림 Ⅲ-5]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5
[그림 Ⅲ-6]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 105
[그림 Ⅳ-1]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① ····· 118
[그림 Ⅳ-2]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② ····· 119
[그림 Ⅳ-3]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 133
[그림 Ⅳ-4] 하향식 연계방식 ····· 135

[그림 Ⅳ-5] 상향식 연계방식 ····· 136
[그림 Ⅳ-6]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를 통한 연계 지점 ····· 181
[그림 Ⅳ-7]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기능 변경(안) ····· 183

부 표 목 차

〈부표 1〉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9회계연도) ····· 195
〈부표 2〉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회계연도) ····· 201
〈부표 3〉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9회계연도) ····· 207
〈부표 4〉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회계연도) ····· 210
〈부표 5〉 경제활동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13
〈부표 6〉 의사결정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17
〈부표 7〉 교육·직업훈련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18
〈부표 8〉 복지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22
〈부표 9〉 보건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24
〈부표 10〉 안전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25
〈부표 11〉 가족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27
〈부표 12〉 문화·정보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 228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왔으며, 그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가 시행되어왔다. 성 주류화는 모든 정책 영역에 암묵적으로 내재화된 성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이를 가능하도록 정책 과정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마경희 외, 2019: p.10).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 국가성평등지수(제19조) 등 성 주류화 도구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마경희 외, 2019: p.27).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김효주 외, 2020: p.3).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사업들이 성평등하게 개선되면 국가성평등지수를 통해 국가 성평등 수준이 제고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성평등지수가 취약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성인지적으로 재정사업을 편성·운용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 유기성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201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9년(2010회계년도)부터 일반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기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해왔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관 및 사업의 수가 증가해왔으며,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상사업 선정 시 타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타 제도와의 연계가 실질적인 기능을 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 또한 공표 및 관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와는 별개로 논의가 전개되어 통합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개선 현황을 측정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8개 분야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로 시작한 이래 부분적인 지표 교체나 삭제 등 개정을 거쳐 2020년 3개 영역, 8개 분야, 대표지표 25개, 관리지표 69개로 운영되고 있다(김경희 외, 2020: p.108). 국가성평등지수의

실효성은 여러 부처의 협업과 조정을 토대로 정부 업무에 반영되는 것에 달려 있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정책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통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김경희 외, 2020: p.108).

그동안 하나의 체계로 기능하지 않았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선순환을 위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서 두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한 국가성평등지수의 제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시에도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가성평등지수의 취약분야 개선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운영체계를 성 주류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연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적극적인 개선·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예산 요구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국가성평등지수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평등 제고 효과 점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논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으로 구성된다.

첫째, 성 주류화 제도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두 제도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 개념, 추진근거,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제도 개요와 함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의 목적, 개념, 작성근거 등을 비롯하여 국가성평등 수준 및 추이,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 등 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성 주류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함께 검토한다.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추진체계 및 환류 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의 한계를 검토한다.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을 도출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간 연계 방향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방안을 시범적으로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작성 내용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기존 문헌연구, 행정자료,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 매뉴얼 등 행정자료를 검토한다. 「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정책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한다. 각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보고서와 국가성평등지수를 DB화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결과 및 연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Ⅱ

성인지 예산제도 및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및 연계 필요성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9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17
3.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31
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45

1.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논의

가. 성 주류화의 개념

1) 성 주류화의 배경 및 개념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 여성 대회에서 공동의제로 채택된 이후 급속히 확대·전파되면서 대다수 국가 정책의 중심 틀로 자리잡아왔다(원숙연, 2009: p.94; Booth and Bennet, 2002; Lombardo, 2005; Moser and Moser, 2005; Walby, 200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성 주류화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주요 기조로 채택한 바 있고, 2001년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설립으로 여성문제가 모든 정책 영역에서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은아, 2010: p.308). 그러나 성 주류화라는 용어는 낯설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기존의 여성정책과 혼동되기 쉽다는 면에서, 정부 정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기존 여성정책의 전략은 법률적 평등 조치(equality legisla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왔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여성정책을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주된 시행 시점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법률적 평등 조치는 1960-7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근간으로 '여성과 남성은 같음(sameness)' 즉, 동일한 관점의 성평등 개념을 전제로 한다(조영희, 2008: p.293). 이는 남성과 여성을 엄격하게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개념으로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같음과 다름을 구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적 평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허라금, 2008: p.50).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는 남성성을 지니지 못함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정책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1980년대에는 적극적 조치가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조치는 성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불평등의 원인은 장기간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불평등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영희, 2008: p.294). 이는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음(difference)'을 인지하는 관점이 전제된다. 성별 차이에 따른 일시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훌륭한 내재적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을 위해 만

들어진 기준이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결과적으로 남성 지배적 영역 및 지위에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허라금, 2008: pp.52-53). 또한 여성의 사회적·육체적 조건을 고려한 조치가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보다 여성을 특별한 보호나 특혜가 필요한 존재로 낙인찍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허라금, 2008: p.52).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가장 최근에 논의되는 여성정책의 전략이 성 주류화이다. 성 주류화 정책은 Jaggar(1990)가 주장한 '성차에 대한 역동적 접근(dynamic approach)'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성차의 현실을 인지하여 젠더를 따지지 않는 성적 평등의 해석방식이 결과적인 성적 불평등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률적 평등조치 및 적극적 조치에서 나타난 부적합성을 넘어서는 전략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들 간 차이와 많은 성 간 차이의 사회적 기원을 인지함으로써 성차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성적 평등을 해석할 때 숨어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허라금, 2008: p.53; jaggar, 1990에서 재인용). 즉, 성 주류화는 정책수혜집단을 단순히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집단 내 다양성까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상의 여성 정책의 세 가지 전략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여성 정책의 세 가지 전략의 비교

구분	성불평등의 원인	대상 (논리)	성불평등의 해결방법	적용 범위	적용 시점	기존 제도 변화 여부
법률적 평등조치	불평등한 법률적 기회와 적용	여성 (동일)	법률 및 제도의 평등적용 /소극적 복지	노동	사후적 조치	기존 제도 내의 변화
적극적 조치	가부장적 구조	여성 (차이)	일시적, 잠정적 특별조치	노동 /정치	사후적 조치	기존 제도 내의 변화
성 주류화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여성/남성 (차이)	정책 과정의 재구조화	모든 정책 분야	사전적 조치	기존 제도의 변화, 수정

* 출처: 조영희 (2008: p.294) 〈표 1〉 인용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 평등조치, 적극적 조치를 넘어서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 주류화는 낯선 용어로 여겨지면서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성 주류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성 주류화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성 주류화 개념은 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왔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마경희 외, 2019: p.9).

〈표 Ⅱ-2〉 국제기구의 성 주류화 개념 정의

구분	정의
UN(1995)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
UN/DAW/ECLAC(1998)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
Council of Europe (1998)	정책 입안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성평등 관점을 모든 수준 및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정책들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을 (재)조직화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것

* 출처: 마경희 외(2019: p.9)

국제기구의 정의를 통해 보듯 성 주류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젠더 렌즈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개선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공공부문 전반의 정책 및 제도를 범위로 하므로 성 주류화에 대한 책임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책 입안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 주류화는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원 및 정책 과정 전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성평등 관점에서의 행정 개혁(김경희 외, 2016: p.13)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모든 정책 영역에 암묵적으로 내재화된 성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을 개혁하는 것(마경희 외, 2019: p.10)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 성 주류화의 접근방식

성 주류화의 접근방식은 의제 중심이냐 통합적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성 주류화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그림 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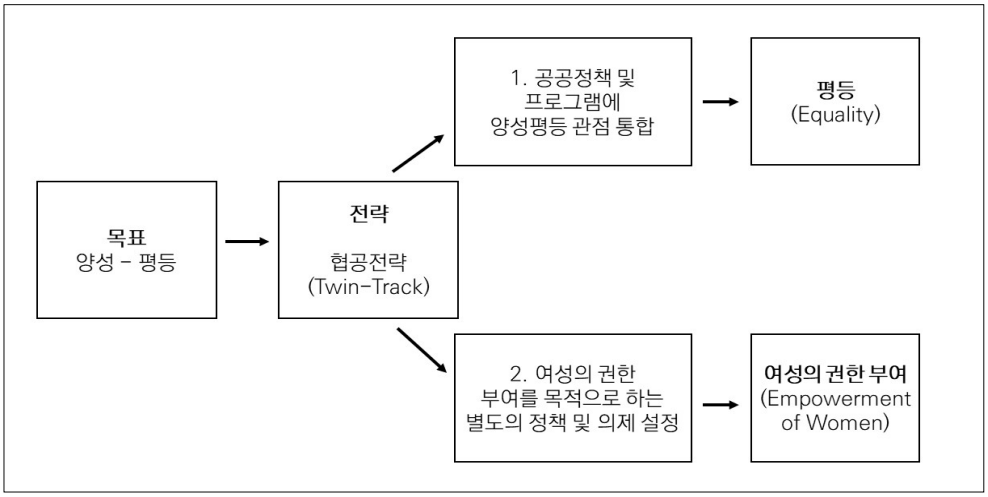

* 출처: 원숙연(2009: p.97; Shaw(2002)에서 재구성) 〈그림1〉

[그림 Ⅱ-1] 성 주류화의 접근 방식

첫째는 의제설정 접근(agenda-setting approach)이다. 의제설정 접근은 여성들이 주도하여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혁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은경, 2014: p.402). 정부정책의 여러 이슈들 중 성평등을 우선시하여 젠더 관점으로 정책 목적과 수단을 재고함으로써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2003년 호주제 폐지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은경, 2018: p.313). 이 방식의 강점은 의제설정에 대한 탑-다운(top-down)식의 접근 및 문제해결에 반대하면서 정책형성 외부에 있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다(이은경, 2014: p.403). 반면, 이 방식은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사회적 반발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는 통합주의 접근(integration approach)이다. 통합주의 접근은 기존의 정책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 이슈를 추가하는(add-on) 방식이다(원숙연, 2009: p.96). 이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전문가로부터 얻은 젠더 지식을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주의 접근은 정책 형성 과정에 젠더 전문가들의 역할을 허용함으로써 주류의 반발을 사지 않고 젠더 이슈를 주류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은경, 2014: p.402). 통합주의 접근의 강점은 정책 형성 과정에 젠더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이 허용되어, 성 주류화를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이은경, 2018: p.313). 반면, 통합주의 접근의 단점은 수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경, 2014:

p.402; Verloo, 2001: p.10에서 재인용). 즉 성 주류화가 기존 정책의 틀에 부응하는 기준으로 수용된다면 이로써 성불평등 이슈를 탈정치화시키면서 정책형성을 위한 기술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은경, 2014: p.402). 이러한 예시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연 1~2회 개최되며, 서면 방식으로 매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만을 주요 안건으로 의결할 뿐, 이외에 성 주류화 등에 대한 세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인다.

성 주류화의 접근방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며, 의제설정 접근 및 통합주의 접근이 갖는 현실성과 강점을 이용한 협공전략(twin-track)이 선호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젠더 이슈를 편입시키는 접근은 소극적이지만 저항이 적은 측면에서 활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젠더 이슈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하는 접근도 활용하는 상황적합적인 협공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원숙연, 2009: p.97).

나. 우리나라 성 주류화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 제도는 여성정책의 도입(1998년~2000년대 초반), 성 주류화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2002~2003년), 도구 적용 인프라 형성기(2003~2010년대 초반), 도구 중심의 성 주류화 정착기(2010년대 중반~)의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마경희 외, 2019: p.25).

현재,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제도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2]. 「양성평등기본법」은 2장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3장에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

1) 『양성평등기본법』제1장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1.4.20.).

2) 『양성평등기본법』제1장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021. 4.20. 개정, 시행 2021.10.21.).

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재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14조). 성 주류화를 위한 기본시책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최초로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4년 이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뿐 아니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마경희 외, 2019: p.28; 박선영 외, 2018: pp.54-57에서 재인용).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는 독자법 제정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33,195건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9년(2010회계연도)부터 일반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20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양식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시행연도인 2010년도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 29개, 사업 수 195개였으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은 38개, 사업 수는 304개이다.

성인지 교육은 2000년대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5월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성인지 교육과 관련된 주된 변화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2014년 5월)[3], 성인지 교육의 대상 확대(2019년 6월)[4] 등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

3)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2014. 5. 28 전부개정, 시행 2015. 7. 1.).

4)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시작된 성인지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에 의하여 매년 조사·공표 된다.[5] 2009년에 개발되어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공표되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마경희 외, 2019: p.57; 주재선 외, 2019: p.12에서 재인용).

성 주류화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 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도 자체·시행상의 한계점을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관행상 각 상임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선행으로 존재하는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도 구체화되지 못해 두 제도의 질적 연계의 한계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요구도 및 사업대상자·수혜자 등의 성인지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다(주재선 외, 2017: pp.81-85). 이에 더해 성인지 교육도 각 제도의 직무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 성인지적 정책 형성을 위한 역량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은 성 주류화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부담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즉, 성 주류화 제도는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유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비효율성, 비효과성, 현장의 피로감, 제도 전반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부재 등의 한계점이 지적된다(마경희 외, 2019: p.63).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

5)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19절(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 지표를 개발·보급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 하여야 한다 (2018.12.18. 개정, 시행 202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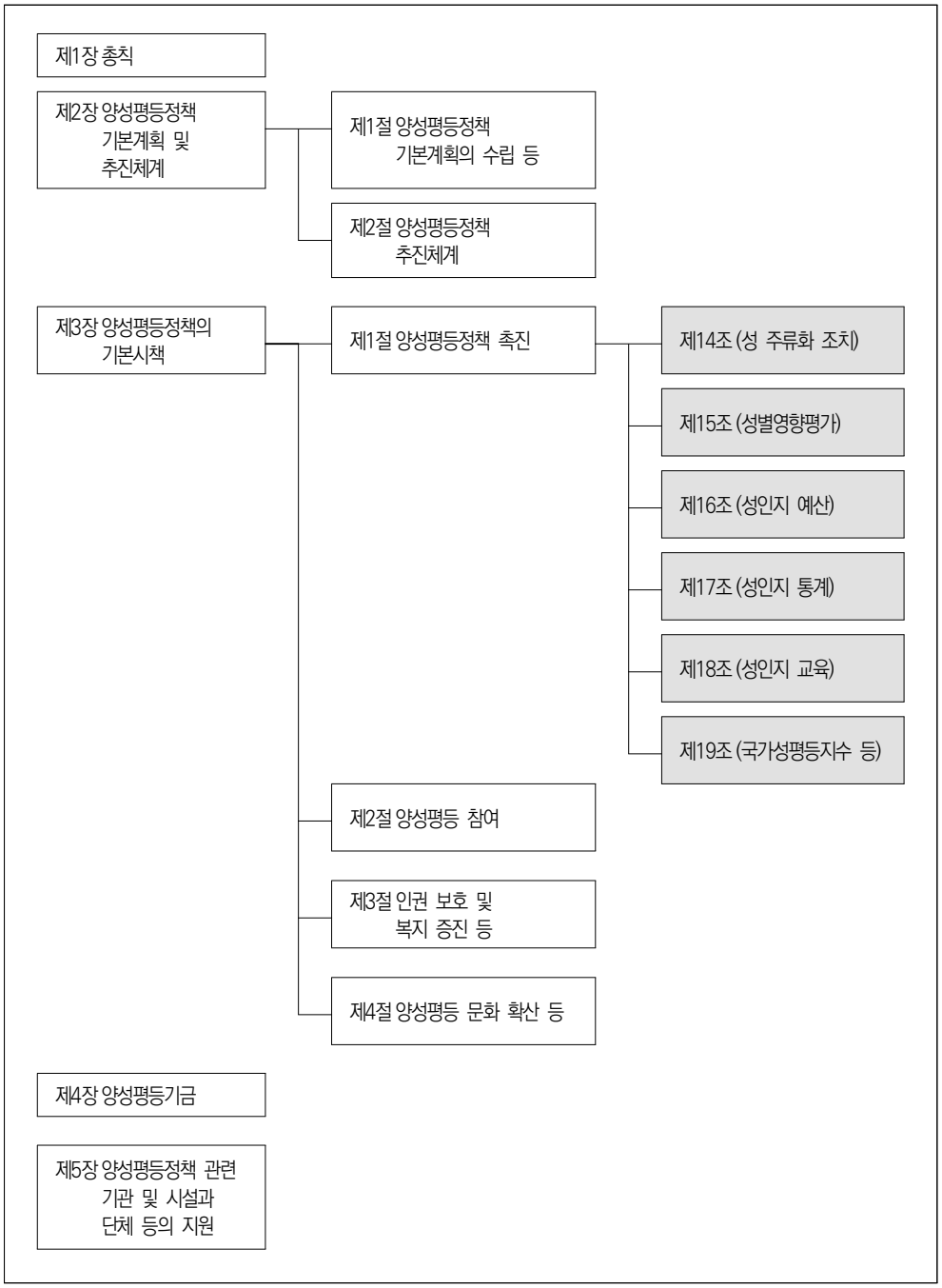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Ⅱ-2]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주류화 제도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가. 정의 및 법적 근거

앞 절에서 보았듯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에 규정된 성 주류화 제도의 하나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는 성 주류화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표 Ⅱ-3〉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

구분	정의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제도 도입하기 전까지	❒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이고,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젠더 이슈를 주류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젠더관점에서 공공지출과 세입을 재배분하자는 것(Budlender & Sharp with Allen, Kerri, 1998) ❒ 성인지적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기획이나 집행예산과 같은 예산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오히려 젠더 격차를 줄이는데 정부 예산 프로그램의 영향을 판단하고 이해를 돕는 성주류화,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을 돕는 부가적이고 분석적인 도구(IMF, 2003) ❒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정의 성평등한 참여를 중시하고 정책 서비스 전달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기회를 동등하게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기여하는 제도(UNDP, 2005; UNIFEM, 2006) ❒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이며,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인데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관점을 결합하고 성평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Council of Europe, 2005)
2009년, 한국의 기획재정부	❒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제도 시행 10년 전후	❒ 성인지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주기 내에, 그리고 행위자들에 걸쳐 다양한 잠재적 진입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화된 접근을 채택. 즉, 성인지 예산제도를 '예산과정의 전반적인 문맥 내에 특별한 절차와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성인지적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가미시키는 것'으로 정의(OECD, 2017: p.6) ❒ 성인지 예산제도란, 명확한 젠더관점을 전반적 예산 및 재정관리 과정 속에 적절한 절차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의 성인지성(젠더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OECD, 2017a: p.6; IMF, 2017: p.4에서 재인용)

* 출처: 조선주 외(2019: pp.23-25 및 요약v; 조선주 외(2012: p.16) 〈표 Ⅱ-1〉 에서 재인용) 참고하여 재구성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제도 도입 전까지는 UNDP, UNIFEM, Council of Europe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예산 분석,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9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제도 시행 10년 전후로 볼 때, OECD, IMF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의되었으며, 명확한 젠더관점을 전반적 예산 및 재정관리 과정 속에 적절한 절차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의 성인지성(젠더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성주류화 제도이자 재정활동에 기능하는 재정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성 주류화제도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수입 및 지출을 재구성하는 등 젠더에 근거한 예산 평가를 의미한다(조선주 외, 2019: p.22; Council of Europe, 2009: p.5; OECD, 2017: p.2에서 재인용). 한편으로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전반의 재정활동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국가의 공공정책 추진시 재정 투입 및 성과 평가에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재정제도이다(조선주 외, 2019: p.19).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6년「국가재정법」제정시 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09년에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무 및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성별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a: p.3).

〈표 Ⅱ-4〉「국가재정법」제27조, 제68조의2 등 및「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제16조(성인지 예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추진체계

성 주류화 제도이자 재정제도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6] 제9조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2014년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3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대상사업 검토, 성인지예산서 개요 확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7](기획재정부 훈령 제518호)을 제정하여 기존의 상설협의체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 부처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침/양식을 송부 받아 대상사업 후보군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협의회 의결 후 심의·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는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 (최종검색일자: 2021.09.24.).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성인지예·결산협의회운영규정/(518,20201022) (최종검색일자: 2021.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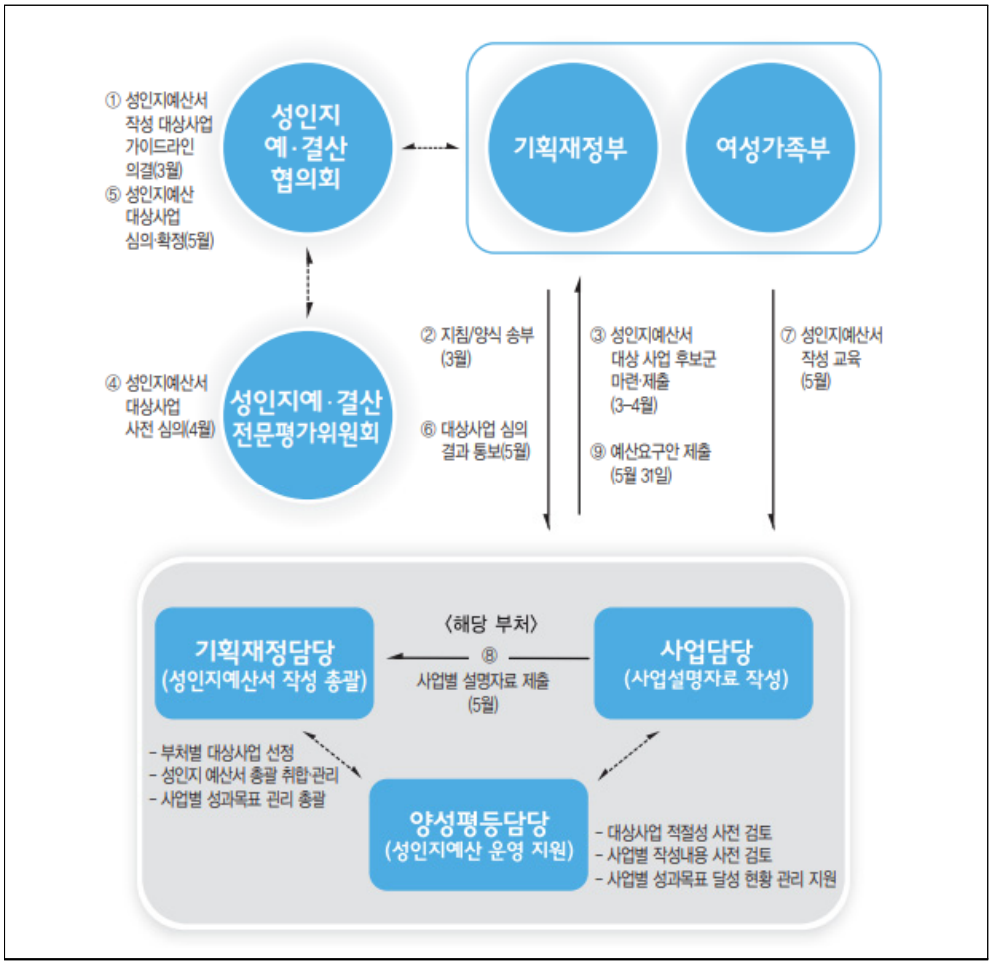

* 출처: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p.15)

[그림 Ⅱ-3] 2022년 성인지예산 업무 추진체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8]에 따라 기존의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를 확대·개편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즉,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공동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8)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성과제고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이 당연직 위원, 4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안건 사전검토 및 협의회 위임 사항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 하에 전문가 15인 이내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평등지수분야를 중심으로 3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2인의 평가위원이 구성된다. 2인 중 1인은 젠더전문가, 1인은 재정전문가로 구성하여 성 주류화 제도이자 재정제도인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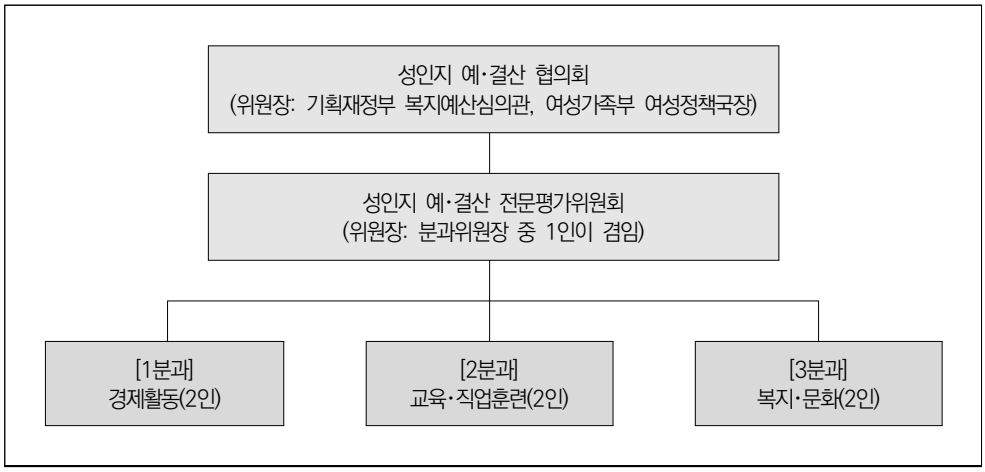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1a: p.11)

[그림 Ⅱ-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조

이를 토대로 전문평가위원회는 4월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9월에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회를 거쳐 전문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는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하는 과정이며,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는 연속으로 3개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성과-환류를 평가하여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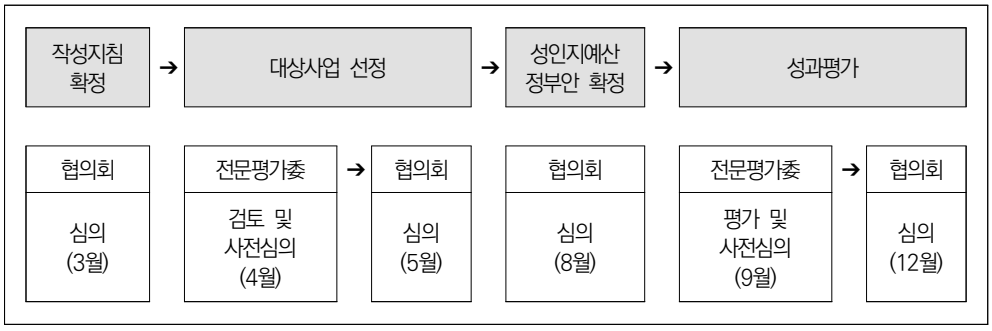

* 출처: 성인지예·결산협의회(2021a: p.4)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Ⅱ-5]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체계도

다. 현황

성인지 예산서는 2009년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이래 13번의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었다. 2009년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에 대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작성기관은 30~40여개로 대부분의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시 대상사업 유형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대상사업 수 및 예산액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Ⅱ-5〉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2010년~2021년)

(단위: 개,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작성기관	29	34	34	34	42	42	43	42	41	33	35	38
대상사업	195	245	254	275	339	343	331	350	345	261	284	304
성인지예산	7.5	10.2	11.3	13.3	23.0	26.2	28.0	29.6	33.8	25.4	31.7	35.3

* 주: 국회확정안 기준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21: p.3)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주로 작성기관 수, 대상사업 수, 예산액 규모가 부각되었으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편성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성 주류화 측면에서 제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및 양식을 개선하면서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표 Ⅱ-6〉 연도별 성인지예산 추진 경과(2010년~2020년)

년 도	추 진 경 과
2006년	ㅇ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09년	ㅇ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 총 예산규모 7조 3,144억원(전체예산 202.8조원 대비 3.6%) 편성
2010년	ㅇ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34개 기관 245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10조 1,748억원(전체예산 309.6조원 대비 3.3%) 편성
2011년	ㅇ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 기준 총 예산규모 7조 4,611억원 중 7조 4,208억원 집행 ㅇ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및『2012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34개 기관 254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10조 7,042억원(전체예산 326.1조원 대비 3.3%) 편성
2012년	ㅇ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34개 기관 241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10조 2,076억원 중 10조 296억원 집행 ㅇ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및『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34개 기관 275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12조 9,137억원(전체예산 342.5조원 대비 3.8%) 편성
2013년	ㅇ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34개 기관 254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11조 4,456억원 중 11조 426억원 집행 ㅇ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및『2014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42개 기관 339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22조 4,349억원(전체예산 357.7조원 대비 6.3%) 편성
2014년	ㅇ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35개 기관 278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13조 5,570억원 중 13조 73억원 집행 ㅇ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42개 기관 343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26조 626억원(전체예산 376.0조원 대비 6.9%) 편성
2015년	ㅇ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42개 기관 339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22조 9,401억원 중 22조 6,097억원 집행 ㅇ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6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43개 기관 332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27조 7,602억원(전체예산 386.7조원 대비 7.2%) 편성
2016년	ㅇ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42개 기관 343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27조 3,275억원 중 26조 4,348억원 집행 ㅇ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7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42개 기관 351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29조 4,563억원(전체예산 400.7조원 대비 7.4%) 편성
2017년	ㅇ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43개 기관 331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29조 675억원 중 28조 4,485억원 집행 ㅇ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8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41개 기관 345개 세부사업, 총 예산·기금규모 34조 3,961억원(전체예산 429.0조원 대비 8.0%) 편성

년 도	추 진 경 과
2018년	ㅇ『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42개 기관 350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31조 8,107억원 중 31조 2,697억원 집행 ㅇ『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전체 사업: 33개 기관 261개 세부사업 - 직접목적 사업: 20개 기관 89개 세부사업, 9조 591억원(전체예산 470.5조원 대비 1.9%) 편성 - 간접목적 사업: 29개 기관 172개 세부사업 ※ 직접목적 사업: 성평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직접목적 사업의 사업 수와 예산은 부처가 양성평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하며, 부처의 성평등 실현 의지로 표출된 것 ※ 간접목적 사업: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으며 사업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간접목적 사업의 사업 수와 예산은 부처가 예산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이의 확대는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대상 사업의 성별 수혜 격차를 조정하고, 성과목표 등을 점검하여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부처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2019년	ㅇ『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41개 기관 345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35조 6,365억원 중 35조 1,815억원 집행 ㅇ『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0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전체 사업: 35개 기관 284개 세부사업 - 직접목적 사업: 20개 기관 89개 세부사업, 11조 8,233억원(전체예산 513.5조원 대비 2.3%) 편성 - 간접목적 사업: 33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 -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7기관 26개 세부사업 ※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20년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
2020년	ㅇ『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작성 - 33개 기관 261개 세부사업, 세출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기준 총 예산·기금규모 27조 5,388억원 중 27조 1,113억원 집행 ㅇ『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전체 사업: 37개 기관 304개 세부사업 - 직접목적 사업: 20개 기관 94개 세부사업, 12조 5,262억원(전체예산 555.8조원 대비 2.2%) 편성 - 간접목적 사업: 35개 기관 210개 세부사업 -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7기관 32개 세부사업 ※ '21년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

* 주: 정부안 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p.8)

1) 대상사업의 변화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은 매년 조금씩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지침에는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까지 포함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작성항목의 변화가 매년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다만, 대상사업은 작성 기준 중에서 큰 변화에 해당

하기 때문에 2019년 대상사업의 구분이 크게 변경되기 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2010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 작성된 이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작성한 2010년도는 예산사업만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예산사업 중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후 2011년도부터는 전년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던 사업은 의무적으로 익년도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추가되었다. 이는 한번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를 단년도만 작성할 경우 성과관리가 되지 않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사업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서도 기존의 여성정책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도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후 가장 큰 대상사업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전년도 작성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의 두가지로 통폐합하였다. 직접목적사업은 기존의 양성평등정책 사업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간접목적사업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그 외에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외에 성평등추진중점사업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성평등추진중점사업은 익년도 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별도 표기한 것이다. 즉, 기존에 직접목적 및 간접목적 외에 별도로 추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사업 중에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골라서 별도로 표기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성평등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이 별도 표기된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젠더폭력 관련 사업이 성평등 추진중점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22년에는 일자리 사업이 성평등추진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별도 표기되었다.

〈표 Ⅱ-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과 세부지침

연도	작성지침-작성 대상사업
'10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 ㅇ 기준 및 대상사업은 별도 통보 예정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고: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양성평등사업: 양성평등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추진 사업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 기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 * 남녀평등기본계획(노동부), 여성농어민육성종합계획(농식품부) 등 ② 성별영향분석사업: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 사업 (기금 제외) 중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
'11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ㅇ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3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ㅇ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14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연도	작성지침-작성 대상사업
'15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16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17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18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ㅇ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19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으로 하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라 분류**
'20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ㅇ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
'21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연도	작성지침-작성 대상사업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1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
'22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2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히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 출처: 조선주 외(2019: p.100~102; 기획재정부(2009: p.42; 2010: p.46; 2011: p.55; 2012: p.44; 2013: p.49; 2014: p.55; 2015: p.45; 2016: p.45; 2017: p.45; 2018: p.47; 2019: p.47)에서 재인용),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p.10; 2021: p.10)를 이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 주: 굵은 글씨는 해당연도 추가된 내용

2) 작성항목의 변화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은 2010년도 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이후 매년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이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결산서와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변경되어 왔다. 아래의 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2010년도 처음 작성양식의 초안이 적용된 이후 2011년도부터 수정되어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작성양식이 구축되었다. 성인지예산서의 핵심은 세부사업에 대해 작성하는 사업별 설명자료이며, 현재와 같은 사업별 설명자료의 틀이 2011년부터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도 사업별 설명자료부터 세부사업(혹은 내역사업)의 사업명과 예산내역을 기재하도록 추가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현재의 양식과 같이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의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작성양식이 변경되었다.

2015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결산서와의 정합성 및 환류를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산출근거에 성별영향평가결과 및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 반영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대상사업이 직접목적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변경되어 성인지예산서

에서도 사업유형의 표기항목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에는 성평등 중점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 작성항목이 다시 변경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표기는 성인지예산서와 성평등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Ⅱ-8〉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작성항목과 주요 내용

연도	작성항목
'10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1) 성평등 목표 □ ㅇ -, * 2) 2010년도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 - 성인지예산서 총괄표 □ 양성평등정책 사업: □ 성별영향분석 사업: 2. 사업 총괄표 3. 사업 설명서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지난 3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 □ 세부내역 □ 기대효과 □ 성별영향분석 3개년 ①성별 수혜 분석(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현황) ②수혜의 성별 편차 원인 분석 ③수혜의 성별 편차 해결을 위한 대안(예산 및 제도개선 반영 사항) ④성 평등 목표 설정
'11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 □ **해당연도 예산안**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분야**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 해당연도 성과목표
'12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해당연도 예산안 □ 사업목적

연도	작성항목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분야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 해당연도 성과목표
'13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 사업별 현황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해당연도 예산안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 해당연도 성과목표**(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14년도 예산 작성양식	전년도와 동일
'15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 사업별 현황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해당연도 예산안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 해당연도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3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타)**
'16-'18년도 예산 작성양식	전년도와 동일
'19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 사업별 현황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사업유형(직접/간접 목적)** □ 해당연도 예산안

연도	작성항목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 해당연도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7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타)
'20년도 예산 작성양식	1. 성평등 목표 □ ㅇ -, * 2. 사업총괄표 □ 사업별 현황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해당연도 예산안 □ **사업유형(성인지 사업유형,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분석 결과**) □ 해당연도 성과목표 ㅇ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18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타)
'21~22년 예산 작성양식	상동

* 출처: 조선주 외(2019: p.110~112; 기획재정부(2009: pp.123-129; 2010: p.137-139; 2011: p.170-173; 2012: pp.138-141; 2013: pp.138-143; 2014: pp.142-147; 2015: pp.141-146), 기획재정부 외(2016: pp.73-78; 2017: pp.73-78; 2018: pp.75-80; 2019: pp.73-78)에서 재인용), 기획재정부 외(2020: p.16~21; 2021: p.18~23)를 이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 주: 굵은 글씨는 해당연도 추가된 내용

3. 국가성평등지수의 현황

가. 정의 및 법적 근거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및 현황을 측정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도에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풀 구성을 시작으로 최종 8개 분야 21개 대표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하였다(김경희 외, 2020: pp.9-10). 대표지표 이외의 나머지 지표들은 관리지표로 분류하여 분야별 성평등

수준 및 성불평등 원인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현재 국가성평등지수의 법적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다. 2009년 국가성평등지수 개발 시에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산정·발표하였으나,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표되어 제19조가 법적근거로 마련되었다(김경희 외, 2020: p.10).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1항에서는 국가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인권,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Ⅱ-9〉「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국가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지수인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9)]

9) 김경희 외(2020; pp.11-12) 수정 및 인용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수준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성과지표로 측정된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성별 격차로 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격차 해소에 두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수준 개선과 성격차의 해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수준 개선에 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항상 낮은 수준의 지표 개선일 것이고, 성격차 해소에 둔다면 성별 간 격차가 큰 지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측정방법론 관점으로 볼 때 성별 격차의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이라는 목적으로도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와 함께 관리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대표지표는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에 활용하고, 관리지표는 성평등 변화를 점검하고 성평등 변화 원인, 성평등 정책 효과 등을 추적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나. 지표 체계 10)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김경희 외, 2020: p.12; 주재선 외, 2019: pp.15-16에서 재인용).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1항과 시행령 제15조를 바탕으로,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10) 김경희 외(2020: p12-13) 인용.

복지 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따라 3개로 구성되었고, 정책영역의 분야는 시행령 15조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인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 즉, 적극적 조치(제2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1조), 공직 참여(제22조), 정치 참여(제23조), 경제활동 참여(제24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제25조), 일·가정 양립지원(제26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제27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제28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연계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항 즉, 성차별의 금지(제2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제30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1조), 성희롱 실태조사(제32조), 복지증진(제33조), 건강증진(제3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복지, 보건, 안전 분야와 연계 구성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5조는 복지, 보건, 인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분야는 광범위한 분야로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서는 안전으로 그 범위를 좁혀 제시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된 조항, 즉 양성평등한 가족(제35조), 양성평등 교육(제36조), 양성평등 문화조성(제37조), 양성평등주간(제38조), 여성친화도시(제39조), 국제협력(제40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제4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연계 구성하고 있다.

각 영역 및 분야의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2009년에 개발된 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거쳐 변화가 있었다. 개편된 지표는 성평등 수준이 완전 평등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적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당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2019년에는 복지 분야의 지표인 빈곤가구주 비율가 성별 빈곤인구로 변경되었다(김경희 외, 2020: p.9).[11] 이외 다른 지표는 산정의 안정성을 위해 2017년부터 변경 없이 8개 분야, 25개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는 〈표 Ⅱ-10〉과 같다.

---

11) 측정단위가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빈곤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으로 바뀌었다(김경희 외, 2020: p.9; 주재선 외, 2017: pp.13-18에서 재인용).

〈표 Ⅱ-10〉「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정책영역	분야	지표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 국회의원 비율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관리자 비율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년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2 여성의 인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 비빈곤인구 비율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 장애인고용률
	보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3 성평등 의식·문화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 가사노동시간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 여가시간 • 여가 만족도 • 성별 정보화 격차

* 출처: 주재선 외(2019: p.16) 〈표 Ⅱ-3〉 인용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는 5단계의 산정과정을 거쳐 종합지수로 산정된다. 1단계는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 값을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혹은 100)'로 만드는 것이다. 2단계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격차에 초점을 두므로 성별 수준 자체보다 성별 성취수준을 보기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한다. 3단계는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가중치(Weight)로 보정 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로, 분야별 지수 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5단계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된 종합 지수(Composite Index)로, 분야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되며, 이때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산출된다.

* 출처: 김경희 외(2020: p.15) 〈그림 Ⅱ-1〉 인용

[그림 Ⅱ-6]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다. 현황[12)]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여성가족부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주로 전년도에 생산되어 있는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측정된다. 현재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는 2019년 기준 통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9년 기준 73.6점이다. 최근 5년간의 국가성평등지수 현황은 〈표 Ⅱ-11〉과 같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종합지수는 2015년 기준 70.5점이었

12) 김경희 외(2020: pp.25-28) 수정 및 인용.

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73.6점으로 나타나,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5년 이후 매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1〉 국가성평등지수 현황(2015년~2019년)

(단위: 점)

영역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지수		70.5	71.4	72.2	73.1	73.6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1.3	72.3	73.2	74.7	75.7
	의사결정	27.7	30.4	33.5	36.2	38.1
	교육·직업훈련	93.4	93.6	93.1	94.1	93.9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73.7	73.7	75.4	76.3	75.2
	보건	97.1	97.3	96.8	96.1	95.7
	안전	64.9	67.0	65.5	64.9	66.7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56.8	57.5	59.4	61.2	62.8
	문화·정보	86.6	86.2	87.5	87.4	86.2

* 주: 국가성평등지수는 '0.0(불평등)'~'100.0(평등)'의 범주를 가짐
** 출처: 여성가족부(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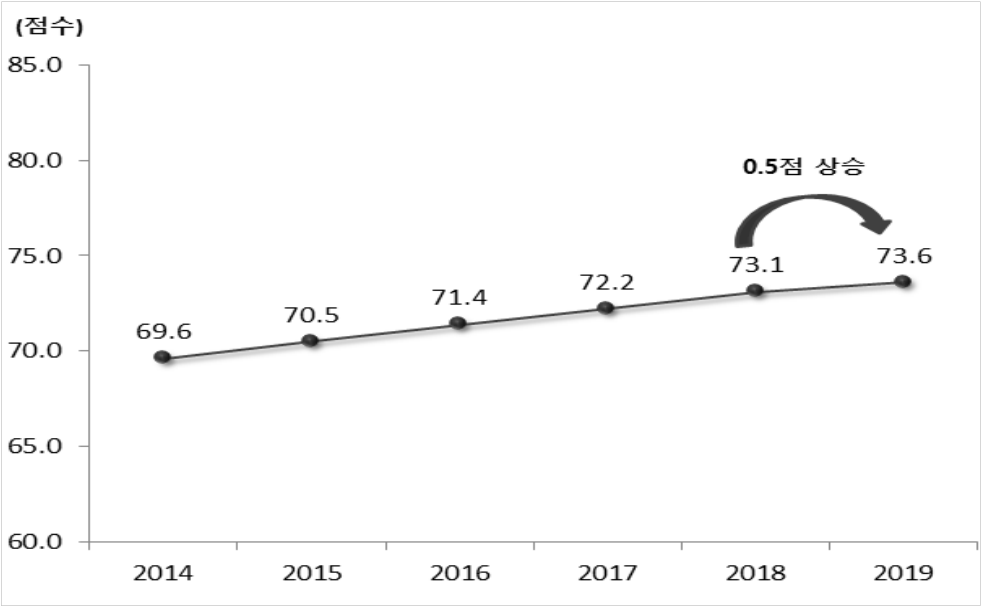

* 출처: 김경희 외(2020: p.25), 〈그림 Ⅲ-1〉 일부 인용

[그림 Ⅱ-7]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정책영역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점수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점수가 74.5점으로 다음이었으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6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기준 77.0점에서 2019년 기준 79.2점으로 2.2점 상승하였으나, 2016년 기준 79.3점에 비해서는 낮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4년 기준 71.8점에서 2019년 기준 74.5점으로 2.7점 상승하였으나 2015년 기준 71.7점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바 있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4년 기준 63.4점에서 2019년 기준 69.2점으로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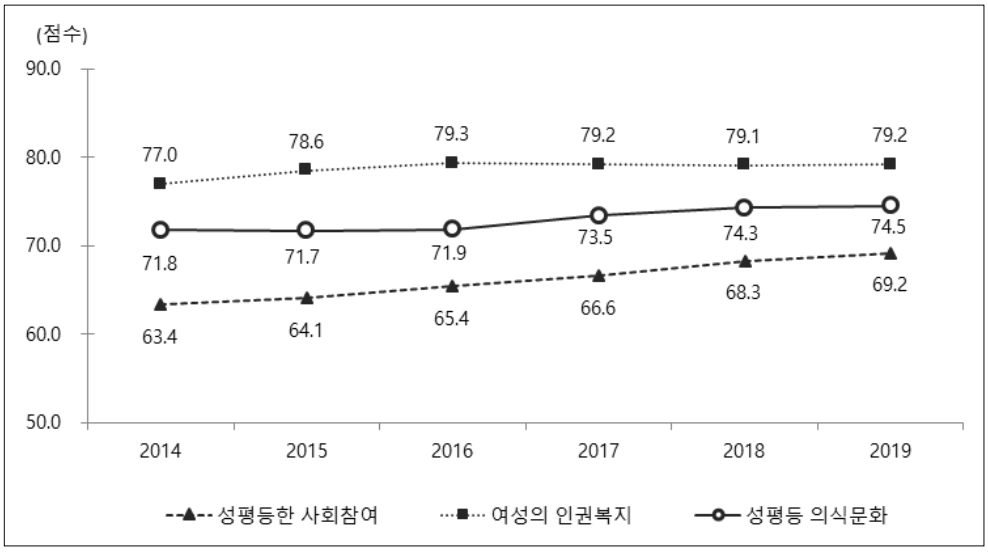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김경희 외(2020: p.28), 〈그림 Ⅲ-3〉 일부 인용

[그림 Ⅱ-8]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며, 이 중 2019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3.9점이었고, 다음으로 경제활동 분야가 75.7점이었으며, 의사결정 분야는 38.1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점수가 높은 분야로서 2014년부터 93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분야는 2014년 71.0점에서 2019년 75.7점

13) 김경희 외(2020: pp.28-31) 인용 및 수정.

으로 4.7점 상승하였고,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25.9점에서 2019년 38.1점으로 12.2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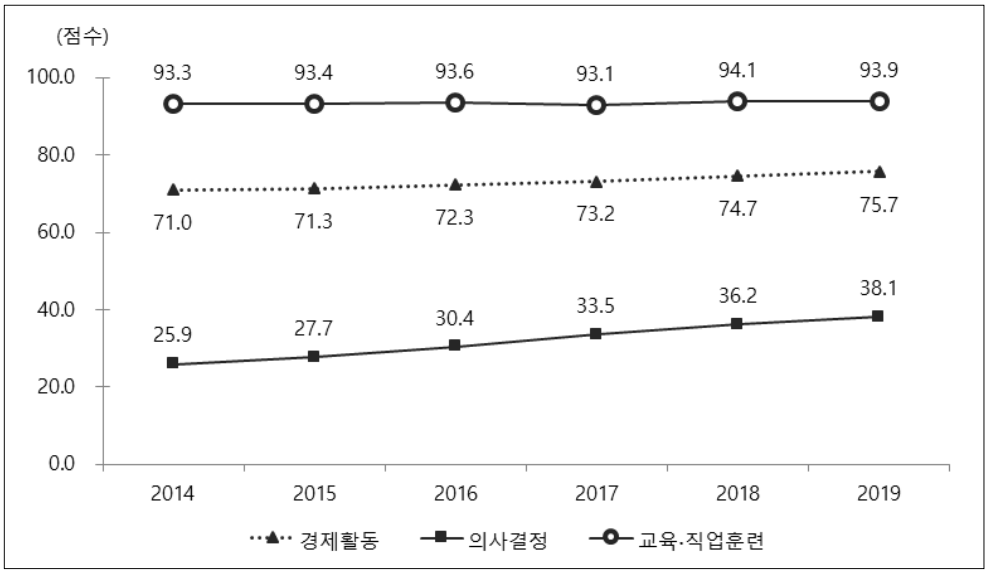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김경희 외(2020: p.29), 〈그림 Ⅲ-4〉 일부 인용

[그림 Ⅱ-9]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는 〈표 Ⅱ-12〉와 같이 산정된다. 경제활동 분야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로, 성별 임금격차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로, 상용근로자 비율은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로 계산된다.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비율은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로,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로, 관리자 비율은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로 계산된다. 한편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 연수는 평균 교육 연수의 성비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로,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은 임금근로자 중 직업교육 훈련경험이 있는 비율의 성비로 계산된다.

〈표 Ⅱ-12〉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15-64세 인구)	X = [F / M]
성별 임금격차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전국구+지역구)	X = W_m/f × [F / M]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 [F / M]
관리자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 [F / M]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임금근로자 중 직업교육 훈련경험이 있는 비율의 성비	X = [F / M]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 출처: 김경희 외(2020: p.21) 〈표 Ⅱ-8〉 일부 인용

여성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며, 이 중 2019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로 95.7점이었고, 다음으로 복지 분야가 75.2점이었으며, 안전 분야는 66.7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20: pp.28-31).[14] 보건분야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95점 이상의 국가성평등지수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분야는 2014년 기준 70.6점에서 2019년 기준 75.2점으로 4.6점 상승하였다. 안전분야는 2014년 기준 64.3점에서 2019년 기준 66.7점으로 2.4점 상승하였으나, 최근 6년 이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14) 김경희 외(2020: pp.28-31) 인용 및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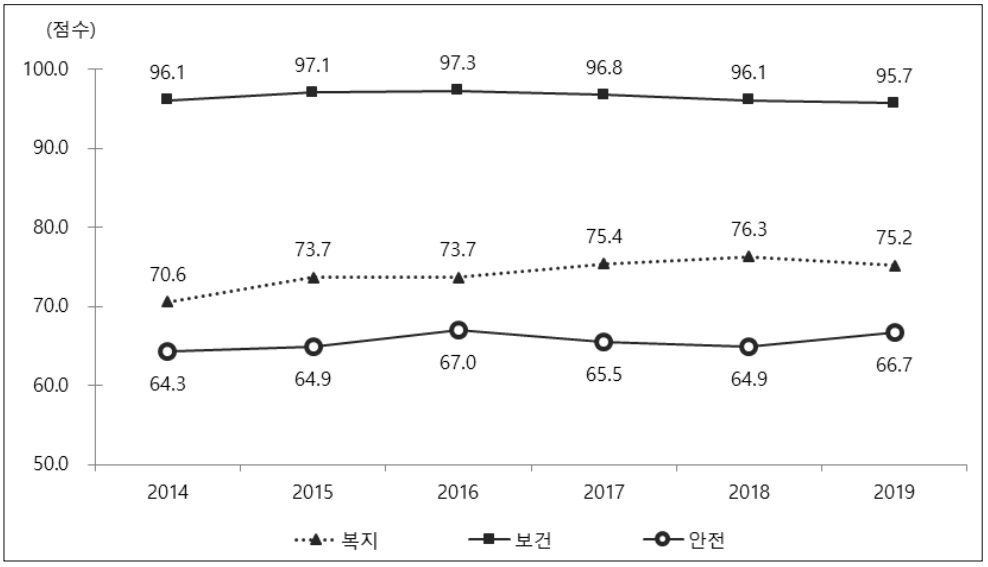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김경희 외(2020: p.29), 〈그림 Ⅲ-5〉 인용

[그림 Ⅱ-10]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는 〈표 Ⅱ-13〉과 같이 산정된다. 복지 분야에서 비빈곤 인구 비율은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비빈곤 인구 성비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로,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률 성비로 계산된다. 보건 분야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로,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로, 스트레스 인지율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로 계산된다. 한편, 안전분야에서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은 대상 인구 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로 계산된다.

〈표 Ⅱ-13〉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복지		
비빈곤 인구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비빈곤 인구 성비	X = [F / M]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 [F / M]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성비	X = [F / M]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X = [F' / M'], F'=100-F, M'=100-M 여기서 F'과 M'은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비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대상 인구 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F / M)]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15]	X = [Sm/ Sf](-1) Sm 혹은 Sf = $[(300-x]/300]$으로 표준화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 출처: 김경희 외(2020: p.21) 〈표 Ⅱ-8〉 일부 인용

15)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낸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영역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 문화·정보 분야는 86.2점, 가족 분야는 62.8점으로, 두 영역 중에는 문화·정보 분야가 가족 분야보다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분야는 2014년 56.2점에서 2019년 62.8점으로 6.6점 상승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4년 87.4점에서 2019년 86.2점으로 1.2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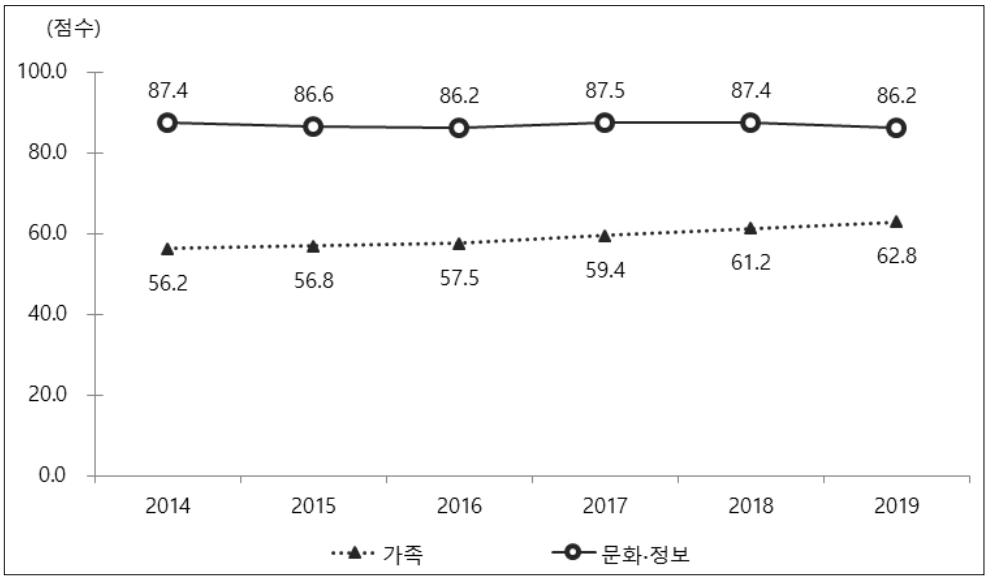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김경희 외(2020: p.32) 〈그림 Ⅲ-6〉 인용

[그림 Ⅱ-11]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는 〈표 Ⅱ-14〉와 같이 산정된다. 가족 분야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취업상태를 고려한 가사시간 성비(역수)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자 성비(역수)로 계산된다. 문화·정보분야에서 여가시간은 취업상태를 고려한 여가시간 성비로, 여가 만족도는 여가만족도 성비로, 성별 정보화 격차는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로 계산된다.

〈표 Ⅱ-14〉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지표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가족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16]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F / M] (-1) × $\frac{1}{1.0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X = [F / M] (-1) ×100
문화·정보		
여가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여가시간 성비[17]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 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성별 정보화 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 출처: 김경희 외(2020: p.21) 〈표 Ⅱ-8〉 일부 인용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보건 분야가 9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3.9점), 문화·정보 분야(86.2점), 경제활동 분야(75.7점), 복지 분야(75.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8.1점으로 8개 분야 중 지수값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고, 가족 분야(62.8점), 안전 분야(66.7점)는 성평등 수준이 종합지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9년의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를 비교해 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12.2점)이다. 이후 가족 분야(6.6점), 경제활동 분야(4.7점), 복지 분야(4.6점), 안전 분야(2.4점), 교육·직업훈련 분야(0.6점) 순이다. 반면, 2014년 대비 2019년 점수가 보건분야는 0.4점, 문화·정보 분야는1.2점이 하락하였다.

16) T_Em, T_Nm, T_Ef, 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17) LT_Em, LT_Nm, LT_Ef, L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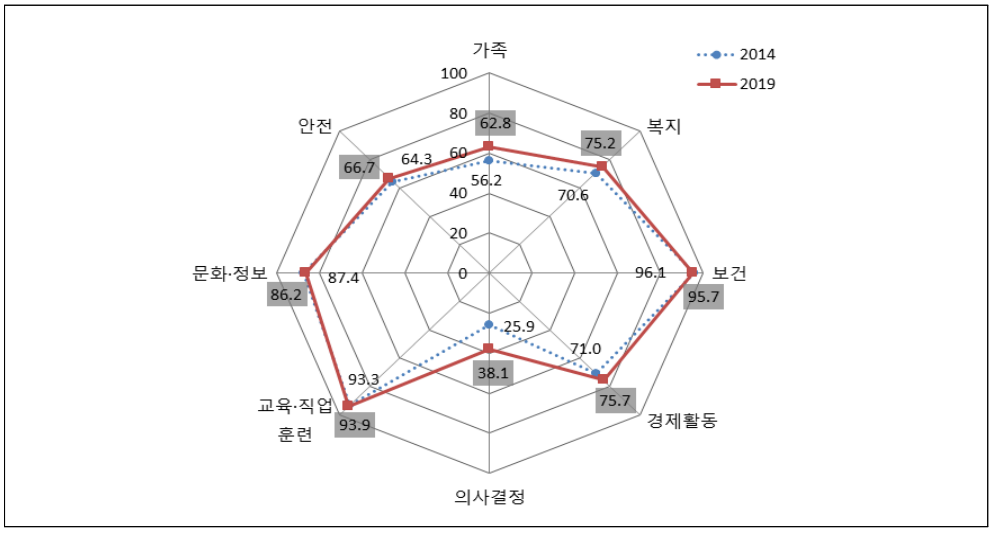

* 출처: 김경희 외(2020: p.25) [그림 Ⅲ-1]

[그림 Ⅱ-12]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점수 변화 추이

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

가. 연계 필요성

1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어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각 제도는 개별 제도를 향한 정책적 요구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성 주류화 제도로서의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들과 연계 요구를 받고 이에 대응하여 왔으나, 성 주류화 제도 전반의 체계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8]. 이에 대하여 도구 적용 중심의 성 주류화가 정착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마경희 외, 2019: p.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주류화를 위한 협공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각 제도의 운용을 통해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젠더 이슈를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필요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요구되고 있다.

---

18)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는 2015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박선영 외, 2018: 55).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는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 주류화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적극적 활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성 주류화는 도구 적용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성 주류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구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내포한다(마경희 외, 2019: p.13).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19]는 성 주류화 전략, 차원, 조건, 방법과 도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성 주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도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방법들의 활용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EIGE, 2016: p.5). 각 도구들이 체크리스트의 적용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EIGE, 2016a: p.6).

* 출처: 마경희 외(2019: p.14;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What is gender mainstreaming.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what-is-gender-mainstreaming(최종검색일: 2019.12.5.)에서 재인용) [그림 Ⅱ-1]

[그림 Ⅱ-13]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

19)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What is gender mainstreaming.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what-is-gender-mainstreaming (최종검색일: 2021.9.21.).

현행 성 주류화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주축으로 매년 마련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성평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Ⅱ-13]에 제시된 모든 정책과 제도들이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때 국가의 성평등 수준은 제고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국가성평등지수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별수혜분석을 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평등지수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로의 환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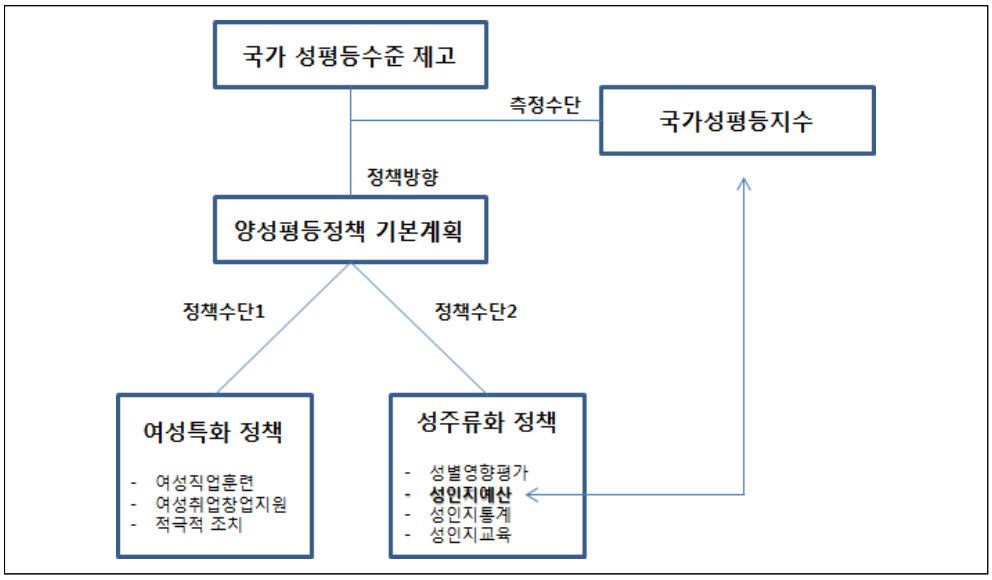

* 출처: 김효주 외(2019: p.82)[20]

[그림 Ⅱ-14]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관계

다른 한편, 국회 또한 2011회계연도부터 성 주류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국가의 예산 운용을 변화시키고 정책변화를

20) 국가성평등수준 제고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관계는「양성평등기본법」제7조, 국가성평등수준 제고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는 주재선 외(2018: p.3), 국가성평등수준 제고와 여성특화정책 및 성 주류화정책의 관계는 마경희(2014: p.456, 〈표 1〉에서 정책수단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발췌)를 참조하여 재구성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안 편성 시 국가성평등지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인지예산서에 국가성평등지수에 기반한 주요 분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의 틀을 재구성하자는 의견, 국가성평등지수 낮은 분야에 대한 향후 관리 목표를 성인지 예산서에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대상사업 적극 발굴,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 및 대표지표와의 연계, 국가성평등지수 하락 분야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고 있으나, 두 제도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pp.15-17).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사이에 연계성이 없으며, 그 이유를 두 제도의 연계가 2020년에 시작되었다는 점, 사업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설정이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젠더 렌즈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개선하는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수행의 결과가 국가성평등지수로 파악되고, 국가성평등지수의 취약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성인지 예산제도로 환류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Ⅱ-15〉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에 관한 국회 논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여성가족위원회 ('11 예산)	• 성인지예산서는 현재와 같은 사업설명 자료의 취합이 아니라 입법취지대로 국가의 예산 운용을 변화시키고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성숙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수에 기반하여 주요 분야에 대한 분석을 성인지예산 보고서에 포함**하는 등 보고서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위원회 ('12 예산)	• 성인지예산서가 국가의 재정운용방향과 성평등 구현을 연계한 분석서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구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특히 집중하여야 할 분야(예를 들면,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투입을 확대하거나 사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등의 목표가 성인지예산서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위원회 ('17 예산)	• 제도 운영이 8년차에 들어감에도 기관별로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결산서와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또 **국가성평등지수와 중기재정계획, 기관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대상사업 간의 체계적 설정과 관리 없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동 제도의 운영으로 성평등 개선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여성가족위원회 ('18 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이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안 편성 시 국가성평등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국가 총 예산배분의 성평등 기대효과를 진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이 실효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향후 **국가성평등지수 산출 8개 분야 및 25개 대표지표와 성인지예산안 편성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위원회 ('19 예산)	• **국가성평등지수 중 가장 성별격차가 큰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예산증가율이 낮은 것은 문제로 보이므로 이 의사결정 영역 포함된 **예산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인지예산안 편성 시 국가성평등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국가 총 예산배분의 성평등 기대효과를 진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이 실효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성불평등이 현저한 분야에 대한 비중있는 예산 투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가족위원회 ('20 예산)	•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국회예산정책처 ('18 예산)	• 성인지 예산 제도가 궁극적으로 국가 성평등 제고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하락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편성상의 적절성과 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사업들을 성인지 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1 예산)	• 간접목적 사업 분류 기준의 구체화 및 객관화가 필요함. 특히, '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적용 범위의 설정이 요구됨 • 간접목적 사업의 성인지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함. 성평등 개선조치 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결사 등을 통해 제시된 성과목표와 부처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연계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국가성평등지수 취약 분야**를 정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 구분의 수치는 회계연도 기준임

** 출처: 김효주 외(2019: pp.80-8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0: p.40; 2011: p.50; 2016: p.67; 2017: pp.90,93; 2018: p.74), 국회예산정책처(2017: pp.84~89)에서 재인용) 및 국회예산정책처(2020 pp.17-18, 23, 26)로 인용 및 수정.

나. 연계 현황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인지예산서 양식상 사업유형에의 연계이며,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제도 연계이며, 셋째,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상 연계이다.

1) 성인지예산서 사업유형 연계

성인지 예산제도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부터 작성양식을 변경함으로써

대상사업별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시 해당 사업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중 어느 분야의 성불평등 해소 및 성평등 촉진을 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림 Ⅱ-15]를 보면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의 형식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예산 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일대일 대응이 되었다는 점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 사업유형: 직접목적 / 간접목적	⇨	□ 사업유형 ○ 성인지 사업유형: 직접목적 / 간접목적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성평등추진중점사업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경제활동 / 의사결정 / 교육·직업훈련 / 복지 / 보건 / 안전/ 가족 / 문화·정보**

* 출처: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p.14).

[그림 Ⅱ-15]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반영 내용

그 결과, 2020~202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사업별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와 예산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6〉 2020~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단위: 개, 백만원)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전체	326	31,708,942	347	35,285,446	399	26,882,071
경제활동	108	16,702,026	103	18,570,482	125	16,555,471
의사결정	14	7,095	14	6,164	13	6,150
교육·직업훈련	94	1,589,925	99	1,496,655	119	3,175,356
복지	42	12,285,820	51	13,785,201	47	5,389,352
보건	12	157,582	17	348,001	19	341,642
안전	29	283,413	34	290,598	38	447,977
가족	13	623,280	12	693,869	15	823,747
문화·정보	14	59,800	17	94,476	23	142,378

* 주: 사업수는 내역사업수 기준으로 산정함. 성인지 예산액은 '20~'21년 국회확정안, '22년은 정부안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9a, 2019b, 2020a, 2020b, 2021a, 2021b)

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제도 연계

「양성평등기본법」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고려할 연계 지점을 마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는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규정하면서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성 주류화 조치의 하나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제16조2항에서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에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성인지 예산을 적극 개발·활용하는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유형의 연계 외에도 자문 및 교육훈련 등에서도 국가성평등지수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Ⅱ-17〉「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제16조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제16조2항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지점은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문화·정보)를 중심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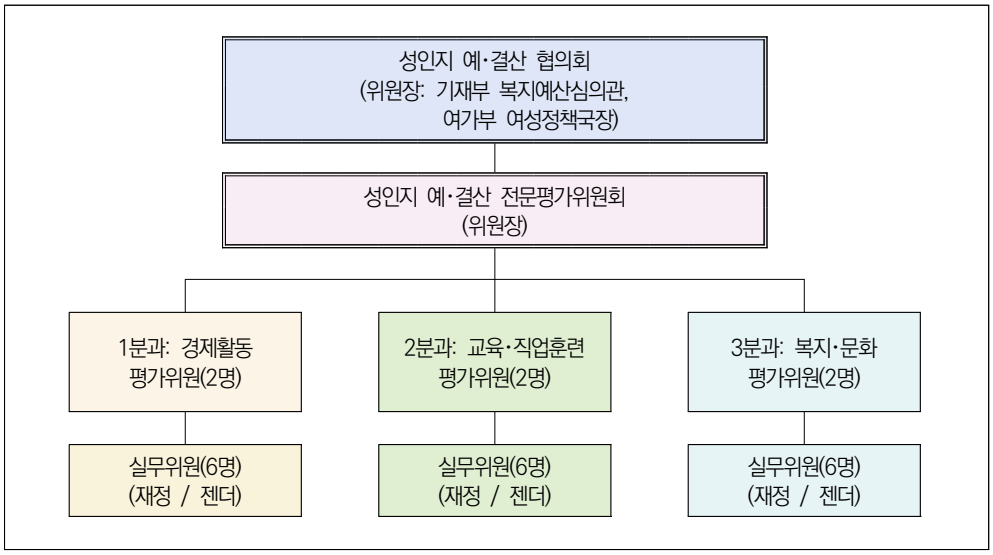

* 출처: 성인지예·결산협의회(2021b: p.1)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Ⅱ-1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조

1분과는 경제활동, 2분과는 교육·직업훈련, 3분과는 복지·문화를 중심으로 전문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위원회 내에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전문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과별 재정·젠더 전문가 6인 등 18인을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각 분과별 평가기준 조율 및 평가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는 2021년 처음으로 구성·운영되어 4월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 성인지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평가의 각 단계에서 분과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분과별 쟁점사업에 대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분과를 정한 바, 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성평등지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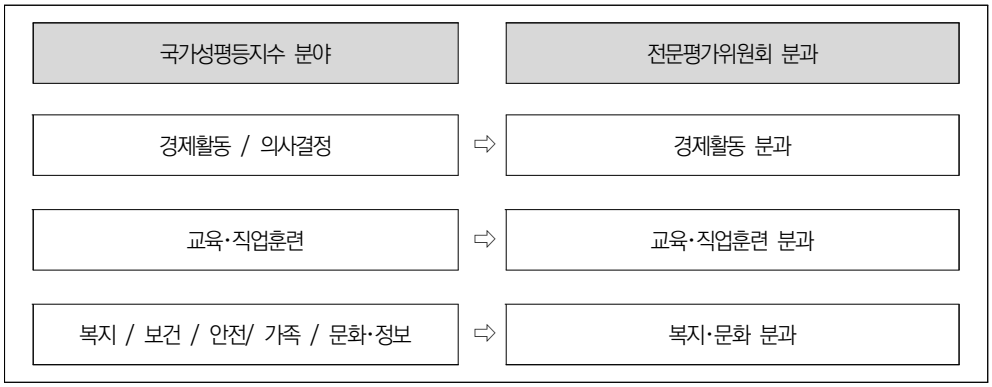

* 출처: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p.14).

[그림 Ⅱ-17]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다. 연계의 한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지점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성인지예산서 양식상 사업유형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를 선택하도록 연계하였으나, 이는 대상사업 선정 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고려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점수 및 취약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성 주류화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김효주 외, 2020: p.83).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연계현황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설정하는 기준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동일한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표 Ⅱ-18〉과 같이 동일한 사업이나 2020년과 2021년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성평등지수의 어느 분야와 연계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표 Ⅱ-18〉 2020년과 2021년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상이한 사업 목록

번호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20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21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3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문화·정보	교육·직업훈련
4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 지역 발명교육 인프라 지원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둘째, 하나의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세부사업 단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 내역사업으로 제출되는 사업이 있다. 이 경우 시스템상 내역사업별로 사업유형 및 성평등지수분야를 설정하게 되므로 동일한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동일하게 설정될 수도 있으나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 즉, 세부사업 내 국가성평등지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기준 세부사업 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상이하게 작성된 내역사업 목록이다. 10개 세부사업의 25개 내역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는 세부사업보다 상위 수준의 사업과 관련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바, 일관적으로 내역사업별 연계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설정함에 성인지예산 사업의 사업단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Ⅱ-19〉 세부사업 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른 내역사업의 목록

번호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유형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1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직접목적	보건
2			성인지 교육	직접목적	교육·직업훈련
3			성인지력향상 대외위탁 교육	직접목적	교육·직업훈련
4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직접목적	복지

번호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유형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5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 창작 및 초기창업 육성지원	간접목적	경제활동
6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간접목적	교육·직업훈련
7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간접목적	교육·직업훈련
8			무지개다리 사업	간접목적	문화·정보
9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간접목적	문화·정보
10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간접목적	교육·직업훈련
11			바이오인력양성	간접목적	경제활동
1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 취업지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간접목적	교육·직업훈련
1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간접목적	복지
14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직접목적	교육·직업훈련
15			여성 역량강화 지원	직접목적	교육·직업훈련
16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직접목적	안전
1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접목적	경제활동
18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접목적	안전
19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직접목적	문화·정보
20			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직접목적	의사결정
21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간접목적	복지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간접목적	복지
23			내일이룸학교	간접목적	교육·직업훈련
24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시민경찰학교	직접목적	교육·직업훈련
25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직접목적	안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셋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소관부처를 살펴보면 분야와 부처의 매칭되지 않는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2021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부처 및 사업 수를 보면 〈표 Ⅱ-20〉과 같다. 각 사업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선정한 바, 각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는 없으나, 분야와 직결되는 소관부처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거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성인지예산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서에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선택할 때, 소관부처 및 주요 사업을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제도 연계의 한계이다.

〈표 Ⅱ-20〉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작성 부처 및 사업 수

분야	소관
교육·직업훈련 (28개 부처)	문화체육관광부(13), 고용노동부(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여성가족부(8), 교육부(6), 환경부(6), 농림축산식품부(5), 국토교통부(5), 농촌진흥청(4), 법무부(3), 국방부(3), 해양수산부(3), 국가보훈처(3), 인사혁신처(3). 경찰청(3), 통일부(2), 행정안전부(2), 국회(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외교부(1), 산업통상자원부(1), 식품의약품안전처(1), 국가인권위원회(1), 방송통신위원회(1), 국민권익위원회(1), 조달청(1), 병무청(1), 특허청(1)
경제활동 (24개 부처)	고용노동부(31), 중소벤처기업부(19), 농림축산식품부(9), 보건복지부(9), 산업통상자원부(4), 해양수산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농촌진흥청(3), 특허청(3), 기획재정부(2), 여성가족부(2), 국토교통부(2), 교육부(1), 통일부(1), 국방부(1), 행정안전부(1), 문화체육관광부(1), 환경부(1), 국가보훈처(1), 국가인권위원회(1), 관세청(1), 문화재청(1), 산림청(1), 기상청(1)
복지 (16개 부처)	보건복지부(17), 국토교통부(7), 여성가족부(6), 국방부(3), 고용노동부(3), 통일부(2), 법무부(2), 농림축산식품부(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 교육부(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행정안전부(1), 문화체육관광부(1), 해양수산부(1), 국가보훈처(1), 국가인권위원회(1)
안전 (9개 부처)	법무부(9), 여성가족부(9), 경찰청(7), 행정안전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보건복지부(1), 고용노동부(1), 소방청(1), 농촌진흥청(1)
보건 (6개 부처)	보건복지부(8), 식품의약품안전처(3), 외교부(2), 고용노동부(2), 국방부(1), 여성가족부(1)
의사결정 (6개 부처)	경찰청(5), 여성가족부(3), 외교부(2), 국민권익위원회(2), 국토교통부(1), 해양수산부(1)
문화·정보 (6개부처)	여성가족부(6), 문화체육관광부(5), 국토교통부(2), 문화재청(2), 기획재정부(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가족 (3개 부처)	여성가족부(9), 보건복지부(2), 외교부(1)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또한 한계를 갖고 있다. 두 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가 성인지예산 관련 자문 및 교육훈련 등에서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두 제도의 연계에 앞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에서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상위 근거를 토대로 한 두 제도의 구체적인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에서의 국가성평등지수 연계와 관련하여 전문평가체계의 한계가 있다.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문화·정보)를 중심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실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4월) 및 성인지예·결산 사업 성과평가(9월)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될 수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사업수를 나누면 평가시 사업 배분이 원활하지 않고 분야별 논의가 지엽적으로 될 수 있고, 논의의 수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평가의 평가지표를 보면, 실무위원 평가 및 평가위원 평가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나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표 Ⅱ-2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표 및 지침: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

<table>
<tr><th>검토 영역</th><th>검토지표</th></tr>
<tr><td>1. 성평등 목표 필요성</td><td>[1]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에 기반했을 때 성평등 목표가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table>
<tr><th>체크리스트</th><th>예</th><th>아니오</th></tr>
<tr><td>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③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④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r><td>⑦ 사회적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가?</td><td></td><td></td></tr>
</table>
해당 사업의 근본 취지, 대상 및 범위, 사업성과에 따른 성불평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평등 목표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참조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참조
부처 사업설명자료, 기타 정책 및 연구자료 참조</td></tr>
<tr><td>2. 성인지적 분석 필요성</td><td>[2] 성차별적 요인 및 성불평등이 존재하여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인가?
<table>
<tr><th>체크리스트</th><th>예</th><th>아니오</th></tr>
<tr><td>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예시) 여성발명진흥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td><td></td><td></td></tr>
<tr><td>②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
(예시)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td><td></td><td></td></tr>
<tr><td>③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 중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예시) 자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td><td></td><td></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④ 단체 및 기관 수혜사업 중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예시)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마케팅지원 사업</td><td></td><td></td></tr>
<tr><td>⑤ 가구대상 수혜사업 중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예시)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td><td></td><td></td></tr>
<tr><td>⑥ 시설건축 및 관리 사업 중 사업진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 및 성별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사업인가?
(예시)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사업</td><td></td><td></td></tr>
<tr><td>⑦ 행사·홍보성 사업 중 사업진행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예시)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td><td></td><td></td></tr>
</table>
사업의 정책대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차별적 요인 및 성불평등 양상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대상자, 수혜자,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
</td></tr>
<tr><td>3. 성인지적 성과목표 (지표) 필요성</td><td>
[3]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table>
<tr><th>체크리스트</th><th>예</th><th>아니오</th></tr>
<tr><td>① 성인지적 투입지표(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예시) 교육 예산지원, 인력 및 물자의 지원</td><td></td><td></td></tr>
<tr><td>② 성인지적 과정지표(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예시) 시설 공정률, 컨텐츠 및 시스템 등 개발 진행률</td><td></td><td></td></tr>
<tr><td>③ 성인지적 산출지표(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예시) 교육 수료자 수(비율), 여성수혜자 수(비율), 검거건수, 시설 설치 개수, 홍보건수, 보급률</td><td></td><td></td></tr>
<tr><td>④ 성인지적 결과지표(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예시) 교육 수료 후 소득증가율, 취업률, 만족도, 범죄률</td><td></td><td></td></tr>
</table>
사업의 정책대상 및 내용에 기반하였을 때 성과목표(지표)의 측정가능성 및 결과(outcome)지향성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를 판단
예산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있어서 성평등목표 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기존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설정 참조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2020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참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부처 사업설명자료, 기타 정책 및 연구자료 참조
</td></tr>
</table>

구분	검토 의견
총 평	- 검토의견 ·지표별 검토 의견 제시 ·사업 성평등 목표, 성인지적 성과목표의 예시 제안 ·관련 근거 통계자료 제시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 - 기타사항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	
종합 의견	여	부

* 출처: 성인지 예·결산협의회(2021a: pp.7-8)

〈표 Ⅱ-2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의견” 양식: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위원용

부처명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사업번호		평가위원	

구분	평가 의견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	여	부
총 평		
비고		

* 출처: 성인지 예·결산협의회(2021b: p.9)

〈표 Ⅱ-23〉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평가지표

1. 계획 영역 - 사업 계획의 적절성

1-1.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① 사업 성평등목표가 해당 사업의 근본 취지, 대상 및 범위, 사업성과에 따른 성불평등 감소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참조하여 평가
-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해당연도) 참조하여 평가
② 2020~2022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적절한지를 판단

1-2. 성별수혜분석(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은 사업의 성평등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가?

① 사업 성평등 목표에 맞도록 대상자 및 수혜자는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대상자 및 수혜자를 집계하기 위해 적합한 통계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예산배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
② 2020~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의 성별수혜분석" 부분을 참고하여 평가

1-3.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사업 성평등 목표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① 성과목표(지표)가 사업 성평등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도록 설정되었는지를 판단
-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2020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설정과 비교하여 판단에 참고
-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해당연도)를 참조하여 판단에 참고
② 2020~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의 2020년 성과목표" 부분을 참고하여 평가

2. 성과 - 양적 및 질적 성과

2-1. 계획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달성되었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3개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
②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설정된 목표치를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

2-2.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② "자체평가"에서 성과목표 상향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노력 정도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성과목표가 미달성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④ 목표치와 관련하여 과년도 성인지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참조하여 판단에 참고

3. 환류 - 결산 평가의 환류 및 모니터링 효과성

3-1. 성인지 결산의 성과 및 개선사항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 혹은 활용되었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 및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②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 및 향후 개선사항 내용이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에 반영되거나 활용되었는지를 평가

3-2. 사업이 예산배분 및 집행과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보는가?

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평가
② 사업의 내용, 성평등 목표, 대상자 및 수혜자, 예산 금액 및 배분방식, 사업 수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한 모니터링이 성평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
③ 사업집행을 통해서 사회전반적인 성평등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혹은 젠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가져온 경우 등 인지를 평가

□ 총평의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사업 개선 권고 의견

①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 검토의견(관련 근거 통계 자료 등 제시)에 따른 사업의 개선권고 및 관리사항(사업 내용, 수행방식, 성과목표, 예산 조정 필요성, 모니터링 등)을 작성함
② 기타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등을 작성함
③ 권고의견 없을 시 '없음'으로 표기함

2. 대상사업 지속성 의견

① 평가항목 검토에 따른 대상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성인지 예·결산으로 관리되지 않아도 되거나 성인지적 개선 필요성이 없는 등 작성 실익이 적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작성함

□ 종합의견의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점수, 사업 개선 권고 의견, 대상사업 지속성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개선 권고가 필요한 지 여부, 대상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제시함
② 사업개선 권고 여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내용, 수행방식, 성과목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총평에 권고의견으로 기재했다면 "여"에 ○표시하고, 특별한 개선 권고의견이 없으면 "부"에 ○표시함
③ 대상사업 지속 여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 성평등 목표 및 성과 달성, 성평등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여"에 ○표시하고,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성인지 예·결산으로 관리되지 않아도 되거나 성인지적 개선 필요성이 없는 등 작성 실익이 적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없다면 "부"에 ○표시함

* 출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b: pp.10-13)

〈표 Ⅱ-24〉 성인지예·결산 사업평가 지표체계(안)

<table>
<tr><th colspan="2">평가 영역</th><th>평가 지표</th><th>점수</th></tr>
<tr><td rowspan="3">계획
(30)</td><td rowspan="3">사업 계획의
적절성
(30)</td><td>[1-1]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10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td><td></td></tr>
<tr><td>[1-2] 성별수혜분석(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은 사업의 성평등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가? (10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td><td></td></tr>
<tr><td>[1-3]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사업 성평등 목표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10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2">성과
(40)</td><td>양적 성과
(20)</td><td>[2-1] 계획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달성되었는가? (20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4</td><td>8</td><td>12</td><td>16</td><td>20</td></tr></table></td><td></td></tr>
<tr><td>질적 성과
(20)</td><td>[2-2]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20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4</td><td>8</td><td>12</td><td>16</td><td>20</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2">환류
(30)</td><td>결산 평가의
환류
(15)</td><td>[3-1] 성인지결산의 성과 및 개선사항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반영 혹은 활용되었는가? (15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3</td><td>6</td><td>9</td><td>12</td><td>15</td></tr></table></td><td></td></tr>
<tr><td>모니터링
효과성
(15)</td><td>[3-2] 사업이 예산배분 및 집행과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보는가? (15점)
<table><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tr><td>3</td><td>6</td><td>9</td><td>12</td><td>15</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평가 의견</th></tr>
<tr><td>평가 점수</td><td colspan="4">(　　/　100점)</td></tr>
<tr><td>총 평</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종합 의견</td><td colspan="2">대상사업 지속 여부</td><td colspan="2">성평등 조치 개선 권고 여부</td></tr>
<tr><td>여</td><td>부</td><td>여</td><td>부</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출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b)

Ⅲ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 분석

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결산 현황 67
2.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98
3.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106

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결산 현황[21)]

가.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현황

1) 대상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현황

2020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모든 대상사업은 성평등지수의 분야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작성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분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많이 몰려있으며, 분야별로 예산의 추이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여 성평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담당하는 사업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시 성평등 분야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년과 21년 모두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액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활동' 분야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20년에 108개 사업에 16.7조원의 예산이 집계되었으며, 21년에는 103개 사업에 18.6조원의 예산이 집계되었다. 사업수는 5개가 줄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약 1.9조원이 증가하였다.

사업수를 기준으로는 경제활동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분야의 순으로 사업수가 많았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년 94개 사업에서 21년에 99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복지 분야는 42개 사업에서 51개 사업으로, 안전 분야는 29개 사업에서 34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

예산액을 기준으로는 복지 분야가 경제활동 다음으로 예산액이 컸으며,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의 순이었다. 복지 분야는 20년 약 12.3조원(42개 사업)에서 21년 13.8조원(51개 사업)으로 약 1.5조원이 증가하였다. 안전 분야는 20년 약 2,834억에서 21년 약 2,906억원으로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다.

사업수와 예산액 규모가 작은 분야는 의사결정, 문화·정보 분야가 사업수와 예산액 분야에서 모두 가장 작았다. 의사결정 분야는 20년 14개 사업에 71억의 예산규모였으며, 21년에는 역시 14개 사업에 약 62억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년 14개 사업에 약 600억원의 예산에서 21년 17개 사업에 약 940억원으로 사업수와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두 번째로 예산규모가 적은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1) 대한민국정부(2019a, 2019b, 2020a, 2020b) 대상사업 국회확정 금액을 분석함

〈표 Ⅲ-1〉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2021년)

(단위: 개, 백만원)

성평등지수 분야	2020년		2021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가족	13	623,280	12	693,869
경제활동	108	16,702,026	103	18,570,482
교육·직업훈련	94	1,589,925	99	1,496,655
문화·정보	14	59,800	17	94,476
보건	12	157,582	17	348,001
복지	42	12,285,820	51	13,785,201
안전	29	283,413	34	290,598
의사결정	14	7,095	14	6,164
계	326	31,708,942	347	35,285,446

* 주: 202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상 '국가성평등지수' 항목 포함
** 성인지 예산액은 국회 확정안

아래의 표는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사업과 예산액을 대상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아래의 분석결과를 보면 사업의 수혜자가 개인대상인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야별로 대상사업 유형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같이 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목적사업의 비중이 높다. 반면에 가족 분야와 같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목적사업의 비중이 높다. 그 외에 문화·정보, 보건, 복지 분야는 간접목적과 직접목적 사업의 수가 비슷하다.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직접목적 사업의 수가 다소 높다. 이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Ⅲ-2〉 성평등지수 분야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2020~2021년)

(단위: 개, 백만원)

국가 성평등지수 분야	대상 사업 유형	2020년		2021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가족	간접	2	10,702	2	6,937
	직접	11	612,578	10	686,932
	계	13	623,280	12	693,869
경제활동	간접	88	14,818,570	85	16,639,519
	직접	20	1,883,456	18	1,930,963
	계	108	16,702,026	103	18,570,482
교육·직업훈련	간접	71	1,524,563	77	1,415,205
	직접	23	65,362	22	81,450
	계	94	1,589,925	99	1,496,655
문화·정보	간접	8	51,663	10	86,019
	직접	6	8,137	7	8,457
	계	14	59,800	17	94,476
보건	간접	6	92,320	9	266,673
	직접	6	65,262	8	81,328
	계	12	157,582	17	348,001
복지	간접	22	3,277,466	28	3,653,126
	직접	20	9,008,354	23	10,132,075
	계	42	12,285,820	51	13,785,201
안전	간접	12	85,070	13	78,223
	직접	17	198,343	21	212,375
	계	29	283,413	34	290,598
의사결정	간접	6	4,199	6	3,576
	직접	8	2,896	8	2,588
	계	14	7,095	14	6,164
총합계		326	31,708,941	347	35,285,446

2) 기능별 성인지예산 현황

아래의 표는 2020년과 2021년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의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성평등지수 분야와 기능별분류의 분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들어 2020년을 기준으로 기능별 분류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부분 성평등지수의 문화·정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성평등지수 분야에서는 복지 분야(31개)보다 경제활동 분야(44개)의 사업수가 더 많다. 2021년에도 이러한 분포는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사업의 성평등지수 분야를 선택할 때 공무원이 대상사업의 어떠한 측면을 기준으로 분야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기능별분류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분류되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관광 안내인력 교육' 등과 같이 많은 수의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이 성평등지수 분야에서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즉,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평등지수의 분야를 선택할 때 그 사업의 사업내용과 성과지표(목표)를 중심으로 분야를 선정하는지, 그 사업을 포함하는 거시적 분야를 기준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성평등지수 분야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과목표(지표)가 '여성수혜율' 등과 같이 여성인력을 위한 교육 관련 성과지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성평등지수 분야를 선택할 때 문화·정보 분야가 아니라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평등지수에서 경제활동 분야와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대부분의 사업이 집중된 것은 교육사업, 인력양성사업과 같이 사업 내용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Ⅲ-3〉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0년)

(단위: 개)

분야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일반·지방행정		5	9					2	16
공공질서및안전			5			1	19	5	30
통일·외교	2	3	6			2		2	15
국방		1	5		1				7
교육		2	6			1			9
문화및관광		4	14	8		1			27
환경		1	4						5
사회복지	11	44	17	5	3	31	7	3	121
보건		1			8		1		10
농림수산		13	11			1	1		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	1						31
교통및물류		1	6			2		1	10
통신		1	3	1		1			6
국토및지역개발		1	2			2		1	6
과학기술		1	5				1		7
총합계	13	108	94	14	12	42	29	14	326

〈표 Ⅲ-4〉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0년)

(단위: 백만원)

분야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일반·지방행정		203,505	37,445					60	241,010
공공질서및안전			47,536			1,029	191,760	304	240,629
통일·외교	1,338	8,762	181,657			39,402		2,863	234,022
국방		2,678	27,974		341				30,993
교육		35,078	108,192			112,908			256,178
문화및관광		18,532	164,875	51,086		51,827			286,320
환경		14,349	2,257						16,606
사회복지	621,942	8,095,093	606,181	7,117	20,254	11,797,193	62,388	2,592	21,212,760
보건		2,025			136,987		16,475		155,487
농림수산		140,843	125,584			180,232	2,088		448,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463,751	1,020						7,464,771
교통및물류		1,490	7,812			90,513		600	100,415
통신		33,284	9,585	1,597		2,000			46,466
국토및지역개발		682,477	2,064			10,716		676	695,933
과학기술		159	267,743				10,702		278,604
총합계	623,280	16,702,026	1,589,925	59,800	157,582	12,285,820	283,413	7,095	31,708,941

〈표 Ⅲ-5〉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1년)

(단위: 개)

분야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일반·지방행정		5	10	1		1		2	19
공공질서및안전			6			2	21	5	34
통일·외교	1	1	3		2	2		2	11
국방		1	4		1	3			9
교육		2	6			1			9
문화및관광		4	13	8		1			26
환경		1	6						7
사회복지	11	43	21	6	5	31	10	3	130
보건		1	1		9		1		12
농림수산		15	10			2	1		2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	2						28
교통및물류		2	5	1		4		1	13
통신			5			1			6
국토및지역개발		1	2	1		3		1	8
과학기술		1	5				1		7
총합계	12	103	99	17	17	51	34	14	347

〈표 Ⅲ-6〉 분야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1년)

(단위: 백만원)

분야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일반·지방행정		14,532	40,962	1,026		50		60	56,630
공공질서및안전			49,270			25,638	183,599	388	258,895
통일·외교	2,878	7,606	51,512		1,683	39,825		2,240	105,744
국방		2,678	27,107		328	54,716			84,829
교육		36,970	85,674			107,350			229,994
문화및관광		19,999	172,784	53,659		58,562			305,004
환경		14,697	7,030						21,727
사회복지	690,991	8,394,008	634,221	7,937	248,986	13,133,239	72,757	2,200	23,184,339
보건		2,703	1,030		97,004		21,167		121,904
농림수산		148,034	116,482			173,099	2,088		439,7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141,147	4,282						9,145,429
교통및물류		15,550	6,138	454		94,347		600	117,089
통신			47,890			1,994			49,884
국토및지역개발		772,399	2,064	31,400		96,381		676	902,920
과학기술		159	250,209				10,987		261,355
총합계	693,869	18,570,482	1,496,655	94,476	348,001	13,785,201	290,598	6,164	35,285,446

3) 부처별 성인지예산 현황

아래의 표는 2020년과 2021년 각 부처별 성인지예산 사업수와 예산액을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분류한 표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능별 분류의 결과와 유사한 부처가 보인다.

2021년의 부처별 사업수 분포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성평등지수 분야 중 경제활동과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문화·정보 분야가 아닌 교육·직업훈련에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기능별 분류와 유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분야로는 문화 분야에 해당되지만 사업의 내용이 인력양성 혹은 교육인 경우에 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성평등지수 분야를 선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9개), 교육·직업훈련(8개), 문화·정보(6개), 복지(6개), 안전(9개) 등 다양한 성평등지수 분야에 사업이 분포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처다보니 이러한 부처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Ⅲ-7〉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0년)

(단위: 개)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국회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기획재정부		1							1
교육부		1	5			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9	1		1	1		17
외교부	2	2	4					2	10
통일부		1	2			2			5
법무부			3			1	9		13
국방부		1	4		1				6
행정안전부		2	2			1	4		9
문화체육관광부		1	14	5		1			21
농림축산식품부		7	5			1			13
산업통상자원부		4	1						5
보건복지부	2	9			7	18	1		37
환경부		1	4						5
고용노동부		33	8		1	2			44
여성가족부	9	2	7	5	1	6	7	3	40
국토교통부		1	6			5		1	13
해양수산부		3	3					1	7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중소벤처기업부		22							22
국가보훈처		1	2			1			4
인사혁신처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국가인권위원회		1	1						2
방송통신위원회				1					1
국민권익위원회			1					2	3
조달청			1						1
병무청			1						1
경찰청			2				6	5	13
문화재청		1		2					3
농촌진흥청		3	5				1		9
산림청		1							1
특허청		4							4
기상청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
총합계	13	108	94	14	12	42	29	14	326

〈표 Ⅲ-8〉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0년)

(단위: 백만원)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국회			129						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8						168
기획재정부		320							320
교육부		21,000	91,467			112,908			225,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358	294,053	19,812		2,000	10,702		376,925
외교부	1,338	1,804	181,128					2,863	187,133
통일부		6,958	529			39,402			46,889
법무부			12,687			1,029	109,481		123,197
국방부		2,678	27,764		341				30,783
행정안전부		202,653	727			235,003	17,171		455,554
문화체육관광부		1,200	164,875	31,169		51,827			249,071
농림축산식품부		117,875	114,512			180,232			412,619
산업통상자원부		37,376	1,020						38,396
보건복지부	17,882	2,213,598			88,395	8,784,331	16,475		11,120,681
환경부		14,349	2,257						16,606
고용노동부		5,821,412	573,480		17,364	13,664			6,425,920
여성가족부	604,060	59,148	21,610	7,117	1,848	75,787	62,388	2,592	834,550
국토교통부		682,477	7,629			2,743,130		676	3,433,912
해양수산부		12,480	2,428					600	15,508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중소벤처기업부		7,409,765							7,409,765
국가보훈처		2,960	11,091			35,791			49,842
인사혁신처			36,046						36,046
식품의약품안전처					49,634				49,634
국가인권위원회		165	5						170
방송통신위원회				1,597					1,597
국민권익위원회			11					60	71
조달청			359						359
병무청			210						210
경찰청			34,849				65,108	304	100,261
문화재청		14,703		105					14,808
농촌진흥청		3,986	10,891				2,088		16,965
산림청		7,992							7,992
특허청		16,610							16,610
기상청		159							1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716			10,716
총합계	623,280	16,702,026	1,589,925	59,800	157,582	12,285,820	283,413	7,095	31,708,941

〈표 Ⅲ-9〉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 사업수(2021년)

(단위: 개)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국회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기획재정부		2		1					3
교육부		1	6			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9	1		1	1		15
외교부	1		1		2			2	6
통일부		1	2			2			5
법무부			3			2	9		14
국방부		1	3		1	3			8
행정안전부		1	2			1	4		8
문화체육관광부		1	13	5		1			20
농림축산식품부		9	5			2			16
산업통상자원부		4	1						5
보건복지부	2	9			7	17	1		36
환경부		1	6						7
고용노동부		31	10		2	3	1		47
여성가족부	9	2	8	6	1	6	9	3	44
국토교통부		2	5	2		7		1	17
해양수산부		4	3			1		1	9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중소벤처기업부		19							19
국가보훈처		1	3			1			5
인사혁신처			3						3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4
국가인권위원회		1	1			1			3
방송통신위원회			1						1
국민권익위원회			1					2	3
관세청		1							1
조달청			1						1
병무청			1						1
경찰청			3				7	5	15
소방청							1		1
문화재청		1		2					3
농촌진흥청		3	4				1		8
산림청		1							1
특허청		3	1						4
질병관리청					1				1
기상청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
총합계	12	103	99	17	17	51	34	14	347

〈표 Ⅲ-10〉 부처별-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예산액 규모(2021년)

(단위: 백만원)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국회			129						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8						168
기획재정부		2,755		1,026					3,781
교육부		21,000	85,674			107,350			214,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599	296,202	18,136		1,994	10,987		345,918
외교부	2,878		51,320		1,683			2,240	58,121
통일부		7,606	192			39,825			47,623
법무부			14,073			25,638	100,616		140,327
국방부		2,678	26,847		328	54,716			84,569
행정안전부		527	712			235,003	16,159		252,401
문화체육관광부		1,165	172,784	35,368		58,562			267,879
농림축산식품부		130,587	107,220			173,099			410,906
산업통상자원부		32,235	1,020						33,255
보건복지부	22,812	2,426,349			233,170	8,706,450	21,167		11,409,948
환경부		14,697	7,030						21,727
고용노동부		5,878,682	581,833		41,352	16,293	6,161		6,524,321
여성가족부	668,179	70,985	37,833	7,937	1,870	81,065	66,596	2,200	936,665
국토교통부		790,098	6,013	31,854		4,228,373		676	5,057,014
해양수산부		21,105	2,304			1,012		600	25,021

소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총합계
중소벤처기업부		9,095,046							9,095,046
국가보훈처		2,996	14,555			36,560			54,111
인사혁신처			39,563						39,563
식품의약품안전처			1,030		68,051				69,081
국가인권위원회		106	20			50			176
방송통신위원회			1,897						1,897
국민권익위원회			11					60	71
]관세청		11,144							11,144
조달청			359						359
병무청			260						260
경찰청			35,197				66,194	388	101,779
소방청							630		630
문화재청		16,205		155					16,360
농촌진흥청		3,789	9,147				2,088		15,024
산림청		8,103							8,103
특허청		13,866	3,262						17,128
질병관리청					1,547				1,547
기상청		159							1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211			19,211
총합계	693,869	18,570,482	1,496,655	94,476	348,001	13,785,201	290,598	6,164	35,285,446

나.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현황

1) 대상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2)]

본 절에서는 성인지결산서를 대상으로 성평등지수 분야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인지결산서의 핵심은 성과목표 달성여부이며, 따라서 성과목표 달성률을 대상사업별, 기능별, 부처별로 분석하였다. 성인지결산서에는 3개년도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3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분석하였다.

2018~2020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2018회계연도에 74%, 2019회계연도에 74.2%, 2020회계연도에 69.4%로 2020년도에 성과목표 달성률이 4.8%p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성과목표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71.8%), 복지(71.4%)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의사결정, 안전,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성과목표 달성률이 70%에 미치지 못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2020회계연도)

(단위: 개, %)

국가성평등 지수분야	2018			2019			2020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가족	16	9	56.3	16	12	75.0	13	9	69.2
경제활동	96	69	71.9	101	69	68.3	122	84	68.9
교육·직업훈련	89	63	70.8	87	66	75.9	105	71	67.6
문화·정보	9	9	100.0	10	8	80.0	13	8	61.5
보건	8	8	100.0	8	7	87.5	12	8	66.7
복지	30	24	80.0	34	24	70.6	42	30	71.4
안전	26	21	80.8	27	23	85.2	39	28	71.8
의사결정	3	2	66.7	4	4	100.0	14	12	85.7
총합계	277	205	74.0	287	213	74.2	360	250	69.4

22) 대한민국정부(2019c, 2020c, 2021c)를 분석함

아래의 표는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대상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을 확인한 표이다.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의 수가 10개 이상인 셀(cell)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분야가 해당된다. 4분야의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만 직접목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약 6%p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상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19회계연도에는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직접목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고, 복지 분야에서는 간접목적사업의 그것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대상사업 유형이 특별하게 성과목표 달성률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Ⅲ-12〉 성평등지수 분야별-대상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2020회계연도)

(단위: 개, %)

구분		2018			2019			2020		
국가 성평등 지수분야	대상 사업 유형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가족	간접	2	2	100.0	2	1	50.0	2	2	100.0
	직접	14	7	50.0	14	11	78.6	11	7	63.6
	소계	16	9	56.3	16	12	75.0	13	9	69.2
경제 활동	간접	75	55	73.3	78	50	64.1	93	64	68.8
	직접	21	14	66.7	23	19	82.6	29	20	69.0
	소계	96	69	71.9	101	69	68.3	122	84	68.9
교육·직업 훈련	간접	64	42	65.6	63	47	74.6	74	50	67.6
	직접	25	21	84.0	24	19	79.2	31	21	67.7
	소계	89	63	70.8	87	66	75.9	105	71	67.6
문화·정보	간접	4	4	100.0	5	4	80.0	8	5	62.5
	직접	5	5	100.0	5	4	80.0	5	3	60.0
	소계	9	9	100.0	10	8	80.0	13	8	61.5
보건	간접	4	4	100.0	4	3	75.0	6	4	66.7
	직접	4	4	100.0	4	4	100.0	6	4	66.7
	소계	8	8	100.0	8	7	87.5	12	8	66.7
복지	간접	15	12	80.0	17	13	76.5	22	15	68.2
	직접	15	12	80.0	17	11	64.7	20	15	75.0
	소계	30	24	80.0	34	24	70.6	42	30	71.4

구분		2018			2019			2020		
국가 성평등 지수분야	대상 사업 유형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성과 목표수	달성	달성률
안전	간접	5	4	80.0	5	3	60.0	15	11	73.3
	직접	21	17	81.0	22	20	90.9	24	17	70.8
	소계	26	21	80.8	27	23	85.2	39	28	71.8
의사결정	간접	1		0.0	1	1	100.0	6	6	100.0
	직접	2	2	100.0	3	3	100.0	8	6	75.0
	소계	3	2	66.7	4	4	100.0	14	12	85.7
총합계		277	205	74.0	287	213	74.2	360	250	69.4

2)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아래의 표는 2018~2020회계연도의 각 부처별로 성평등지수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분석한 표이다.[23] 202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과목표의 수가 많은 부처중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부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눈에 띈다. 이상의 세부처는 대상사업의 수가 많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핵심적인 부처인데,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제활동 분야의 성과목표수가 39개로 가장 많은데 경제활동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59%수준이며,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개 성과목표 중에서 단 1개의 성과목표만을 달성하여 12.5%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의 성과목표수가 18개로 가장 많은데, 이중 12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66.7%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10개의 성과목표 중에서 7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0%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성과목표가 있으며, 이중에서 안전 분야에 13개, 가족 9개, 교육직업훈련에 9개의 성과목표가 있다. 가족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7.8%,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55.6%, 안전 분야는 76.9%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2019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의 분석결과는 〈부록 1〉의 표를 참조

〈표 Ⅲ-13〉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20회계연도)

(단위: 개, %)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경찰청	달성			3				5	4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3				6	5
	달성률			100.0				83.3	80.0
고용노동부	달성		23	1			1		
	미달성		16	7		1	1		
	성과목표수		39	8		1	2		
	달성률		59.0	12.5		0.0	5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달성		5	8	1		1	1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6	10	1		1	1	
	달성률		83.3	80.0	100.0		100.0	100.0	
교육부	달성			4			1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1	6			1		
	달성률		0.0	66.7			100.0		
국가보훈처	달성		1	2			1		
	성과목표수		1	2			1		
	달성률		100.0	100.0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달성		1	1					
	성과목표수		1	1					
	달성률		100.0	100.0					
국민권익위원회	달성			2					2
	성과목표수			2					2
	달성률			100.0					100.0
국방부	달성			2		1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0.0	66.7		100.0			
국토교통부	달성		1	5			3		1
	미달성			3			2		
	성과목표수		1	8			5		1
	달성률		100.0	62.5			60.0		100.0
국회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기상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기획재정부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농림축산식품부	달성		4	5			1		
	미달성		3						
	성과목표수		7	5			1		
	달성률		57.1	100.0			100.0		
농촌진흥청	달성		3	2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3	5				1	
	달성률		100.0	40.0				0.0	
문화재청	달성				1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2				
	달성률		0.0		50.0				
문화체육관광부	달성			11	3		1		
	미달성		1	3	2				
	성과목표수		1	14	5		1		
	달성률		0.0	78.6	60.0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방송통신위원회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법무부	달성			2			1	6	
	미달성			2				4	
	성과목표수			4			1	10	
	달성률			50.0			100.0	60.0	
병무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보건복지부	달성	1	7			5	12	1	
	미달성	1	3			1	6		
	성과목표수	2	10			6	18	1	
	달성률	50.0	70.0			83.3	66.7	100.0	
산림청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산업통상자원부	달성		5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6	1					
	달성률		83.3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달성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2			
	달성률					50.0			
여성가족부	달성	7	1	5	2		5	10	2
	미달성	2	1	4	2	1	1	3	1
	성과목표수	9	2	9	4	1	6	13	3
	달성률	77.8	50.0	55.6	50.0	0.0	83.3	76.9	66.7
외교부	달성	1	2	6					2
	미달성	1	3						
	성과목표수	2	5	6					2
	달성률	50.0	40.0	100.0					100.0
인사혁신처	달성			2					
	성과목표수			2					
	달성률			100.0					
조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중소벤처기업부	달성		18						
	미달성		4						
	성과목표수		22						
	달성률		81.8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달성			2					
	성과목표수			2					
	달성률			100.0					
질병관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통일부	달성		1				1		
	미달성			2			1		
	성과목표수		1	2			2		
	달성률		100.0	0.0			50.0		
특허청	달성		3						
	미달성		1						
	성과목표수		4						
	달성률		75.0						
해양수산부	달성		3						1
	미달성			3					
	성과목표수		3	3					1
	달성률		100.0	0.0					100.0
행정안전부	달성		3	1			1	5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3	2			1	7	
	달성률		100.0	50.0			100.0	71.4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달성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2		
	달성률						50.0		
환경부	달성		1	4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100.0					

3)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아래의 표는 2018~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구분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을 분석한 결과이다[24]. 성과목표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중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분야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에서 성평등지수 분야가 안전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총 23개의 성과목표 중에서 16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69.6%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 중에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았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총 13개의 성과목표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69.2%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총 11개의 성과목표 중 7개를 달성하여 63.6%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았다. 사회복지 분야 중 경제활동 분야는 전체 성과목표의 수가 51개로 가장 많은 성과목표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1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60.8% 수준이었다. 복지 분야도 총 31개의 성과목표가 있어 성과목표 수가 많은 분야이며 이중에서 21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67.7% 수준에 그쳤다. 또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에도 19개 성과목표 중에서 8개를 달성하여 42.1%의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4)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의 분석결과는 〈부록 2〉참조

〈표 Ⅲ-14〉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20회계연도)

(단위: 개, %)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공공질서및안전	달성			5			1	16	4
	미달성			2				7	1
	성과목표수			7			1	23	5
	달성률			71.4			100.0	69.6	80.0
과학기술	달성		1	4				1	
	미달성			2					
	성과목표수		1	6				1	
	달성률		100.0	66.7				100.0	
교육	달성		1	5			1		
	미달성		2	2					
	성과목표수		3	7			1		
	달성률		33.3	71.4			100.0		
교통및물류	달성		1	4			2		1
	미달성			4					
	성과목표수		1	8			2		1
	달성률		100.0	50.0			100.0		100.0
국방	달성			3		1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4		1			
	달성률		0.0	75.0		100.0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토및지역개발	달성		1	1			1		1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2			2		1
	달성률		100.0	50.0			50.0		100.0
농림수산	달성		9	7			1		
	미달성		4	4				1	
	성과목표수		13	11			1	1	
	달성률		69.2	63.6			100.0	0.0	
문화및관광	달성		2	11	5		1		
	미달성		2	3	3				
	성과목표수		4	14	8		1		
	달성률		50.0	78.6	62.5		100.0		
보건	달성		1			6		1	
	미달성					2			
	성과목표수		1			8		1	
	달성률		100.0			75.0		100.0	
사회복지	달성	8	31	8	2	1	21	10	2
	미달성	3	20	11	2	2	10	3	1
	성과목표수	11	51	19	4	3	31	13	3
	달성률	72.7	60.8	42.1	50.0	33.3	67.7	76.9	66.7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달성		26	1					
	미달성		6						
	성과목표수		32	1					
	달성률		81.3	100.0					
일반·지방행정	달성		6	9					2
	미달성			2					
	성과목표수		6	11					2
	달성률		100.0	81.8					100.0
통신	달성		1	3	1		1		
	성과목표수		1	3	1		1		
	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통일·외교	달성	1	3	6			1		2
	미달성	1	3	2			1		
	성과목표수	2	6	8			2		2
	달성률	50.0	50.0	75.0			50.0		100.0
환경	달성		1	4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100.0					

2.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 관계 분석

가. 성인지예산과 성평등 수준[25)]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각 국가별로 도입유형이 다르고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는 소수의 연구가 시행된바 있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Chakraborty et al.(2019)은 성인지예산 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의 실행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정부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부 훈련을 실시하는지,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지,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고자 하는지, 성별 구분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한다고 지적하였다(조선주 외, 2020: p.55; Chakraborty et al., 2019: p.10에서 재인용).

Chakraborty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성인지예산과 GDI, GII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지예산이 GDI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GII감소에는 작지만 유의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인지예산이 의료와 교육 목적의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이 주는 시사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성인지예산을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지출을 결정할 때 아직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조선주 외, 2020: p.56; Chakraborty et al., 2019: pp.1, 24-25에서 재인용).

Stotsky & Zaman(2016)은 인도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평등과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도는 주별로 성인지예산을 도입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으며, 각 주의 데이터를 패널로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이 초등학교 취학의 평등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되게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성평등을 개선하는데 있어 성인지예산이 가진 긍적적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학교 취

---

25) 본 절의 내용은 조선주 외(2020: pp.55~57)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학에 있어서는 표본이 매우 작았으며 성인지예산 더미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재정지출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인프라 시설의 지출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선주 외, 2020: p.56; Stotsky & Zaman, 2016: pp.4, 19, 3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주 외(2015)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OECD국가와 비OECD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와 GGI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연구에서는 횡단면분석과 패널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횡단면분석의 경우 **OECD국가, 비OECD국가, 1인당 GDP $3,000이상인 국가 모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GGI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에서는 통합회귀모형과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OECD국가의 경우 모형에 상관없이 제도 도입이 성평등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OECD국가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국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없으므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부호는 OECD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주 외, 2015: pp.ⅳ, 23-35).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몇몇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숙 외(2012)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추구하는 성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추구하는 성평등은 경제적 자원 혹은 기회가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좀 더 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성평등을 위한 우리의 관심이 단지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여성의 몫으로 좀 더 돌리는 자원재배분에 한정된다면 큰 틀에서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 관련 이슈들은 각각의 부문에서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 정책이나 재배분의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한 생산요소로서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김영숙 외, 2012: p.9)

나.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26)]

성인지예산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성평등지수는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데,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

---

26) 본 절에서의 분석결과는 조선주 외(2020: pp.99~102)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은 성인지예산이라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평등 수준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한 그 국가의 성 주류화 정책, 각종 성평등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수준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아직까지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의 충분한 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실제로 집행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의 편성시기와 성평등지수에 반영되는 시점 간에는 2~3년간의 시차(time lag)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과 성평등지수의 시계열자료에서도 자료의 시작시점과 마지막 시점에 최소 2년의 시차(time lag)를 두어야 하고 이로 인해 시계열자료는 최소 4년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위해서는 더 긴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에 처음 시작되어 이제 약 10여년의 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시계열의 수도 매우 적지만, 여기에 시차(time lag)을 적용할 경우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길이가 확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제한적으로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모두 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도록 대상사업과 성평등지수 분야간에 매칭작업이 필요하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에 성평등지수별 분야를 기재하도록 추가되었으나 2019년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도록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9년까지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여성정책기본계획과 1·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분야를 이용하여 성평등지수 분야와 매칭하였다. 아래의 표는 성평등지수 분야와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를 어떻게 매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15〉 성평등지수-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여성정책기본계획의 매칭

	성평등지수	2차 양평계획 (2018~2022)	1차 양평계획 (2015~2017)	여정계획 (3차: 2008~2012, 4차: 2013~2017)
1	경제활동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고용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의사결정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3	교육직업훈련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고용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복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건강과 복지증진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보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건강과 복지증진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6	안전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7	가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 확산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8	문화정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9	성 주류화[27]	양성평등계획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자료: 조선주 외(2020: pp.90~91; 여성가족부, 2012: pp.20-22; 여성가족부, 2015: pp.20-22; 여성가족부, 2018: pp.12-13; 주재선 외, 2019에서 재구성)를 인용함

그런데 양성평등기본계획의 경우 2018년부터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계획과 분야의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8개의 분야로 구분되지만, 2차의 경우 6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1차 양평계획에서는 건강과 복지증진이 하나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성평등지수의 보건과 복지를 합한 영역과 매칭된다. 반면 2차 양평계획에서는 여성의 건강이 안전(폭력예방)과 같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평등지수에서는 보건 및 안전을 합한 영역과 매칭되며, 2차 양평계획의 일생활균형 영역은 성평등지수의 복지와 가족을 합한 영역

27) 성 주류화 분야는 원래 성평등지수 분야에는 없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여성(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 분야와 매칭시키기 위해 연구진이 별도의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즉 기존의 8개 성평등지수 분야에 매칭되지 않는 사업들을 성 주류화 분야로 별도 분류한 것이다.

과 매칭된다. 따라서 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전까지인 2017년까지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성평등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8년부터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성평등지수 분야와의 매칭이 어렵고, 2019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유형이 크게 변경되면서 사업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과 같이 두 개의 분야가 결합된 분야는 각 분야 성평등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즉,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분야의 성평등지수 점수는 경제활동 분야와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된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수가 아닌 예산액 규모를 활용하였다. 사업수가 아닌 예산액을 적용한 이유는 예산액이 해당 분야의 국가재정배분을 더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수가 적더라도 예산이 크다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래에서는 성평등지수 분야와 성인지예산 규모의 산점도(scatter plot)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 '보건 및 복지',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의 규모와 국가성평등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의사결정', '안전', '가족' 분야의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의 규모와 국가성평등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방향성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은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므로, 성인지예산액의 증가가 성평등지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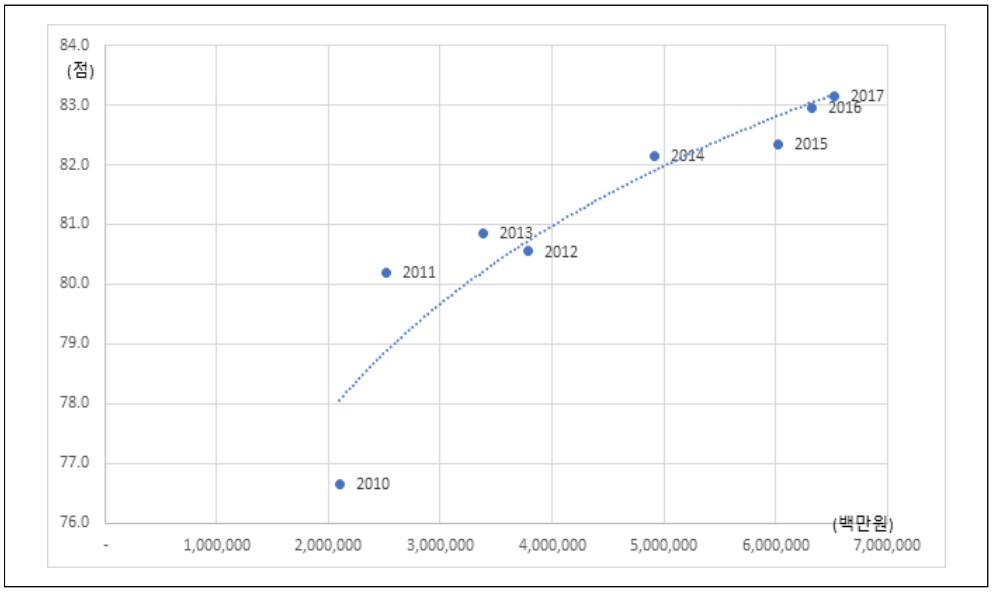

* 주: correlation coefficient=0.8906: p-value=0.003으로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출처: 조선주 외(2020: p.99;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1] '경제활동 및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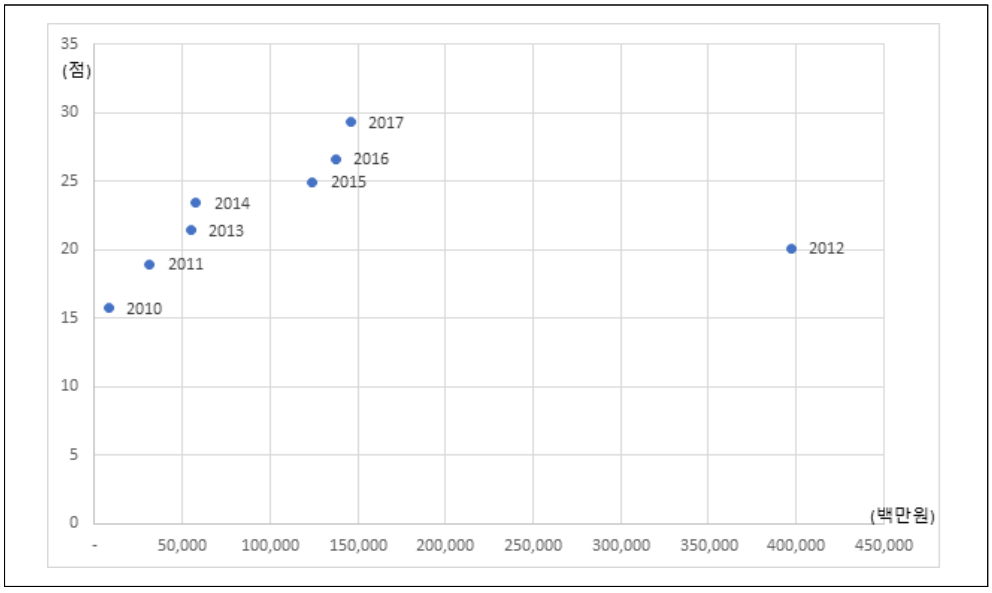

* 출처: 조선주 외(2020: p.100;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2]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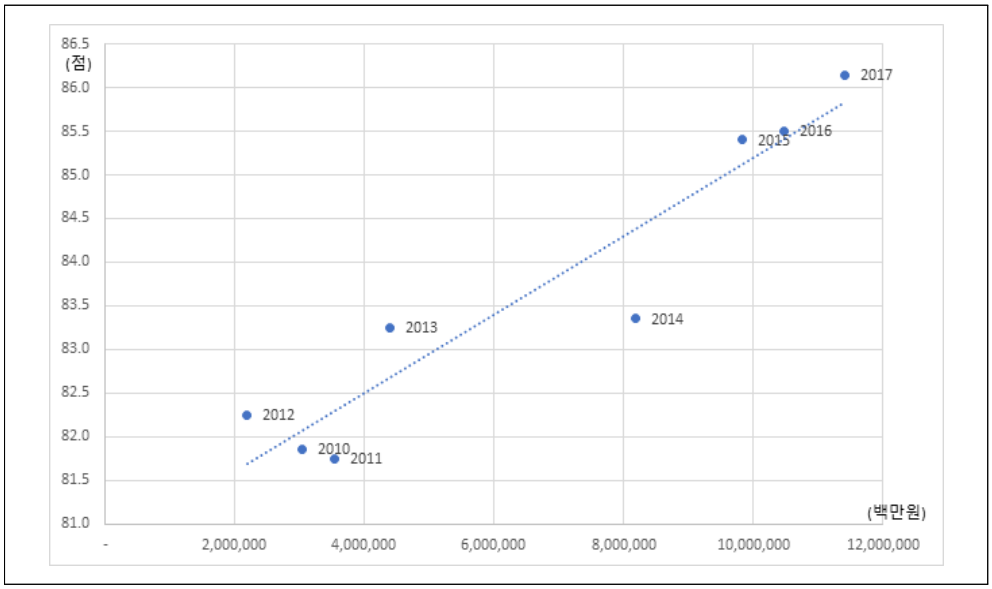

* 주: correlation coefficient=0.9473: p-value=0.0004으로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출처: 조선주 외(2020: p.100;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3] '복지 및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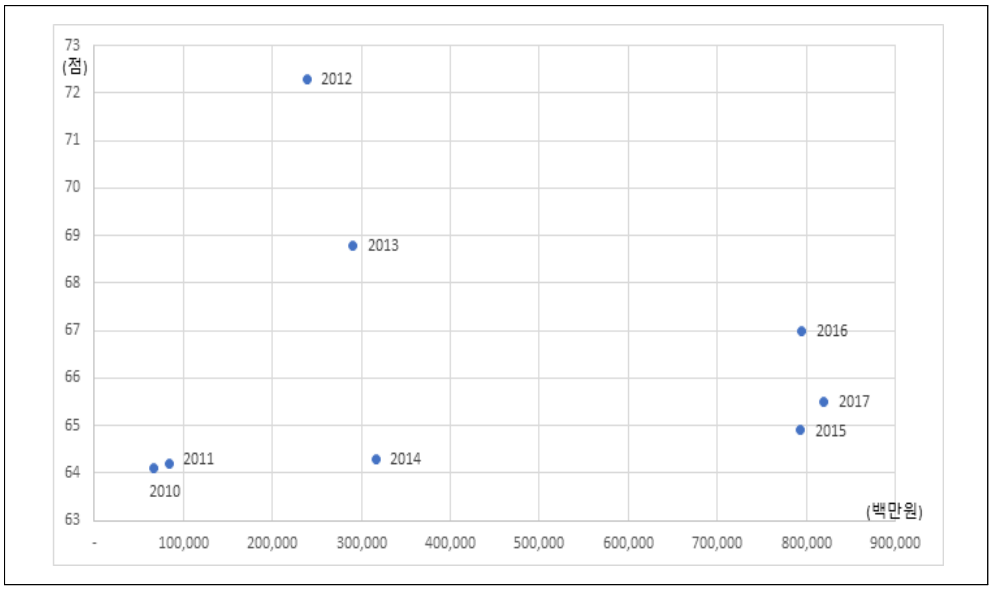

* 출처: 조선주 외(2020: p.101;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4]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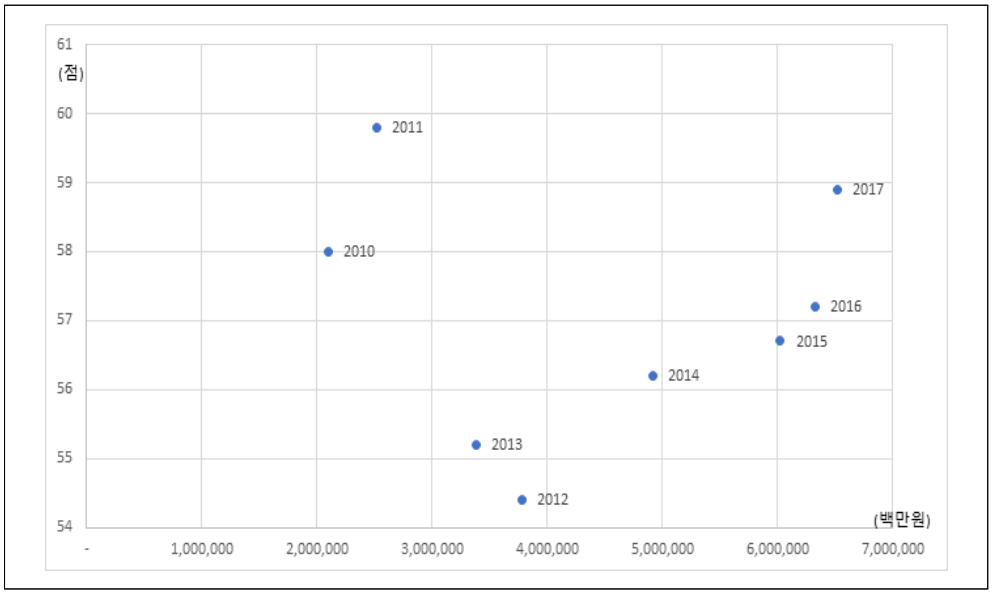

* 출처: 조선주 외(2020: p.101;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5]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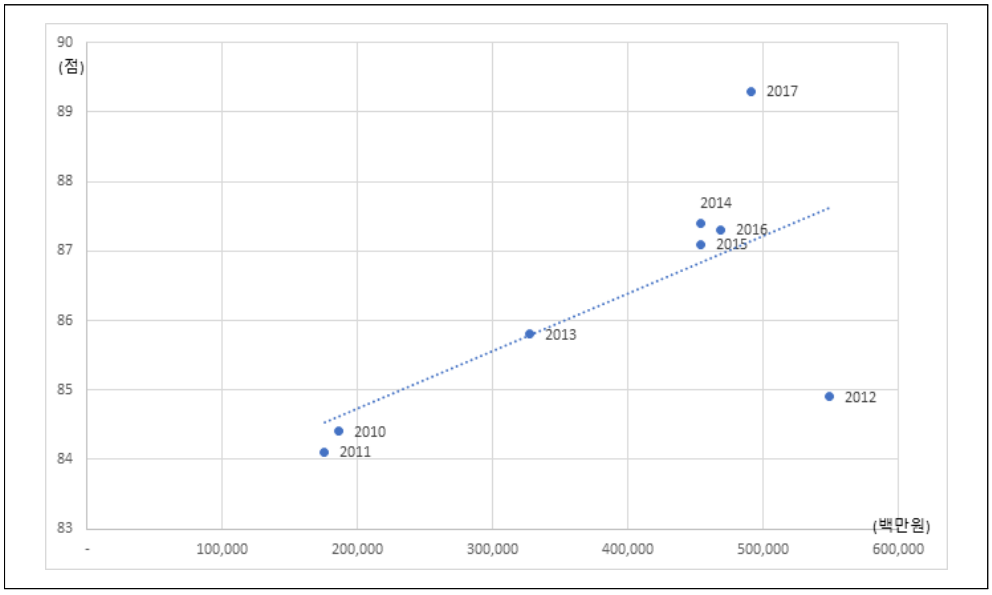

* 주: correlation coefficient=0.7047: p-value=0.0509으로 유의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출처: 조선주 외(2020: p.102; 대한민국정부(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 2016a, 2016b)에서 재인용)

[그림 Ⅲ-6]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액

3.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의 한계

본 장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이 성인지 예산제도만으로 향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성인지 예산액과의 관계가 일부 분야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성인지예산 외의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평등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활용자료의 문제이다. 성인지예산은 일반 예산안 편성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즉, (n-1)년도에 n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n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후, (n+1)년도에 결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분석된 내용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2년 이후의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의 시작시점과 마지막 시점에서 각각 2년 이상의 시차(time-lag)을 주려면 매우 긴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중간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변경되고, 대상사업의 구분유형이 변화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시계열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길이는 더욱 짧아진다. 따라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다만, 앞으로 오랜 시간 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세부사업을 사업단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만약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내역사업까지 대상사업의 사업단위가 내려간다.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은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사업단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업단위이다. 따라서 예산액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수도 매우 적다. 이런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과 사업운영의 변화는 거시적 수준의 국가성평등지수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최소한 중앙정부의 성과계획서와 같이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를 세우고 관리한다면 그 효과를 결과지표(outcome)를 통해 확인하기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의 단위를 높일수록 사업책임의 문제와 작성자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여러 행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또한 쉽지가 않다.

셋째, 성평등 수준과 경제성장은 서로 순환의 관계를 갖는다. 성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성평등 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와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여성의 소득수준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늘어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본축적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국가의 성평등을 위한 예산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 성인지예산과 성평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현재 상황에 정확히 맞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과 성평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여성의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경제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의 개발도상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인구증가는 부양인구의 증가로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자원량이 감소하게 되어 생산성이 낮아진다. 이는 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인구증가는 인적자원이라는 생산요소의 증가 및 소비층의 성장으로서 인구증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여건이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 출산율의 감소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출산이 경제활동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조선주 외, 2020: p.57~58).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볼 때, 성평등 수준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며, 여성의 소득수준을 높여 가구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대상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평등 수준, 그리고 경제성장은 서로 순환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고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경제성장 잠재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조선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말할 때, 제도 운영의 비용과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사실상 실제로 대규모 예산 혹은 재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단계에서 공무원의 시간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편익측면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관점은 사실상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거시적 관점에서의 효과성은 더욱 객관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조선주 외, 2015: p.12)."

따라서 본 장에서의 분석 역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지수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도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성평등 수준도 같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Ⅳ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111
2.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134

1.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 방향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 및 제도 연계의 한계점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Ⅱ장, Ⅲ장에서 보았듯이 성 주류화는 개별 제도의 운용만으로 국가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각 성평등 제도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일관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용될 때 국가성평등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성 주류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의 연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 주류화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부문이 아닌 주류에 접근하는 총체적인 과정(이은경, 2014)이므로 일부의 부문, 일부의 제도 연계만으로는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성평등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단기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성평등지수의 목표 수준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성인지 통계 등 각 제도가 초점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주축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주류화 도구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성평등 기본계획으로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가장 포괄적인 국가의 성평등 목표가 되고, 대과제를 비롯한 각 과제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이 선정되며,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고, 성인지 통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는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여('17.12.20.)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으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6대 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221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근본적 성불평등 해소 위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집중하면서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구조적 개선" 추진 및 "범부처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Ⅳ-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체계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대과제 (6개)	중과제 (22개)
정책 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2: p.3)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성평등 목표, 부처별 성평등 목표는 존재하나, 전면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사업별 성평등 관련 목표의 취합으로 이루어져 국가 및 부처에서 강조되거나 실천되지 않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실시할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시기별로 마련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p.23). 이러한 사업들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와 연동될 지점을 제시하여 성과지표를 정할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28]에서도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토대가 빈약한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전 부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담는 성평등 정책 중장기 로드맵으로서의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도 현황을 배제한 무리한 연계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나 정책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제도나 정책의 운영 방식과 내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제도를 통일된 방식으로 연결하는 일관된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가 1).”

>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지점과, 국가성평등지수 체계 구축의 목표지점,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지점이 모두 국가 성평등 수준 향상에 있고, 둘째, “성평등한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활동계획과 성과를 나타내는 정책 도구”라는 공통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셋째, 각 제도의 기능을 상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문가 2).”

>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종합결과 성격의 성평등지수와 투입예산 위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

28) 전문가 의견 조사는 2021년 10월~11월에 걸쳐 서면자문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연구, 제도 운영,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 지수의 연계방향으로서 제시한 1)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2)시계열 자료 구축 및 활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한 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체계 변경, ②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③ 성인지예산 사업의 사업단위 조정, ④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의 활용, ⑤ 기타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리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참고용으로 연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전문가 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젠더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전문가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과 국가성평등지수 설정 시점에 고려하는 이슈가 달라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는 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범위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평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 시점의 정책 수요나 사회적 이슈, 중요도 등이 고려되는데 비해, 국가성평등지수는 보다 중장기적, 거시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양평계획에 담을 필요가 없거나, 담을 수 없는 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중에는 양평계획 수립 주기인 5년 정도의 정책 투입으로는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도 있고, 국가성평등지수 중에는 성격차 보다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 파악을 위해 설정된 지표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아 양평계획에 담을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전문가 1).”

“엄밀한 의미에서 성주류화 전략(GMS)을 이행하는 정책도구로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기에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의 기본 토대가 빈약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정책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했고(3개년도), 현재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2년까지)을 수행 중으로, 여성발전기본계획보다 범주를 확장했다고는 하나,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정책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성평등 정책’ 개념조차 법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등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만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명실공히 국가 성평등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소관정책만이 아니라 국가 전 부처의 사업(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는 성평등 정책 중장기 로그맵으로서의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전문가 2).”

“그러나 기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인지예산으로 작성되는 사업들을 포괄하기에 적용되는 범위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부처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포괄하기 어렵고, 각각의 성과목표가 성평등목표에 부합하게 설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보다 촘촘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전문가 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연계되며, 각 제도의 시행 시점을 고려한 촘촘한 제도 셋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성평등지수, 성인지예산서가 준비되고 공표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1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및 시점을 살펴보면, '20년 10월에 여성가족부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21년 시행계획(안)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1년 2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1년 3월초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1년 11월에는 당해연도 시행계획 성과지표 실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21년 3~12월에 걸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분석·평가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1월에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를 공표하며,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는 3월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지침을 논의하여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부처에 송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의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후보군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를 거쳐 협의회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심의·확정하며 기획재정부는 9월에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29].

이러한 각 제도의 시점을 고려하여 상위 수준의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를 연계하고, 이렇게 연계된 자료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이 결정되기 전에 검토되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후보군 시점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

29)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보아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 시점을 고려하는 논의에서는 성인지결산서 작성 일정은 제외한다.

〈표 Ⅳ-2〉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성평등지수, 성인지예산서 시행 시기

시기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성평등지수	성인지예산서
’21. 10월	’22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여성가족부)		
’21.11~12월	해당과제별 시행계획(안) 수립·제출(중앙부처, 지자체)		
’21.12~’22년 1월	’22년 시행계획(안) 마련, 부처협의(여성가족부)		
’22.1월		국가성평등지수 공표(여성가족부)	
’22.2월	’22년 시행계획 심의·의결(양성평등위원회)		
’22.3월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가이드라인 의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양식 송부(기획재정부)
’22.4~5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후보군 마련·제출(부처)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사전 심의(전문평가위)
			대상사업 심의·확정(협의회)
			대상사업 심의 결과 통보(기획재정부)
’22.6~8월			예산요구안 제출(부처)
			성인지예산서 검토(기획재정부)
’22.9월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1.2: p.2);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5: pp.14-15)

이러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 사례도 좋은 예시로 활용할 수 있다. 김효주 외(2019)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처음으로 표기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하면서 현 제도의 운영 틀 안에서 단기간에 적용가능한 연계방안으로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 사례를 제시하였다(김효주 외, 2019: p.83).

오스트리아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한 최초의 국가로서, 부처의 일반예산서 작성 시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5개의 성과목표 중 최소 1개의 성과목표는 성평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김효주 외, 2019: p.86). '공공업무와 체육부(Bundes- ministerium für öffentlichen Dienst und Sport)'는 이러한 성평등 목표의 중점 내용을 토대로 테마군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양성평등지도를 작성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 부처의 성평등 사업의 링크 체계를 구축한다면 성평등 사업의 유기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며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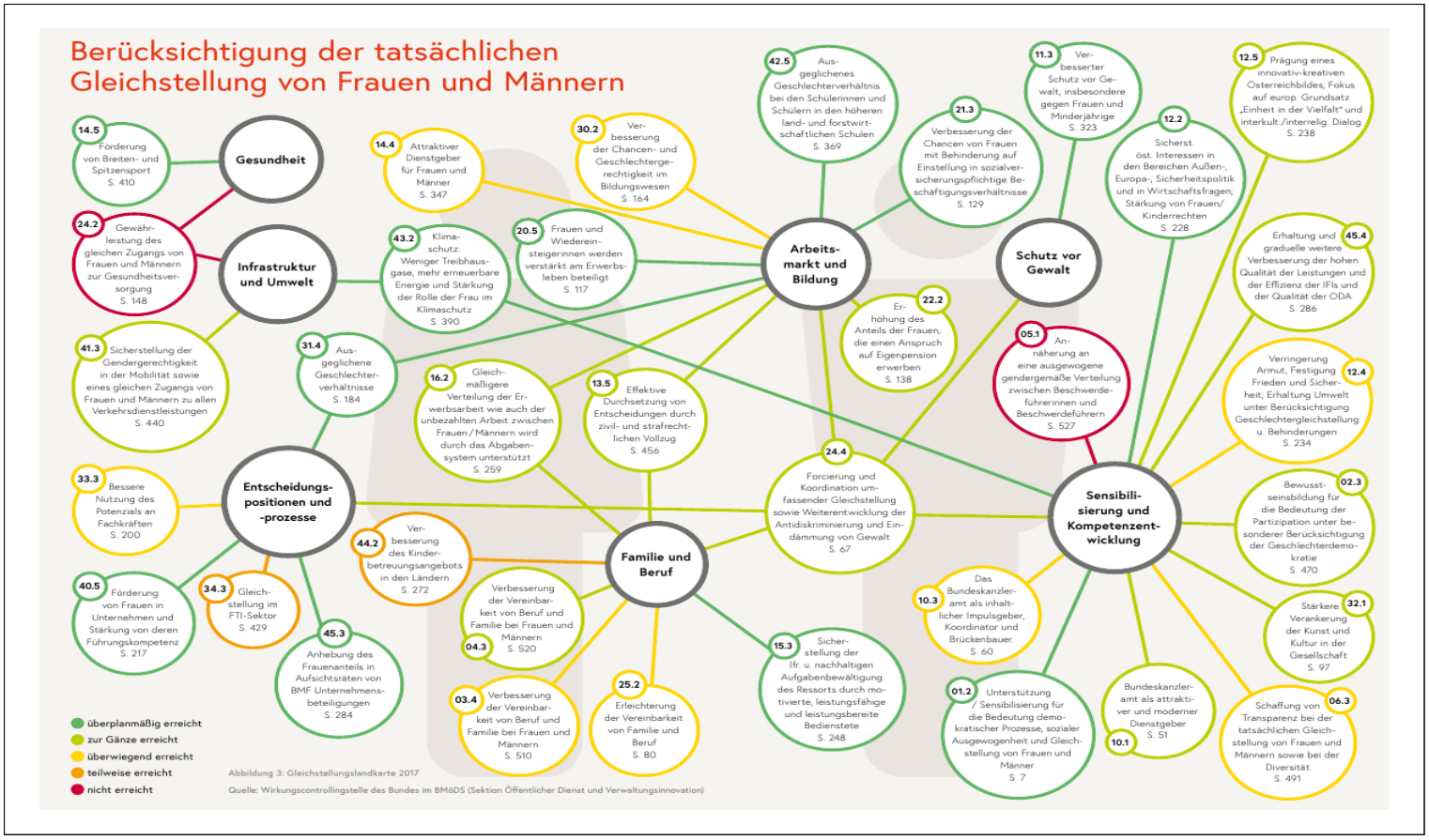

* 출처: 김효주 외(2019: p.90; Bundesministerium für öffentlichen Dienst und Sport, 2018: p.16에서 재인용)

[그림 Ⅳ-1]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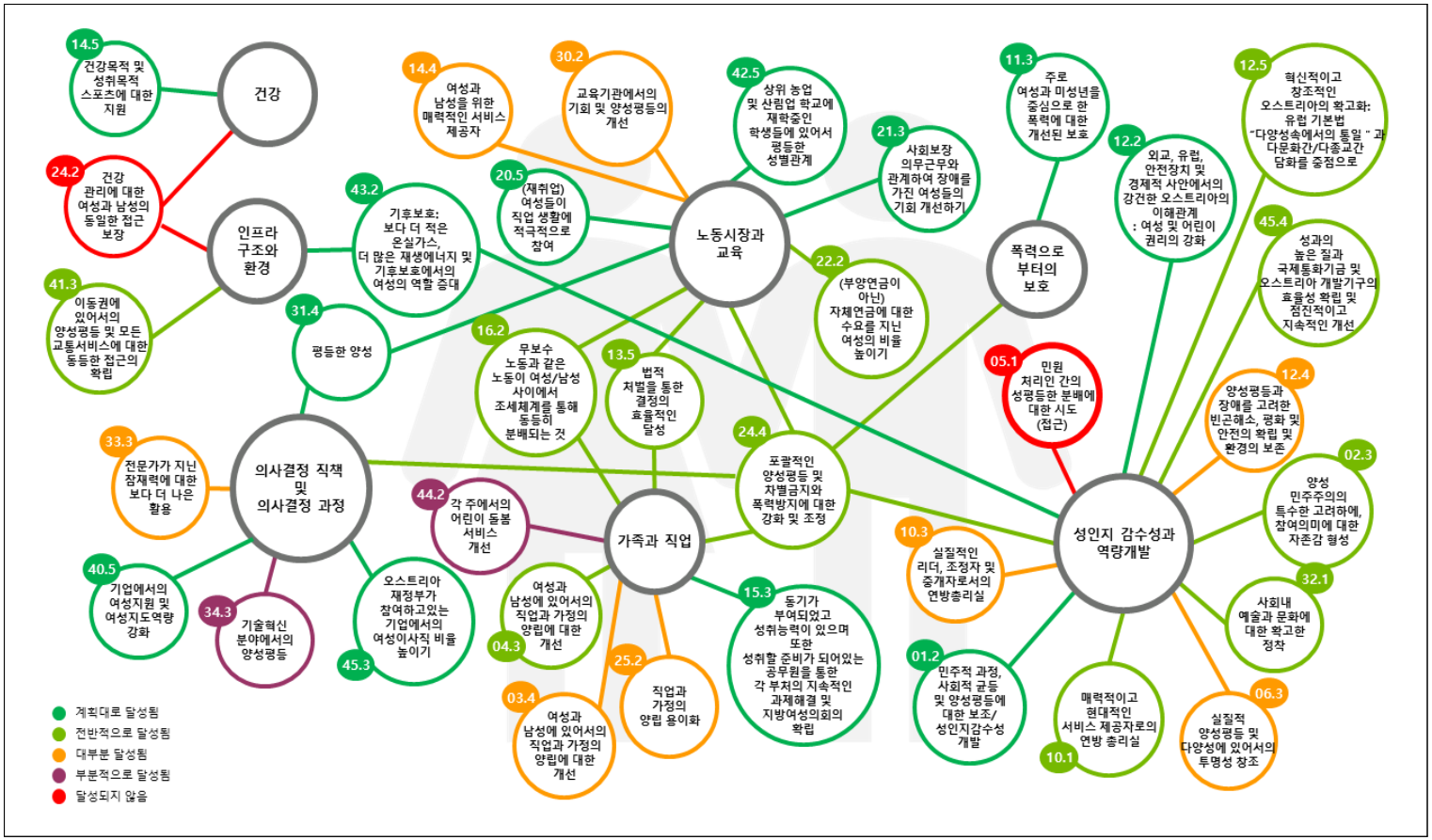

* 출처: 김효주 외(2019: p.91; Bundesministerium für öffentlichen Dienst und Sport(2018: p.16) 번역 자료(섹션 공공서비스와 행정혁신)에서 재인용)

[그림 Ⅳ-2] 오스트리아 사례 - 양성평등지도 ②

나. 시계열 자료 구축 및 활용

국가성평등지수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공표 시점과 성인지예·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점 등을 고려한 시계열 자료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시계열 자료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시차(time-lag)를 주려면 매우 긴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개념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이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나, 두 제도 간 관계를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고려한 자료가 필요하다. 선후관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앞서고 국가성평등지수 점검이 뒤따르는 구조이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시차가 2년이다. 정책효과가 정책 시행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성주류화 정책의 단기적 성과 측정은 어렵다는 점(마경희 외, 2019: p.12)에서 국가성평등지수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처음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설정한 2020년도 사업의 정책효과를 확인하려면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인 2021년 이후 생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3〉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연도 및 국가성평등지수 기준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
성인지결산서	2018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
국가성평등지수	2018년 기준 지수	2019년 기준 지수	2020년 기준 지수	2021년 기준 지수	**2022년 기준 지수**	…

* 출처: 연구자 작성

다음으로 국가성평등지수 생산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18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19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국가성평등지표의 생산주기를 보면 1년 주기가 대부분이나, 2년 주기, 3년 주기, 5년 주기 등 다양한 주기가 존재하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 혹은

외삽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다(주재선 외, 2019: p.21; 김경희 외, 2020: p.19). 단, 4년 주기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국회의원 비율'은 선거 이후 보궐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통계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는 해까지 동일한 지표 값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 생산주기는 〈표 Ⅳ-4〉와 같으며, 이는 시계열 자료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의 간격이 넓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국가성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21년도에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되고, 2023년에 2020년 기준 지수를 확인하되, 국가성평등지수의 주기가 장기인 경우를 고려하며 5년 이상의 시차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Ⅳ-4〉 2018년, 2019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지 표	추정 방법	주기
2018년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 평균 교육년수 성비, 여가시간의 성비	2009년과 2014년의 평균변화를 적용(외삽법)	5년
	여가 만족도 성비	2017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내삽법)	2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2012년과 2017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2012년과 2017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건강검진수검률	2012년과 2017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2019년	평균 교육 연수	2010년과 2015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5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2013년과 2018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스트레스 인지율	2013년과 2018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2013년과 2018년의 평균변화 적용(외삽법)	1년

* 출처: 주재선 외(2019: p.21), 김경희 외(2020: p.19)

〈표 Ⅳ-5〉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1 경제 활동 분야 (21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업자 제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정규직근로자의 비율	임금근로자 중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한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반기별 (3월, 8월)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수준	동일직종 및 경력년수별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비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30대 고용률	만 30대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5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성별 청년층 고용률	15~29세 경제활동인구수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현재 취업자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년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시간제 선택이 자발적이고 임금, 승인, 4대 보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근로자 규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맞벌이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통계청 * 미생산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유형별(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의무이행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1년
2 의사결정 분야 (13개)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1년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에서의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IPU	비주기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공식통계 없음	비주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년
3 교육 직업 훈련 분야 (14개)	평균 교육년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재적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여성비율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여성비율 혹은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 여성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1년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 유학생)}] *100으로 계산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부, 내부자료	1년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부, 내부자료	-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2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실태조사」	1년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4 복지 분야 (7개)	비빈곤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비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비빈곤인구: 경상소득 중간값 50% 이하 인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1년)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 통계연보』	1년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5 보건 분야 (12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 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하는 비율 *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향조사」	1년
	주관적 건강상태	15세 이상 인구의 자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상태 평가로 건강한 상태 비율(매우좋다+좋은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건강수명 성비	건강수명은 출생 시 기대수명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햇수를 뺀 기대수명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모성사망비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 10만 명당 수치로 계산 한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율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향조사」	1년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향조사」	1년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향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6 안전 분야 (9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반적 사회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비율 ※ 가족폭력이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또는 미검률	전체 성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발생된 성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가정폭력 재범율	전체 가정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가정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7 가족 분야 (9개)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만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점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핀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가구유형별 남녀인구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설립주체별로 제공되는 보육시설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출산휴가 사용 건수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산업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를 피보험자가 사용한 건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8 문화 정보 분야 (9개)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져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13세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 정보화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년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 출처: 주재선 외(2019: pp.160-168) 〈부록 2〉에서 인용
** 주: 음영이 없는 부분은 대표지표, 음영이 있는 부분은 관리지표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성평등지수는 오롯이 성인지예산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든 성인지 예산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예산 사업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영역을 정하고, 해당 지표 영역에 가중치를 두어 이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 5년 이상 장기간의 성과를 지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이에 더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국가성평등지수의 주기가 장기인 경우를 고려하며 5년 이상의 시차를 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전문가 4)."

> "성평등지수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과 여건 등 예산사업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아 단년도 예산사업의 성과를 지수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과를 측정한다면 단년도 사업성과 보다는 최소 양평계획 수립 주기인 5년 이상 지속된 성인지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예산 사업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영역을 정하고, 해당 지표 영역에 가중치를 두고, 이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다 많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 5년 이상 장기간의 성과를 지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전문가 1)."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가 단기간내 변화하기 어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년 주기의 시차로 이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제도와 문화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수 많이 변화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문가 5)."

"우리나라에서 모든 예산사업의 예산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제도에서는 성인지예산서에서 제시된 각 예산설명자료의 결과를 단년도 기준으로 성인지결산서에 효과평가(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통계 조사시점과 통계 생산시점, 통계생산주기, 예산서 작성과 결산 시점, 결산서 제출자료를 원자료로 한 메타평가 수행 시간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시차는 4년이라는 판단에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또 하나, 정부 생산 문서보존기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려해도 성인지예결산서에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만하고 충분히 질 높은 젠더정보를 갖추고 있을 때 실질적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의견을 정리하자면, 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이나 방향만 별도로 논의하기보다 평가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방안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전문가 2)."(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 강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제도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추진체계의 운영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각 부처의 추진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를 포함한 정책추진체계 강화를 정한 이래, 부처 내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박선영 외, 2019: p.21~23). 2019년 5월 7일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박선영 외, 2019: p.2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직무 범위는 부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 주류화 제도의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의 발굴·지원의 역할이 포함되었다.

〈표 Ⅳ-6〉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직무 범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5.7.)	제3조(기획조정실장) 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교육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의 발굴·지원 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교육 정책 추진 총괄 4.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 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6.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8.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 5. 7.)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⑧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5.7.)	제10조(인사복지실) ⑲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국방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국방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국방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 5.7.)	제7조(기획조정실)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5.7.)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5.7.)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⑧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19.5.7.)	제3조의5(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 검찰청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협력에 관한 사항
경찰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5.7.)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조정

* 출처: 박선영 외(2019: pp.24-27) 〈표 Ⅱ-7〉 참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배포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지정시 기획재정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사업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별 작성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별 성과목표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 성인지예산 업무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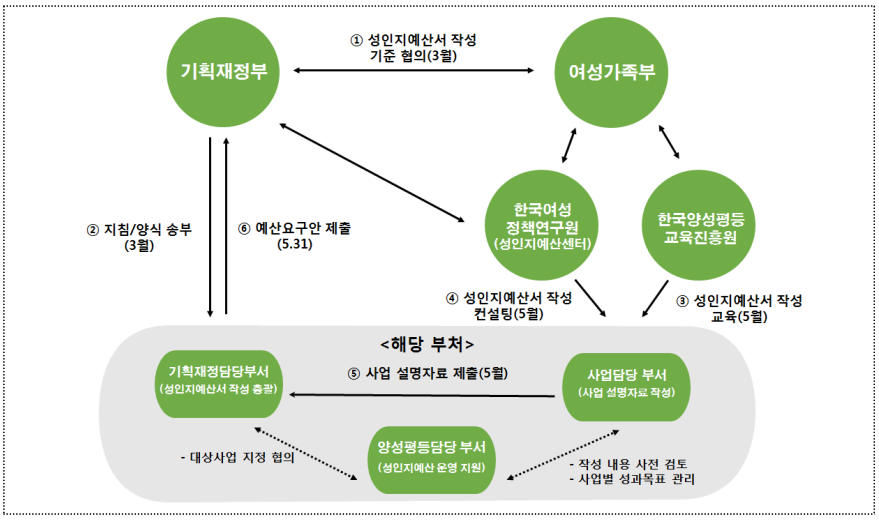

□ 업무분담(안)

① 기획재정담당관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지정 - 성인지예산서 요구 확인 및 반려 - 부처 성평등 목표 등록 - 성인지예산서 취합, 제출	· 성인지예산 운영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지정 협의 (신규사업 발굴 등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및 조정) - 사업별 작성내용 사전 검토(성과목표 적절성 등)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관리

* 출처: 여성가족부(2019)

[그림 Ⅳ-3]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이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매뉴얼」에 추진체계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에는 앞서 본 [그림 Ⅳ-3]과 같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함께 부처별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총괄 취합·관리, 사업별 성과목표 관리 총괄을 협의하고, 사업담당자와 함께 대상사업 적절성 사전 검토, 사업별 작성내용 사전 검토,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을 논의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초기에 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컨설팅 및 점검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로 7개 부처이며,[30] 부처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다. 각 부처는 부처 내 자율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기획재정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업담당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업무의 비중이 높고,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는 국가의 성평등 목표를 토대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고려되고,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 사업이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부처 내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가지고 부처 내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처 내 성주류화를 강화할 수 있다. 부처의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점검을 넘어서 부처 관련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사례를 협의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2.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두 제도의 연계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하며 현행 성인지예산제도 틀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30)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는 구조이므로, 별도 성인지 사업 선정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는 첫 단계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매칭하는 작업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하향식 연계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현행 제도는 상향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하향식 연계와 상향식 연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향식 연계는 상위 계획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지정을 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향식 연계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선정은 기존의 연계보다 구조적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게 하며, 해당사업의 성평등 제고의 경로 및 대상사업 적절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하향식 연계를 위해서는 상위 계획을 비롯하여 부처별 성평등 목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사업 분류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하향식 연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 및 목표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성 주류화 제도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노력과 헌신적인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연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EIEG, 2016b: pp.12-13). 하향식 연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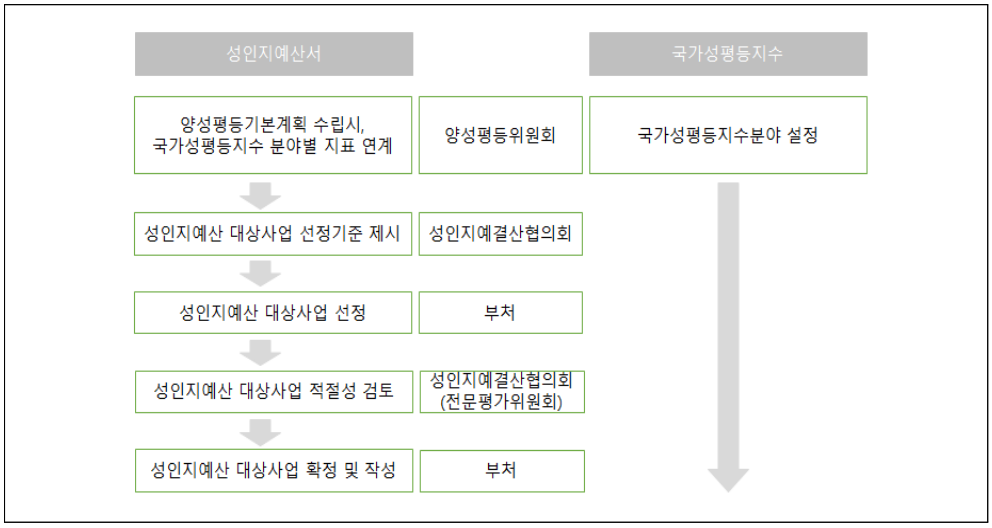

* 출처: 연구진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그림 Ⅳ-4] 하향식 연계방식

한편, 상향식 연계는 현 제도의 연계방식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정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직결됨을 담보할 수 없다. 앞서 제도 연계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듯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정책과제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성인지예산 사업별로 지정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보면 부처별로 구분되지도 않으며, 동일한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르거나 2020년도, 2021년도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하여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양식으로 구성된 것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진일보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변경을 통해 연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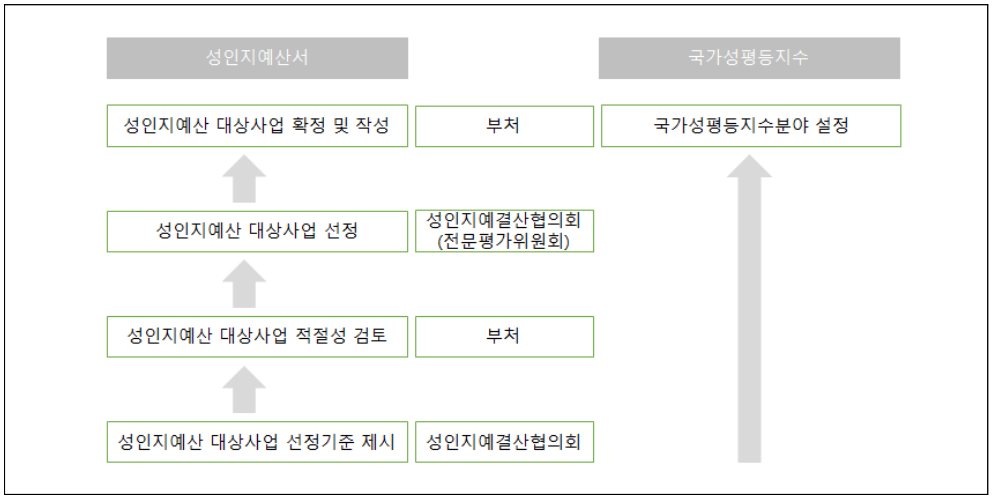

* 출처: 연구진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그림 Ⅳ-5] 상향식 연계방식

현행 제도의 틀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과 연계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체계, 성과지표, 사업단위 및 범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전문평가제도를 통한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관련 체계 변경

국가성평등지수 연계를 위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계의 변경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

각각에 대한 체계 변경방안, 매년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관련 체계 변경방안을 제시한다.

1) 직접목적 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첫째, 직접목적 사업에 대한 선정체계 변경방안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연계된 사업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침상 직접목적 사업은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가 사업 수준으로 연계되지 못했고, 직접목적 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별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선정되므로 실질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연계하고 해당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인지예산 사업, 국가성평등지수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인 별도 연구는 없었으나, 성인지예산, 국가성평등지수 관련 연구(김효주 외, 2019; 주재선 외, 2019)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연계된 사업을 성인지예산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6개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와 매칭한다. 〈표 Ⅳ-7〉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사업을 연계한 표이다[3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중과제 수준을 정책 번호로 부여하여 세부과제 내용을 세부사업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세부사업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31) 주재선 외(2019)는 국가성평등지수 보고서의 정책방안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 등의 성평등 관련 정책과 연계표(부록 3)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가 하나의 계획, 정책, 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획, 정책,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성인지예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 정책, 사업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표 Ⅳ-7〉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업 연계표

분야	지표명	정책 연번	중과제	세부사업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양평 2-1	고용 기회의 성평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중 직종의 남성 진출 확대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양평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성별 임금격차	양평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상용근로자 비율	양평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관리직 비율	양평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업의 성평등 조직혁신 지원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양평 3-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교육·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양평 1-2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양평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복지	비빈곤 인구 비율	-	-	-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	-	-
	장애인 고용률	-	-	-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분야	지표명	정책 연번	중과제	세부사업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건강검진 수검률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스트레스 인지율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의식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양평 5-2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력 제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강화
		양평 5-3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여성폭력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문제 해결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 관계 만족도	양평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양평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육아휴직자	양평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양평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분야	지표명	정책 연번	중과제	세부사업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	-	-
	여가만족도 성비	-	-	-
	성별 정보화 격차	-	-	-

* 출처: 주재선 외(2018: pp.113-1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용 및 수정

다음으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연계한 결과에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을 연계한다. 직접목적 사업 전체를 연계할 수도 있으나,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연계하는 것보다 임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양성평등정책의 사업번호를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연계한다. 세 가지 제도를 연계했으나, 세 제도가 나란히 붙지 않는 경우는 연계 시 공백을 의미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대과제별로 연계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대과제 1) 관련 사업이다.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가 없으며, 이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 연계가 되지 않았다.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중에서 1-2-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와 1-2-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중에서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1-3-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연계되지 않았다.

둘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대과제 2) 관련 사업이다.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및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은 경제활동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 지표와 연계되어 여러 부처의 성인지예산 사업과 연계된다. 하지만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사업 전반과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중 2-3-1.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연계되지 않았다.

셋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대과제 3) 관련 사업이다.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중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3-2. 민간기업 등 여성 대표성 제고 중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연계되지 않았다.

넷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대과제 4) 관련 사업이다.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가 없으므로, 21년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21년 성인지 예산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작성된 사업은 14건이 존재하며, 이를 이탤릭체 및 음영으로 표기하였다. 그 외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중 4-3-4.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도 연계되지 않았다.

다섯째,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대과제 5) 관련 사업이다.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중 5-1-2. 여성폭력 수사·사범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중 5-2-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중 5-3-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중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연계되지 않았다.

여섯째,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대과제 6) 관련 사업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가 없으므로, 21년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다.

〈표 Ⅳ-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1-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1-1-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1-1-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2-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교육·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2-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육·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2-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교육·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1-2-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교육·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학교 운영 지원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관계 만족도		
	1-3-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관계 만족도		
	1-3-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여성사전시관 운영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1-3-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단체 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작품 공모 및 활용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홍보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4-1.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1-4-2.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1-4-3.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표 Ⅳ-9〉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여성과학기술인 법·제도 운영 및 통계조사 (법·제도운영)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기관고유사업비 (법·제도운영)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산업통상자원부	여성 R&D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여학생 산업기술현장 체험(K-Girls' Day)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교육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역량강화(어촌지역개발리더, 여성어업인역량강화)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역량강화(여성어업인 포럼)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역량강화(귀어귀촌 교육)
	2-1-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운영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사업장 교육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인센티브
	2-2-2.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2-3-1. 성별임금격차 해소	경제활동	성별 임금격차		
	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비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4-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직업훈련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2-4-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2-4-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표 Ⅳ-1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지역사회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지원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지역사회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지원
	3-1-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여성가족부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여성가족부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3-1-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3-2. 민간기업 등 여성 대표성 제고	3-2-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의사결정	관리직 비율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CEO 및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콘텐츠 배포
	3-2-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의사결정	관리직 비율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사업 -기업 임원 현황 조사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고위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의사결정	관리직 비율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3-3-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3-3-2.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의사결정	관리직 비율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가족부	미래 여성인재 양성 -여성인재풀 확충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표 Ⅳ-1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1-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보수교육기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1-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4-1-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여성가족부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4-2-1.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가족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가족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4-2-3. 법정 근로시간 준수	가족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일자리함께하기
	4-2-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가족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2-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가족	육아휴직자	고용노동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 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홍보
	4-3-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 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사례집 제작)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직장교육)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고용노동부	2020년 일생활균형 확산지원 교육사업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
	4-3-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 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센터운영(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운영)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인식개선 홍보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 개선 지원
	4-3-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가족	가사노동시간/가족 관계 만족도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표 Ⅳ-1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의식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5-1-2. 여성폭력 수사·사범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의식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의식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국방부	성인지교육
				교육부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전문대·교원양성대학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경찰청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예방 홍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예방 홍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국방부	성인지교육
				교육부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전문대·교원양성대학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경찰청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예방 홍보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예방 홍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5-2-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고도화
	5-2-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5-2-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성가족부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3-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지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지원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3-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5-3-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경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법무부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5-3-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안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5-4-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여성건강기반기술 개발연구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여성건강기반기술 개발연구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여성건강기반기술 개발연구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5-4-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건강검진 수검률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스트레스 인지율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성·피임교육 및 홍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가족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성·피임교육 및 홍보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표 Ⅳ-1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국가성평등지수-성인지예산 작성사업의 연계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중과제	세부과제	분야	지표	부처	사업명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6-1-2.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6-1-3.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6-1-4.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6-2-1.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6-2-2.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6-2-3.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6-3-1.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6-3-2.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6-4-1.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6-4-2.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출처: 주재선 외(2019),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21년 성인지 예산 작성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사업 중 21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명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 성인지 예산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연결 후 부정합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대과제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가 전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양성평등정책의 대과제 6번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 한편, 중과제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 보듯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상당 수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성평등지수 연계가 전혀 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분야의 국가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중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대과제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중 복지 분야(비빈곤 인구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및 문화·정보 분야(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에는 연계되는 과제가 없고, 교육·직업훈련 분야 중 평균 교육년수 지표에도 연계되는 과제가 없다.

셋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사업단위 수준과 측정수준의 간극은 크게 보인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 수준보다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별 수준으로 넘어서 성별 격차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 수준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반면, 양성평등정책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 실제 내역사업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다양한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성인지 예산사업의 구체적인 연계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넷째,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내역사업 기준으로 볼 때, 직접목적 사업은 117개이나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총 79개 사업로서 직접목적 사업 중에도 해당 매칭과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48개이다. 현 제도 틀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성인지 예산사업의 제한적인 연계를 시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직접목적 사업을 하향식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도 상향식으로 연계한 〈표 Ⅳ-14〉와 마찬가지로 공백이 발생한다. 상위계획 수립시 연계되지 않은 하위 요소를 사후에 연계하면 공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하에서는 이러한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 연계를 위해서는 차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 성인지예산사업의 연계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Ⅳ-14〉 성인지예산서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연계

번호	성인지예산 직접목적 사업(2021년도)	성인지예산 양평사업(2021년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대과제
1	7개 사업	4개 사업	문화정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	18개 사업	17개 사업	경제활동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2개 사업	19개 사업	교육직업훈련	
3	8개 사업	3개 사업	의사결정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4	23개 사업	9개 사업	복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0개 사업	8개 사업	가족	
5	8개 사업	6개 사업	보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21개 사업	13개 사업	안전	
6	-	-	-	양성평등계획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18), 대한민국정부(2020a, 2020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계의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 체계상 직접목적 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방안이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직접목적 사업의 대부분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에서도 비교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목적 사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연계보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국가 성평등 지수와 성인지 예산사업 간의 연계성을 만들어내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 간접목적 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간접목적 사업은 사업의 고유 목적이 있으며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 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범주 밖에 있으므로 국가성평등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제도 하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간접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대상사업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는데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관성을 논하기는 더욱 어렵고,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가 경우가 많아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인 직접, 간접목적사업과 성평등 중점추진 사업 모두를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간접목적사업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간접목적사업의 경우 성평등지수와의 연관성과 기여도를 고려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가 1)"

>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성인지 관점의 평가가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정량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간접목적 사업과의 간극이 커서 연계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문가 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따라서 일차적으로 직접목적 사업 중심의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부차적으로 간접목적 사업에 대한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시에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간접목적 사업의 대부분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시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선정된 간접목적 사업에 대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선택보다는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선제적 고려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예산과 함께 성주류화의 주된 도구로서,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 성별영향평가로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p.3).

〈표 Ⅳ-15〉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table>
<tr><th colspan="2">평가대상</th><th>각 기관</th><th>여성가족부</th></tr>
<tr><td rowspan="2">성별
영향
평가</td><td>중앙
부처</td><td>•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
•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td><td>•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협의</td></tr>
<tr><td>지방
자치
단체</td><td>•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는 각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수행</td><td>•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td></tr>
<tr><td rowspan="2">특정
성별
영향
평가</td><td>중앙
부처</td><td>•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td><td rowspan="2">•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반영결과 점검</td></tr>
<tr><td>지방
자치
단체</td><td>•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td></tr>
<tr><td colspan="2">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td><td>•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td><td>•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국무회의)
• 국회 제출 및 공표</td></tr>
</table>

* 출처: 여성가족부(2021b: p.5)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p.46). 하지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작성될 때, 성평등 목표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작성되었을 때 성평등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조차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고, 특히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대한 설정은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시 국가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선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통 주제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b: p.47).

하지만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에는 국가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성평등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는 국가성평등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성인지예산 사업 중 간접목적 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의 어려움을 노정한다.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국가성평등 지수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으로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한 사업과 함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을 부처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고려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영역을 전제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간접목적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이자 성 주류화 제도 통합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Ⅳ-16〉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 변경(안)

2021년도		2022년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선정 기준	해당 여부
-	-	▸ 국가성평등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경제활동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 □ 가족 분야 □ 의사결정 분야 □ 보건 분야 □ 복지 분야 □ 문화·정보 분야 □ 안전 분야	
▸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별 성평등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사업의 수혜 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 예 □ 아니오	▸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별 성평등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사업의 수혜 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 예 □ 아니오

2021년도		2022년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선정 기준	해당 여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21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21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 출처: 여성가족부(2021b) 참고

3)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관련 선정체계 변경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위한 성인지예산의 선정체계를 변경하는 세 번째 방안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에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선정기준이 되었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한 것은 성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9a: p.9). 2019년에는 미투운동 등으로 젠더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되어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젠더폭력 사업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이 되었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도 젠더폭력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지속하였다. 2021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고용위기의 성별영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매년 초 개최되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결되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성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지표, 사업, 이슈를 논의하여 특정한 분야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국가성평등지수의 취약분야인 의사결정 분야, 가족 분야, 안전 분야 등의 지표를 검토하여 해당 지표 관련 사업의 발굴하여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선정기준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을 정할 때,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정한 분야를 논의하되, 대표지표와 더불어 관리지표를 함께 논의하여 반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와 성인지 대상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인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1안은 국가성평등지수의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의 관련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년도나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성평등지수 점수가 가장 낮은 '의사결정' 분야에 관한 모든 사업을 검토·발굴하여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선정하며, 국회의원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의 대표지표 뿐만 아니라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성별 대학교수 비율 등의 관리지표와 연결하는 것이다.

2안은 국가성평등지수 전반 혹은 특정 분야를 검토하되, 특정 지표를 선택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성평등지수 점수가 가장 낮은 '의사결정' 분야 중에서 '관리직 비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검토·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Ⅳ-17〉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2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점 사업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참고	◦ **'23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1안) *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에 관한 모든 사업 (2안) *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 중 '관리직 비율' 지표**에 관한 모든 사업

* 출처: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다만, 전문가들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보다는 현재와 같이 젠더 이슈 중심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과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며, 이 때문에 국가성

평등지수 분야 선정과 맞물릴 경우 중복적인 선정 및 적절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도 제시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따라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에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성평등 중점사업은 현재와 같이 해당연도 예산서 작성 시 중요 이슈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성평등지수 중 하나의 지표나 영역의 모든 사업으로 설정할 경우 직·간접 사업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성평등 중점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성평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적정성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전문가 1)."

> "성평등추진 중점사업 도입과 운영 관련하여 추가적 문제 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대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을 성평등추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개선사항 중, 비교적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젠더이슈 관련 정책정보를 간단하게 생산하여 보고하는 틀로서의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가장 제한된 범주에서 가장 제한된 목적의 사업들의 총량과 투입방법 등을 망라하여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일차적 자료만으로도 해당 영역의 성평등 효과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성평등추진 중점사업의 범주를 '추가'가 아닌 '변경'을 했습니다.(…)단년도 성인지예결산서의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년도 자료만 근거로 하여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2)."(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의 시작점은 대상사업 연계지만, 도착점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지표와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의 연계에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목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의 실적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게 되므로 국가성평등지수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제시하는 지수로서, 성과지표를 사업 단계별 정보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36).

〈표 Ⅳ-18〉 성과지표의 유형

구분	개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결과지표	부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p.36 〈표 11〉

성과지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결산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고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제시하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통해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박홍엽, 2012: p.188). 성과지표는 투입이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처음 의도한 궁극적인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의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요구되고 있다. 즉,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투입 및 단순한 산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국가성평등지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국가성평등지수는 결과지표(outcome)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는 어떤 종류의 지표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예산 사업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가 연계되더라도 지표의 종류에 따라 성과정보의 유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평등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데 적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틀(상향식 연계)에 따른 성인지 예산 사업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성평등 목표,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심의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하향식 연계시 성과지표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특히,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의사결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중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의사결정 분야로 선정한 14개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를 검토하였다. 14개 사업 중 양성평등사업으로 직접목적사업인 사업은 3개이며, 직접목적사업에만 해당한 사업은 5개이다. 간접목적사업은 6개이다.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설정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로 가장 좋겠지만, 해당 사업들의 성과목표는 결과지표 뿐만 아니라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는 성인지 예산서 상의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처럼 결과지향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성 주류화 측면에서 사업의 전과정에 있어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는 사업은 성별분리통계를 구축 및 사업과정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제안하므로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이 설정되는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9〉와 같다. 먼저, 양성평등사업이자 직접목적사업인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3개 사업이었다.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회변화 및 정책추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이라는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의 대표지표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양성평등문화확산-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데 성평등 목표가 있었으며, 성과지표는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 공모 사업 추진단체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라는 결과지표였다. 이 또한 의사결정 분야의 대표지표와의 연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래 여성인재 양성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기반 조성 및 여성의 관리직 진출 지원, 정부위원회위원, 공공기관임원 등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지원을 통해 여성대표성 제고에 있었다. 성과지표는 '여성인재풀 누적 등재 인원(천명)'으로 산출지표로 설정되어 있었고, 결과지표는 아니지만 여성인재풀이 누적되어 파이프라인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관리직 비율'이라는 의사결정 분야 지표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직접목적사업에만 해당한 사업은 경찰청의 세부사업인 경무인사지원 사업의 5개 내역사업이었다. 3개 사업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산출지표로서 위원회, 협의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횟수가 제시되고 있었고, 2개 사업은 결과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가 의사결정 관련 내용이 아니라 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내용이

었다. 경무인사지원-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경찰-시민이 협력하는 실질적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성평등 목표였고, 성과지표는 '성평등위원회 운영(회)'로 산출지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 통계지표 개발, 성평등조직문화 조성, 성 주류화제도 운영방안 연구였으며, 성과목표는 '협의회 회의(회)'로서 산출지표였다. 경무인사지원-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全 경찰관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성평등 교육 실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다. 성과지표는 '성평등 교육 정착도(%)'로 결과지표를 산정하고 있었다. 경무인사지원-성 주류화제도 운영 사업은 모든 경찰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 점검·개선을 통해 경찰정책의 성평등 가치 함양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으며, 성과지표는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로 결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의제 확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경찰 성평등정책의 핵심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평등 의식 제고에 있었으며, 성과목표는 '성평등 의제 토론회(회)', '여성근무자 간담회(회)'로서 산출지표였다.

다른 한편, 의사결정 분야 간접목적사업은 6개 사업이었다. 간접목적사업은 직접목적사업에 비해 성평등목표와 성과지표 간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의 접점이 없다보니, 사업 내용에서 의사결정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의사결정 분야를 선택하기도 하고, 여성대표성 등 성평등목표를 토대로 의사결정 분야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 종합연구 사업의 경우, 성평등 목표는 고령자,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공간 조성 기반(제도) 구축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성평등 목표는 아니나, 성과지표는 '연구과제 책임자(참여자) 성별통계 구축여부(%)'로 여성대표성을 고려한 투입지표를 설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남녀 간 차이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시 여성의견을 적극반영하는 것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여성의 의견 반영정도를 확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대상자 중 여성 비율(%)'로 산출지표가 설정되었다.

외교부의 네팔(ODA)-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사업의 운영 및 추진 시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참여를 통한 여성 역량강화 및 지역 내 여성지위 향상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다. 성과지표는 '주민제안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로 결과지표였다. 외교부의 국민외교추진기반구

축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국민외교 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었으며, 성과목표는 '국민외교사업에 여성 참여율(%)'로 결과지표였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육성-해수욕장활성화지원 사업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하여 해수욕장 평가에서의 균등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성평등 목표가 있었으며, 성과지표는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 여성 참여비율(%)'이었으며,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발전방안 연구(전문가 자문료 등)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위원 중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40%를 유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성과목표는 '여성위원 구성 비율(%)'로 결과지표였다.

〈표 Ⅳ-19〉 의사결정 분야 성인지예산 사업 목록(2021년, 상향식 연계)

연번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유형	성평등목표	성과목표(단위)	성과목표 종류
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직접목적사업/양평사업	ㅇ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사회변화 및 정책추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	결과지표
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확산-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직접목적사업/양평사업	ㅇ 민관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촉진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추진단체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결과지표
3	여성가족부	미래 여성인재 양성	직접목적사업/양평사업	ㅇ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기반 조성 및 여성의 관리직 진출 지원 ㅇ 정부위원회위원, 공공기관임원 등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지원을 통해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재풀 누적 등재 인원(천명)	산출지표
4	경찰청	경무인사지원-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직접목적사업	ㅇ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경찰-시민이 협력하는 실질적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운영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산출지표
5	경찰청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직접목적사업	ㅇ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성평등 수준 제고를 및 경찰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성인지 통계지표 개발 ㅇ 경찰조직 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개선방안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조직문화조성 ㅇ 해외선진사례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경찰정책 추진여건에 맞는 성 주류화제도(성평등기본시설, 성인지직무교육,성별영향평가등)운영방안 연구	협의체 회의(회)	산출지표
6	경찰청	경무인사지원-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접목적사업	ㅇ 全 경찰관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성평등 교육 실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평등 교육 정착도(%)	결과지표
7	경찰청	경무인사지원-성 주류화제도 운영	직접목적사업	ㅇ 경찰청 뿐만 아니라 지방청·부속기관, 경찰서 단위까지의 모든 경찰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 점검·개선을 통해 경찰정책의 성평등 가치 함양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결과지표

연번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유형	성평등목표	성과목표(단위)	성과목표 종류
8	경찰청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의제 확산	직접목적사업	ㅇ 경찰 성평등정책의 핵심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평등 의식 제고	성평등 의제 토론회(회) 여성 근무자 간담회(회)	산출지표
9	외교부	네팔(ODA)-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간접목적사업	ㅇ 사업의 운영 및 추진 시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ㅇ 여성의 참여를 통한 여성역량강화 및 지역내 여성 지위 향상	주민제안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	결과지표
10	외교부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	간접목적사업	ㅇ 국민외교 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국민외교사업에 여성 참여율(%)	결과지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종합연구	간접목적사업	ㅇ 고령자,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공간 조성 기반(제도) 구축	연구과제 책임자(참여자) 성별통계 구축여부(%)	투입지표
12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해수욕장활성화지원	간접목적사업	ㅇ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하여 해수욕장 평가에서의 균등한 평가 시행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 여성 참여비율(%)	결과지표
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간접목적사업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남녀 간 차이 없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시 여성의견 적극 반영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대상자 중 여성 비율(%)	산출지표
14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발전 방안 연구(전문가 자문료 등)	간접목적사업	ㅇ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위원 중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40%를 유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여성위원 구성 비율(%)	결과지표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1a;2021b)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이상의 의사결정 분야 사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심의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하향식 연계시 성과지표 조정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outcome-oriented)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의 단계와 성인지적 분석의 수준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의 한계는 있으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10여년 지난 시점에서 기존 성과지표를 보다 결과지향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한 투입이나 산출로 대부분 제시되어 성인지적 정책효과나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평등 수준의 확인 및 환류가 어렵고,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매칭된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되,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도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모든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나 산출지표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주지하듯이, 간접목적 사업이 존재하는 한 과정지표나 투입지표를 통해 성평등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따라서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에서 결과지향적 성과지표의 설정을 제안하고 예외를 인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성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결과지표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간접목적사업의 결과지표 또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사업의 결과로 제시된 성과 또한 성평등과 연관성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목적사업의 경우 결과지표보다는 투입지표나 과정지표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문가 1)”

>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 지표로 설정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따른 성평등 목표를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로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목표일 경우 과정지표나 투입지표로 우회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성평등 목표와 거리가 있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지향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둔다면, 사업목적이나 내용과 상관없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정성적 성평등 목표를 지니는 사업들은 대상과제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지향적 지표를 우선으로 하되, 예외상황에서 과정지표 및 투입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전문가 4)”

> "결과지향적인 지표가 바람직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결과지향적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만 하면 좋을 듯합니다. 가능하다면 성과지표가 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경우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전문가 3)."

> "성인지 예산산업의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outcome-oriented) 지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전문가 5)."(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함께 관리지표가 제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의 틀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가 설명하는 분야의 범위가 좁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일관적으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수 공표 보도자료나 국가성평등지수를 검색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사이트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대표지표에 한정된다. 이를 통해서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측정하는 성평등 수준의 범위가 상당히 거시적이어서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부사업 단위로 연계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표지표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가 산정되지만, 대표지표는 관리지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관리지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시 공백을 메워주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점수가 가장 낮은 의사결정분야를 살펴보면, 대표지표는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로 4개이나, 그 외에도 관리지표로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성별 대학교수 비율, 성별 공무원의 수,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여성장관 비율,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의 9개 지표가 있다. 관리지표는 국가성평등보고서에는 제시되나, 국가성평등지수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성과지표 설정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

〈표 Ⅳ-20〉 의사결정 분야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2 의사 결정 분야 (13개)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 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에서의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IPU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공식통계 없음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출처: 주재선 외(2019: p.160-168) 〈부록 2〉
**주: 음영이 없는 부분은 대표지표, 음영이 있는 부분은 관리지표임

의사결정 분야의 대표지표만을 고려할 경우, 여성대표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만을 상정하게 되어 관련 사업의 범위를 이에 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지표를 고려할 경우, AA대상 사업체 및 일반 사업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고위 및 하위를 포함한 공무원 전반, 여성장관, 사법 및 경찰, 공공기관 등과 유관한 사업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의사결정 분야의 관리지표를 고려하여 제도를 연계한다면 앞서 본 〈표 Ⅳ-10〉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과제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에서 중과제 수준과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연계한 후 세부사업(혹은 내역사업)이 연계한 경우의 간극이 줄어들 수 있다.

〈표 Ⅳ-21〉 양평기본계획 대과제3과 의사결정 분야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연계(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지수 분야	
중과제	세부과제	지표	통계적 정의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3-1-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에서의 여성비율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3-1-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3-2. 민간기업 등 여성 대표성 제고	3-2-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3-2-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지수 분야	
중과제	세부과제	지표	통계적 정의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3-3-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3-3-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8), 주재선 외(2019: p.160-168) 〈부록 2〉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단위 조정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성인지 예산 사업의 사업단위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국가성평등지수는 단위사업 수준의 지표로 되어 있는 반면, 성인지 예산 사업은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서 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는 내역사업별로 작성되고 있어 전체 사업수는 별도로 내역사업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성인지 예산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적 - 성인지 예산서를 세부사업으로 작성하는 것은 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으로 성별 수혜 분석 및 예산의 범위를 내역사업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의 관계 분석시 성인지예산 금액의 수준도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다.

즉,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사업단위가 혼재되는 것은 국가성평등지수별 성인지예산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환류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도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이 나누어지면 사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정 분야의 사업 변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단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업단위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조정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영향분석'에 목표를 두는 성인지 예산과 '측정'에 목표를 두는 국가성평등지수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무리한 사업단위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및 부처 성평등 목표 수준에서 하향식 조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개선하면서 단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서로 목표가 다르므로 무리한 조정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수준의 사업단위가 적합한 가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사업단위가 적절히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전문가 3)."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작성단위가 상향될수록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수의 영역이나 분야, 지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성인지 예산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와 개별적으로 연계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연관된 사업 여러 개를 국가성평등지수나 양평계획을 기준으로 묶어 그룹화하고, 이를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전문가 1)."

>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지향해야하는 성평등 목표를 국가성평등목표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시키고, 이에 따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 간 예산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4)."

> "결과지표를 성평등지수의 관리지표 영역별로 그룹화하여 하향식 대상과제 선정을 하게 된다면 세부사업 수준으로는 도달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사업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경우, 단위 사업 내의 여러 세부사업 중, 젠더분석이 가능한 한 두 사업을 대표분석으로 하여 전체 성과를 측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단일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배분 분석)으로는 분석이 불가한 사업들이 다수 나타날 것이므로, 현재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은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 단위사업 내 복수의 세부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경우와 개별분석하여 분석내용을 통합하는 경우 등, 세분화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합니다(전문가 2)."(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를 통한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사업단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볼 때, 총괄적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위사업 단위에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고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위사업 단위 내 예산 분배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 단위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서를 세부사업 수준으로 작성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또한 세부사업 수준에서의 관리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지표)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지표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범위 조정

한편,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을 연계한다는 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집행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재정사업을 집행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포함하고, 외국에 대한 지원 등으로 외국의 성평등 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성평등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네팔(ODA)-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교부의 '네팔(ODA)-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의사결정 분야로 설정되었으나, 네팔에서의 '주민제안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을 측정하므로 네팔 여성의 의사결정상의 성평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은 교육·훈련분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글로벌연수 여성 연수생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잡아 개발도상국의 국적 소지자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여성의 교육·훈련의 성평등에 기여한다. 또한 교육·훈련분야로 설정된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ODA)-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사업은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강의 만족도(점)'를 측정하는데 이는 외국인 대상이므로 우리나라 교육·훈련분야의 성평등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지수나 수준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 사업내용을 개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와의 연계의 공백을 좁히고,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표 Ⅳ-22〉 성인지예산 사업 중 ODA 목록(2021년, 상향식 연계)

연번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유형	성평등목표	성과목표(단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1	외교부	네팔(ODA)-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간접목적사업	ㅇ 사업의 운영 및 추진 시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로 성평등 문화 확산 ㅇ 여성의 참여를 통한 여성역량강화 및 지역내 여성지위 향상	주민제안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	의사결정
2	외교부	에티오피아(ODA)-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직접목적사업	ㅇ 에티오피아 MDGs 중 달성도가 낮은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통해 모성사망비 감소 및 출산 및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ㅇ 숙련된 의료인력을 통한 분만률 증대, 산전관리 도모(4회 이상 독려), 현대적 피임법 이용	숙련 인력에 의한 분만률(%)	가족
3	외교부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나이지리아 UNFPA보르노주여성및소녀를 위한성생식보건및젠더	직접목적사업	ㅇ 젠더기반폭력생존자 서비스 제공 및 이동식 진료를 통해 근본적인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등 달성에 기여 ㅇ 산과 누공치료에 더해 생존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하고 사회재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 누공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명)	보건
4	외교부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3차	직접목적사업	ㅇ 여성 청소년들의 임신율 감소 및 성생식 보건 제고(산후안 지역 성보건 센터건립(산토도밍고 지역은 기존 사업으로 센터 설립), 성보건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보건 센터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활동을 통해 대상지역 청소년들에게 성보건 교육, 보건서비스, 사회적지지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성보건 인식제고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임신 감소 및 성생식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SDG 5.3, 5.6, 5.c 부합))	성생식보건 역량강화 교육 이수자 수(명)	보건
5	외교부	글로벌연수(ODA)-연수과정운영	간접목적사업	ㅇ 개발도상국 여성의 교육자원 접근성 향상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여성의 국제협력 참여 확대에 기여 ㅇ 여성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	글로벌연수 여성 연수생 참여율(%)	교육·직업훈련
6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간접목적사업	ㅇ 해외 여성 예술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전문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취업 영역 확대	여성 수혜자 인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연번	소관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유형	성평등목표	성과목표(단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7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직접목적사업	ㅇ 개도국과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강의 만족도(점)	교육·직업훈련
8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여성 역량강화 지원	직접목적사업	ㅇ 개도국과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개도국 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수(명)	교육·직업훈련
9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직접목적사업	ㅇ 개도국과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직업훈련 여성 수혜자 수(명)	안전
10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직접목적사업	ㅇ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복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마.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의 활용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성과평가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성평등을 어떻게 증진하도록 할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성평등은 사회적 가치로서 획일적이지 않으며 모든 정책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Verloo, 2002: pp.9-10).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위한 다차원의 논의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논의는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제도는 젠더 전문가 및 재정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문평가제도 하에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및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시 평가위원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업별 평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중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다만, 전문평가제도가 시행된 첫 해이자 시범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평가의 결과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평가위원들 간에 공유 및 동의가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 4)."

>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평가에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성평등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의 시점이 대상사업 선정 등 운영방식의 개선과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논의들을 나란히 놓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일련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전문가 2)."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취약 분야 성평등지수 개선에 필요한 각 부처의 성인지예산사업을 정하게 하고, 해당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 1)."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을 한 후에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전문가 5)."(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및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고려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지점을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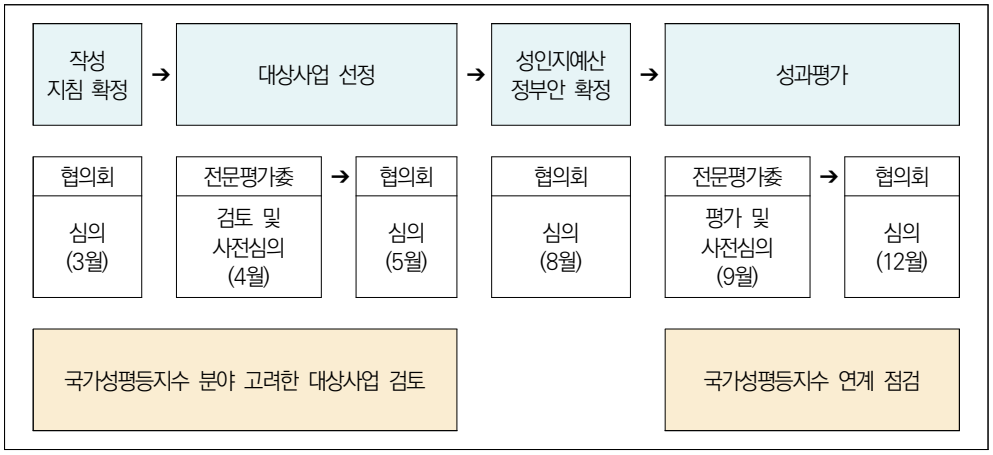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21)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Ⅳ-6]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를 통한 연계 지점

첫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는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을 볼 것인가부터 시작하므로 필연적으로 분야별 대상사업 적절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시, 성평등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여 어떤 성평등 분야를 증진시킬 것인지를 고려하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검토하고,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이 낮은 분야의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확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전면적인 하향식 연계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현재 검토 체계 안에서 실무위원들의 국가성평등지수 관련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사업 분포를 검토할 수 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의 대상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필요한 사업,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부처 자발적 발굴 사업 등 '22년 신규사업과 '21년 기존사업 중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제시하고 관련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1년 기존사업 중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은 설정된 국가성평등지수가 있으므로 설정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하여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계성을 제한적이나마 높일 수 있다.

〈표 Ⅳ-2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표 및 지침 변경(안):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

<table>
<tr><th colspan="3">2021년도</th><th colspan="3">2022년도</th></tr>
<tr><th>구분</th><th colspan="2">검토 의견</th><th>구분</th><th colspan="2">검토 의견</th></tr>
<tr><td>총평</td><td colspan="2">- 검토의견
·지표별 검토 의견 제시
·사업 성평등 목표, 성인지적 성과목표의 예시 제안
·관련 근거 통계자료 제시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

- 기타사항</td><td>총평</td><td colspan="2">- 검토의견
·지표별 검토 의견 제시
·사업 성평등 목표, 성인지적 성과목표의 예시 제안
·관련 근거 통계자료 제시 등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관련 의견 제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

- 기타사항</td></tr>
<tr><td rowspan="3">종합 의견</td><td colspan="2">대상사업 적절성 여부</td><td rowspan="3">종합 의견</td><td colspan="2">대상사업 적절성 여부</td></tr>
<tr><td>여</td><td>부</td><td>여</td><td>부</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출처: 성인지 예·결산협의회(2021b: pp.7-8)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둘째,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연계를 점검한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작업은 거시적 차원의 성과 평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별 평가뿐만 아니라 분야별 점검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평가 체계를 변경하여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 분과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내 전문평가위원회는 1분과-경제활동, 2분과-교육·직업훈련, 3분과-문화·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무위원 및 평가위원의 평가 모두 사업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위 차원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기 어렵다. 상위 차원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및 지침을 변경하여 실무위원과 평가위원의 평가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실무위원은 사업별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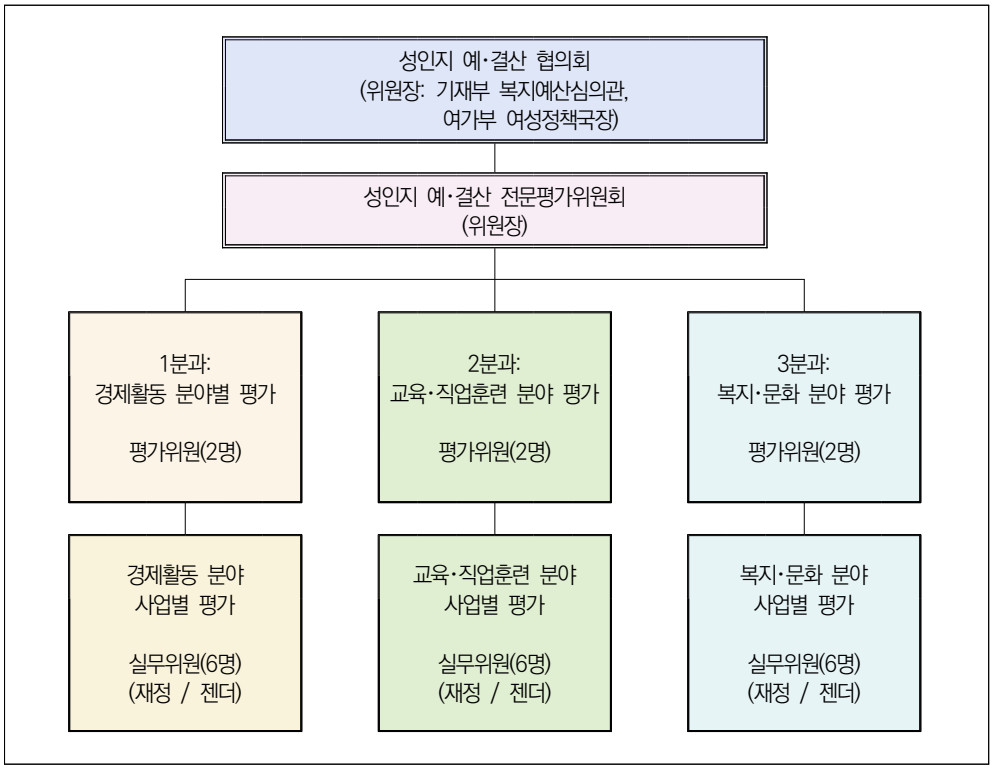

* 출처: 성인지예·결산협의회(2021b: p.1)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Ⅳ-7]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기능 변경(안)

이상의 평가 기능 구성을 토대로 실무위원은 각 평가지표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현재,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구성을 토대로 계획-성과-환류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위원은 성인지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 성과목표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맞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성인지 결산 단계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는 성과 달성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며, 환류 단계에서 양성평등계획 및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성평등 증진 노력이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통해 환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평가지표에는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특정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평가지표 및 지침의 개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표 Ⅳ-24〉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평가지표 변경(안)

1. 계획 영역 - 사업 계획의 적절성

1-1.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 **국가성평등지수**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① 사업 성평등목표가 해당 사업의 근본 취지, 대상 및 범위, 사업성과에 따른 성불평등 감소효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참조하여 평가
-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해당연도) 참조하여 평가
② 2020~2022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적절한지를 판단
③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판단

1-2. 성별수혜분석(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은 사업의 성평등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가?

① 사업 성평등 목표에 맞도록 대상자 및 수혜자는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대상자 및 수혜자를 집계하기 위해 적합한 통계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예산배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
② 2020~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의 성별수혜분석" 부분을 참고하여 평가

1-3.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사업 성평등 목표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① 성과목표(지표)가 사업 성평등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도록 설정되었는지를 판단
-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2020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설정과 비교하여 판단에 참고
-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해당연도)를 참조하여 판단에 참고
② 2020~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의 2020년 성과목표" 부분을 참고하여 평가
③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판단

2. 성과 - 양적 및 질적 성과

2-1. 계획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달성되었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3개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
②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설정된 목표치를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

2-2.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② "자체평가"에서 성과목표 상향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노력 정도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성과목표가 미달성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④ 목표치와 관련하여 과년도 성인지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참조하여 판단에 참고
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맞는 성과 달성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

3. 환류 - 결산 평가의 환류 및 모니터링 효과성

3-1. 성인지 결산의 성과 및 개선사항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 혹은 활용되었는가?

①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 및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②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별 집행내역" 중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한 원인 및 향후 개선사항 내용이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에 반영되거나 활용되었는지를 평가

3-2. 사업이 예산배분 및 집행과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보는가?

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평가
② 사업의 내용, 성평등 목표, 대상자 및 수혜자, 예산 금액 및 배분방식, 사업 수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한 모니터링이 성평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
③ 사업집행을 통해서 사회전반적인 성평등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혹은 젠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가져온 경우 등 인지를 평가
④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성평등 제고에 사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

□ 총평의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사업 개선 권고 의견

① 평가영역별로 평가항목 검토의견(관련 근거 통계 자료 등 제시)에 따른 사업의 개선권고 및 관리사항(사업 내용, 수행방식, 성과목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예산 조정 필요성, 모니터링 등)을 작성함
② 기타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등을 작성함
③ 권고의견 없을 시 '없음'으로 표기함

2. 대상사업 지속성 의견

① 평가항목 검토에 따른 대상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성인지 예·결산으로 관리되지 않아도 되거나 성인지적 개선 필요성이 없는 등 작성 실익이 적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작성함

□ 종합의견의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평가점수, 사업 개선 권고 의견, 대상사업 지속성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개선 권고가 필요한 지 여부, 대상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제시함
② 사업개선 권고 여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내용, 수행방식, 성과목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총평에 권고의견으로 기재했다면 "여"에 ○표시하고, 특별한 개선 권고의견이 없으면 "부"에 ○표시함
③ 대상사업 지속 여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 성평등 목표 및 성과 달성, 성평등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여"에 ○표시하고,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성인지 예·결산으로 관리되지 않아도 되거나 성인지적 개선 필요성이 없는 등 작성 실익이 적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없다면 "부"에 ○표시함

* 출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b: pp.10-13)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이후 평가위원은 실무위원 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의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사업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의 활용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 위원회의 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고·공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 주류화 측면에서 국가성

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점검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이로써 국가성평등지수 수준이 낮은 분야 및 지표, 관련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0), “201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0.1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1), “201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1.1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6),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6.1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7),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7.1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8),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2018.11).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관계부처합동(2020.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2021.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기획재정부(2009-2019),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09-2020년도, 각년도).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김경희·이민아·이은아·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김경희·이택면·마경희·주재선·김희경·유정미·이솔(2016),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연구』, 여성가족부.

김영숙·이명재·김효선(2012),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패널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주·조선주·김영숙·박수범·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20),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김효주·조선주·이택면·김영숙·박수범·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정부(2009), 『2010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0a), 『2011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0b), 『2011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1a), 『2012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1b), 『2012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2a), 『2013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2b), 『2013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3a),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3b),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4a), 『2015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4b), 『2015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5a), 『2016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5b), 『2016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6a),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6b),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9a), 『2020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9b), 『2020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19c), 『2018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0a), 『2021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0b), 『2021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0c), 『2019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1a), 『2022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1b), 『2022년도 성인지(性認知) 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2021c), 『2020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대한민국정부.

마경희(2014),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젠더와 사회. 동녘((사)한국여성 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동녘 중 마경희 파트).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박선영·김복태·윤지소(2019),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박복순·송효진·송치선·조연숙·김명아(2018),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홍엽(201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1(2): 167-202.

성인지예·결산협의회(2021a), 내부자료(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방안).

성인지예·결산협의회(2021b), 내부자료(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9), 내부자료(성인지예산 작성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1a), 내부자료(국가성평등지수 자료).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7.11.16.)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지침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숙연(2009), "수사 또는 현실?: 정부 정책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기반 구조", 국가정책연구, 23(4), 93-113.

이은경(2014),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성 주류화의 틀짜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2): 397-429.

이은경(2018),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 논의를 분석하며", 정부학연구, 24(2): 303~331.

이은아(2010), "젠더와 여성정책", 이재경 외, ≪여성학≫, 서울: 미래M&B.

조선주·김영숙·김효주·장윤선·손정민·김병권·김효진·김소정·김해람(2015), 『국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Ⅰ):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김영숙·박수범·김효주·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20),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김영숙·정가원·황정임·김동식·김효주·박수범·김효선·남궁윤영·이연지·손정민·권희정·나세원·정혜윤(201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국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이택면·김영숙·김효주·성민정·권도연·김병권·김해람·안주희·김수지(2019),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희(2008), "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7(3), 291-318.

주재선·김태홍·배호중(2017),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주재선·윤덕경·김영택·김영란·김난주(2017),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 지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정성미·한진영(2018), 『2018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내부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21), 내부자료(22년 성인지 예산 정부안 편성현황).

허라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 주류화", 여성학논집, 25(2), 45-79.

(2) 국외문헌

Booth, C.& Bennett, C.(2002),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9(4): 430-446.

Budlender, Debbie and Sharp, Rhonda with Allen, Kerri(1998),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Bundesministerium für öffentlichen Dienst und Sport(2018), 『Bericht zur Berücksichtigung der tatsächlichen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m Rahmen der Wirkungsorientierung 2017』.

Chakraborty, L., Ingrams, M., & Singh, Y.(2019). Macroeconomic policy effectiveness and inequality: Efficacy of gender budgeting in Asia Pacific.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s Series, 920.

Council of Europe(2009), 『"Gender budgeting: practical implemen- tation", Handbook』, Council of Europe, 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and Legal Affairs, April 2009.

Council of Europe(2005), 『Gender Budgeting: Final report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gender budgeting(EG-S-GB)』, 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Strasbourg.

EIGE(2016), EIGE's methods and tools.

IMF(2003), 『Gender-Responsive Government Budgeting』, IMF Working Paper 03/83.

IMF(2017), 『Gender Budgeting in G7 Countries』, April 19, 2017.

Lombardo, E.(2005), "Integrating or Setting the Agenda?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Constitution-Making Process", Social Politics, 412-432.

Moser, C. & Moser, A.(2005), "Gender Mainstreaming Since Beijing: A Review of

Success and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Gender & Development, 13(2): 11-22.

OECD(2017),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6/3.

Shaw, J. (2002), "The European Union and Gender Mainstreaming: Constitutionally Embedded or Comprehensively Marginalized?", Feminist Legal Studies, 10:213-226.

Stotsky, J. G., & Zaman, A.(2016), The influence of gender budgeting in indian states on gender inequality and fiscal spending. IMF Working Papers 16/227. IMF.

UNDP(2005), 『Gender Responsive Budgeting: Manual for Trainers』.

UNFPA·UNIFEM(2006), "Gender Responsive Budgeting and Women's Reproductive Rights: A resource pack".

Verloo, Mieke.(2001),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WM Working Paper, no 5, Vienna.

Verloo, Mieke(2002), "The Development of Gender Mainstreaming as a Political Concept for Europe." Conference Gender Learning Leipzig 6-8 September 2002.

Walby, S.(2005),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321-343.

(3)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 (최종 검색일자: 2021.09.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시행령 (최종 검색일자: 2021.09.24.).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최종 검색일자: 2021.09.24.).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최종 검색일자: 2021.09.24.).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성인지예·결산협의회운영규정/(518,20201022) (최종 검색일자: 2021.09.24.).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What is gender mainstreaming.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what-is-gender-mainstreaming (최종 검색일자: 2021.9.27.).

부 록

〈부록 1〉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195
〈부록 2〉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207
〈부록 3〉 성평등지수 분야별-사업유형별 사업목록 213

<부록 1>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부표 1〉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개, %)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경찰청	달성			1				3	
	성과목표수			1				3	
	달성률			100.0				100.0	
고용노동부	달성		22	3			2		
	미달성		12	4		1			
	성과목표수		34	7		1	2		
	달성률		64.7	42.9		0.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성		5	6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6	8					
	달성률		83.3	75.0					
교육부	달성		1	5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5			1		
	달성률		100.0	100.0			0.0		
국가보훈처	달성		1	2			1		
	성과목표수		1	2			1		
	달성률		100.0	100.0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달성		1	1					
	성과목표수		1	1					
	달성률		100.0	100.0					
국민권익위원회	달성			2					
	성과목표수			2					
	달성률			100.0					
국방부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국토교통부	달성		1	5			2		
	미달성			3			2		
	성과목표수		1	8			4		
	달성률		100.0	62.5			50.0		
국회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기상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기획재정부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농림축산식품부	달성		3	1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3	4			1		
	달성률		100.0	25.0			0.0		
농촌진흥청	달성			3					
	미달성		1	1				1	
	성과목표수		1	4				1	
	달성률		0.0	75.0				0.0	
문화재청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문화체육관광부	달성		1	7	4		1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1	10	5		1		
	달성률		100.0	70.0	8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법무부	달성			3			1	7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4			1	9	
	달성률			75.0			100.0	77.8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보건복지부	달성	2	4			3	9		
	미달성		4				5	1	
	성과목표수	2	8			3	14	1	
	달성률	100.0	50.0			100.0	64.3	0.0	
산림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산업통상자원부	달성		5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6	1					
	달성률		83.3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여성가족부	달성	9	1	8	3	1	6	13	3
	미달성	1	2		1				
	성과목표수	10	3	8	4	1	6	13	3
	달성률	90.0	33.3	100.0	75.0	100.0	100.0	100.0	100.0
외교부	달성	1		5					1
	미달성	3							
	성과목표수	4		5					1
	달성률	25.0		100.0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조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중소벤처기업부	달성		11						
	미달성		9						
	성과목표수		20						
	달성률		5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달성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2					
	달성률			50.0					
질병관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통일부	달성		1	2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2			2		
	달성률		100.0	100.0			50.0		
특허청	달성		4						
	성과목표수		4						
	달성률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해양수산부	달성		3	1					
	미달성			2					
	성과목표수		3	3					
	달성률		100.0	33.3					
행정안전부	달성		1	1					
	성과목표수		1	1					
	달성률		100.0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환경부	달성		1	3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75.0					

〈부표 2〉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회계연도)

(단위: 개, %)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경찰청	달성							3	
	성과목표수							3	
	달성률							100.0	
고용노동부	달성		22	4		1	2		
	미달성		10	3					
	성과목표수		32	7		1	2		
	달성률		68.8	57.1		100.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성		5	8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6	9					
	달성률		83.3	88.9					
교육부	달성			3			1		
	미달성			2					
	성과목표수			5			1		
	달성률			60.0			100.0		
국가보훈처	달성			2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2			1		
	달성률		0.0	100.0			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달성		1	1					
	성과목표수		1	1					
	달성률		100.0	100.0					
국민권익위원회	달성			2					
	성과목표수			2					
	달성률			100.0					
국방부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국토교통부	달성		1	5			4		
	미달성			4					
	성과목표수		1	9			4		
	달성률		100.0	55.6			100.0		
기상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기획재정부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농림축산식품부	달성		2	3			1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3	4			1		
	달성률		66.7	75.0			100.0		
농촌진흥청	달성		1	1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1	4				1	
	달성률		100.0	25.0				0.0	
문화재청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0.0						
문화체육관광부	달성		1	7	4		1		
	미달성			4					
	성과목표수		1	11	4		1		
	달성률		100.0	63.6	10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법무부	달성			3			1	7	
	미달성			1				3	
	성과목표수			4			1	10	
	달성률			75.0			100.0	7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보건복지부	달성	1	5			3	8	1	
	미달성	1	3				4		
	성과목표수	2	8			3	12	1	
	달성률	50.0	62.5			100.0	66.7	100.0	
산림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산업통상자원부	달성		4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5	1					
	달성률		8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여성가족부	달성	8	2	7	4	1	4	10	2
	미달성	1	1	2			1	1	
	성과목표수	9	3	9	4	1	5	11	2
	달성률	88.9	66.7	77.8	100.0	100.0	80.0	90.9	100.0
외교부	달성			5					
	미달성	5							1
	성과목표수	5		5					1
	달성률	0.0		100.0					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조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중소벤처기업부	달성		13						
	미달성		6						
	성과목표수		19						
	달성률		6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달성			2					
	성과목표수			2					
	달성률			100.0					
질병관리청	달성					1			
	성과목표수					1			
	달성률					100.0			
통일부	달성		1	1			2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2			2		
	달성률		100.0	50.0			100.0		
특허청	달성		4						
	성과목표수		4						
	달성률		100.0						

소관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해양수산부	달성		2	1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3	3					
	달성률		66.7	33.3					
행정안전부	달성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1					
	달성률		100.0	0.0					
환경부	달성		1	3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75.0					

<부록 2>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부표 3〉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9회계연도)

(단위: 개, %)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공공질서및안전	달성			4			1	10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5			1	12	
	달성률			80.0			100.0	83.3	
과학기술	달성		1	2					
	미달성			2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50.0					
교육	달성		3	6					
	미달성						1		
	성과목표수		3	6			1		
	달성률		100.0	100.0			0.0		
교통및물류	달성		1	5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1	8			1		
	달성률		100.0	62.5			0.0		
국방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토및지역개발	달성		1	1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2			1		
	달성률		100.0	50.0			100.0		
농림수산	달성		6	4					
	미달성		1	5			1	1	
	성과목표수		7	9			1	1	
	달성률		85.7	44.4			0.0	0.0	
문화및관광	달성		2	7	4		1		
	미달성		2	3	1				
	성과목표수		4	10	5		1		
	달성률		50.0	70.0	80.0		100.0		
보건	달성					5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1			5		1	
	달성률		0.0			100.0		0.0	
사회복지	달성	11	28	13	3	1	20	13	3
	미달성	1	17	4	1	1	6		
	성과목표수	12	45	17	4	2	26	13	3
	달성률	91.7	62.2	76.5	75.0	50.0	76.9	100.0	100.0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달성		20	1					
	미달성		10						
	성과목표수		30	1					
	달성률		66.7	100.0					
일반·지방행정	달성		3	7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4	8					
	달성률		75.0	87.5					
통신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통일·외교	달성	1	1	7			1		1
	미달성	3					1		
	성과목표수	4	1	7			2		1
	달성률	25.0	100.0	100.0			50.0		100.0
환경	달성		1	3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75.0					

〈부표 4〉 성평등지수 분야별-분야별 성과목표 달성현황(2018회계연도)

(단위: 개, %)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공공질서및안전	달성			3			1	10	
	미달성			1				3	
	성과목표수			4			1	13	
	달성률			75.0			100.0	76.9	
과학기술	달성		1	4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5					
	달성률		100.0	80.0					
교육	달성		1	4			1		
	미달성		1	2					
	성과목표수		2	6			1		
	달성률		50.0	66.7			100.0		
교통및물류	달성		1	6			1		
	미달성			3					
	성과목표수		1	9			1		
	달성률		100.0	66.7			100.0		
국방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국토및지역개발	달성		1						
	미달성			2					
	성과목표수		1	2					
	달성률		100.0	0.0					
농림수산	달성		5	4			1		
	미달성		2	5				1	
	성과목표수		7	9			1	1	
	달성률		71.4	44.4			100.0	0.0	
문화및관광	달성		3	7	4		1		
	미달성		1	4					
	성과목표수		4	11	4		1		
	달성률		75.0	63.6	100.0		100.0		
보건	달성					5		1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5		1	
	달성률		0.0			100.0		100.0	
사회복지	달성	9	29	13	4	2	17	10	2
	미달성	2	14	5			6	1	
	성과목표수	11	43	18	4	2	23	11	2
	달성률	81.8	67.4	72.2	100.0	100.0	73.9	90.9	100.0

분야	달성여부	가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보건	복지	안전	의사결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달성		21	1					
	미달성		7						
	성과목표수		28	1					
	달성률		75.0	100.0					
일반·지방행정	달성		3	6					
	미달성		1	1					
	성과목표수		4	7					
	달성률		75.0	85.7					
통신	달성		1	3	1				
	성과목표수		1	3	1				
	달성률		100.0	100.0	100.0				
통일·외교	달성		1	6			2		
	미달성	5		1					1
	성과목표수	5	1	7			2		1
	달성률	0.0	100.0	85.7			100.0		0.0
환경	달성		1	3					
	미달성			1					
	성과목표수		1	4					
	달성률		100.0	75.0					

<부록 3> 성평등지수 분야별-사업유형별 사업목록

〈부표 5〉 경제활동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18개 사업)			
1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R&D)
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확충
5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6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7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8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9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지원	일생활균형확산지원
1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1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12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3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1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6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17	중소벤처기업부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성평등 기반조성
18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간접목적 사업(85개 사업)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활성화사업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2	기획재정부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창의기업 육성	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글로벌마케팅 강화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6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전역예정간부 전직 컨설팅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7	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 창작 및 초기창업 육성지원
9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1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2	농림축산식품부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팜맵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1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1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7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
1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19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
2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R&D)	교육훈련
21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23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5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6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7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29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30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31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3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3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34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3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36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7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3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39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4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4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균특)	
4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4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44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45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6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47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48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49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5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51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5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5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지원
54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5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56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R&D)	
57	해양수산부	어촌활력기반구축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5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6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일자리지원
6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62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R&D)	
6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	디딤돌 창업과제
64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65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6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67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6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R&D)
6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7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7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72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73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7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76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77	관세청	정보관리(정보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78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79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강소농 육성 지원(보조)
80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81	농촌진흥청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지역지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82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도우미
83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84	특허청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채용연계교육)
85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6〉 의사결정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8개 사업)			
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확산	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3	여성가족부	미래 여성인재 양성	
4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5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6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 주류화제도 운영
8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의제 확산
간접목적 사업(6개 사업)			
1	외교부	네팔(ODA)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외교부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	
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종합연구	
4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	해수욕장활성화지원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운영	청탁금지발전방안 연구(전문가 자문료 등)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7〉 교육·직업훈련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22개 사업)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여성 정치참여 교육
2	교육부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3	교육부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5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6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인지 교육
7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인지력향상 대외위탁 교육
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1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11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12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여성 역량강화 지원
13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4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5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
18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단체역량, 여성어업인포럼
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성차별 예방 사이버과정 운영
2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조사활동	조사관교육훈련지원
21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시민경찰학교
22	경찰청	신임순경교육	
간접목적 사업(77개 사업)			
1	국회	열린국회행사지원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2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3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R&D)	학문후속세대지원
5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중소벤처기업 재직 전문가 양성 지원
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
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중견연구(R&D)
1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차세대보안리더
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1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1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영재양성(R&D)	
14	외교부	글로벌연수(ODA)	연수과정운영
1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기초직업적응훈련
16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17	법무부	교정교화	
18	법무부	직업훈련	
19	국방부	민간위탁교육	생산적 군복무여건 보장 및 인적자원개발
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2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2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2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 육성	체육분야 현장 전문가 교육 지원
27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광안내인력 교육
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3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제작 지원	영화제작지원/전문역량강화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32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3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34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6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교육
3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38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39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40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41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42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43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원
44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4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46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다기능기술자
47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4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49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50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51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전문기술과정
5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53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54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내일이룸학교
55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철도장학금지원(석박사)
56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57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58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59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공간정보융복합핵심인재양성사업
6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6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R&D)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62	국가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6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6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65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66	인사혁신처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7	인사혁신처	교육과정운영	
68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6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70	조달청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71	병무청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2	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73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인대학 운영
74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5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보조)	
76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77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지역 발명교육 인프라 지원(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8〉 복지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23개 사업)			
1	교육부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2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3	국방부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4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5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여군 근무여건개선(편의시설)
6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7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8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9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0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1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12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1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14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 운영
15	보건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16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그밖의연장형교사
17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18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9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20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1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3	국가인권위원회	취약분야 인권개선	아동인권 증진
간접목적 사업(28개 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강한미디어환경조성기술개발(R&D)	복지미디어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4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5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9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0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1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13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1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15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지원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지원	
17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18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2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	
22	국토교통부	환승센터구축지원	
23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융자)	
24	국토교통부	전세임대경상보조	
25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2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9〉 보건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8개 사업)			
1	외교부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나이지리아UNFPA보르노주여성및소녀를위한성생식보건및젠더
2	외교부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3차
3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4	보건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5	질병관리청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여성건강기반기술개발연구
6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성생식건강 증진
7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간접목적 사업(9개 사업)			
1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전공의 등 육성지원
3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구축	
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5	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개선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6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	근로자건강센터
7	여성가족부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8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10〉 안전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21개 사업)			
1	법무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2	법무부	치료감호자수용관리	
3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4	법무부	전자감독	
5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6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7	행정안전부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연구개발(R&D)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복합 탐지기 개발
8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11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12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5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16	여성가족부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17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18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교육경비)
19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20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21	경찰청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간접목적 사업(13개 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원자력안전규제정책 기반조성
2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	
3	법무부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4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6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7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8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문화정착	안전보건교육
10	경찰청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소년범조사전문가참여제
11	경찰청	경찰인재개발	
12	소방청	소방안전교육	
13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 (보조)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11〉 가족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10개 사업)			
1	외교부	에티오피아(ODA)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2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지원	
3	보건복지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4	여성가족부	가족역량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5	여성가족부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7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지원사업
8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9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간접목적 사업(2개 사업)			
1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부표 12〉 문화·정보분야 사업유형별 사업목록(2021년)

연번	소관	세부사업	내역사업
직접목적 사업(7개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2	여성가족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	여성가족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KGEF)
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5	여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6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7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간접목적 사업(10개 사업)			
1	기획재정부	지식협력단지운영	지식협력단지 교육운영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무지개다리 사업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5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인생나눔교실 운영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7	국토교통부	교통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8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9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학생홍보대사 운영
10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1a; 2021b)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성인지 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2021년 11월 9일 인쇄
2021년 11월 13일 발행

발행처 : 국회 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전화 / 02-2070-3114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